
2020년 제2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과
보호관리체계 이해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과 보호관리체계 이해

- 일시 : 2020. 07. 23. (목) / 10:00~17:00
- 장소 :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호텔(아잘레아홀)

포럼 세부일정

1부 발표		
10:00~10:05	개 회 사	지병목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조사연구팀장)
	환 영 사	고기석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교류협력팀장)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강 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0:05~10:35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과 과제	강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10:35~11:05	북한 민족고전학의 성립과 전개	허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11:05~12:00	<1부 토론> ◆ 좌장 : 김봉건(동국대학교) ◆ 지정토론 발표1 : 전봉희(서울대학교) 발표2 : 김광운(경남대학교)	
12:00~13:30	점심시간	
2부 발표		
13:30~14:00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현황	이규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4:00~14:30	북한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	김현우 (서울대학교)
14:30~15:00	북한 자연유산의 현황과 과제	이 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5:00~15:20	휴식	
15:20~16:55	<2부 토론> ◆ 좌장 : 최병현(대한민국 학술원) ◆ 참여위원 전체 자유토론	
16:55~17:00	폐 회 사	최병현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운영위원장)

■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과 보호관리체계 이해

1.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과 과제 1
강 현(국립문화재연구소)
2. 북한 민족고전학의 성립과 전개 17
허원영(한국학중앙연구원)
3.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현황 41
이규철(건축도시공간연구소)
4. 북한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 75
김현우(서울대학교)
5. 북한 자연유산의 현황과 과제 93
이 선(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토론문

1.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119
전봉희(서울대학교)
2. 「북한 민족고전학의 성립과 전개」에 대한 토론문 123
김광운(경남대학교)



발표1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과 과제

강 현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과 과제

강 현 (국립문화재연구소)

-
- I. 서론
 - II. 북한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인식 변화
 - III. 북한의 문화재 보호 관련 제도 변화
 - 1. <문화유물보호법>의 제정과 그 특성
 - 2. 2000년대 법 정비의 경향 : <문화유물보호법> 개정 및 <문화유산보호법>, <민족유산보호법>의 제정 등
 - IV.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
 - 1. 건축문화재의 지정
 - 2. 건축 관련 기술의 지정
 - V.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을 위한 향후 과제
 - VI. 결어
- 참고문헌
-

I. 서론

남북이 분단된 이후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7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남북한의 상황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70년대까지의 체제 경쟁 이후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남북간의 교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통일에 대한 기대도 커져왔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관계에서의 부침도 많아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1980년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한 북한 관련 문화재 자료의 수집을 시작으로 하여 문화재 분야의 교류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같은 전문가 그룹, 조계종과 같은 종교계의 교류 확대 등 교류협력의 폭이 넓어져왔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는 제한적이며, 또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크고, 정치적 여건에 따라서도 상황이 급변하여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의 간극을 좁혀가는 작업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한민족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대비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제한된 자료 내에서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상황을 개관해 보고 향후 교류협력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인식 변화

문화재 보존에서도 그 대상의 선별이나 가치판단의 기준에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것인데 북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도 다른 길을 걷게 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러한 체제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영향은 다른 문화재에 비해 특별히 건축문화재 보존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태도로 궁전을 비롯한 각종 지배 계층의 건축물이나 종교건축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건축사 연구와 문화재 보존의 양자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건축사의 중요한 대상인 궁궐, 관아, 사찰, 반가 등이 모두 봉건시대 인민의 착취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예를 들어 주택사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서민 주택의 연구였다¹⁾.

건축사 연구에 있어서의 대상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보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남한에서도 건축문화재의 많은 비중을 점하는 불교문화재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정황이 명확하다.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 전후 시행된 사회주의 기반 불교 관련 정책으로 불교 건축문화재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으로 사찰과 교회의 토지가 몰수 당하면서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타격을 입었다. 당시 토지 뿐만 아니라 사찰이 소유한 산림도 모두 몰수하여 사찰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또한 같은 시기 실시한 식량배급제도 종교공동체의 와해를 불러 일으켰는데, 즉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에 따라 사찰 거주 승려들이 노역장으로 가거나 사찰을 떠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한국전쟁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초기 일반주민에 대한 사상검토사업(1958~59)을 진행하면서 봉건 잔재 척결대상으로 종교를 지목하고 종교행위를 완전히 금지시켰다. 이렇게 195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조선불교도련맹 등의 단체 활동이 보이기 시작하는 1970년까지는 거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시기를 거친다.

1972년 12월 기존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고,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로 확립되기 시작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주체사상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북한은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봉건사회의 지배자의 산물이라는 점을 비판하면서도 이들이 건설한 건축물에서는 민족의 건축미학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정립하였고 이것이 건축문화재 보존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05년 발간된 『문화유산 애호가들의 벗』이라고 하는 책에서 “절 건물들을 비록 불교를 선전하는데 이바지하던 종교적인 건물들이지만 그것을 창조한 것은 근로하는 인민들로서 절건물에 리용된 조형예술품들에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 그리고 뛰어나고 독특한 예술적 재능이 깃들여 있다. 따라서 절 건물들과 거기에 있는 유물들은 중세기의 건축과 회화, 조각 등 각 분야의 발전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될 뿐 아니라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된다.”²⁾라고 하는 것 등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1) 이왕기,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 도서출판 발언, 1994, p.245.

2) 조선문화보존사, 『문화유산 애호가들의 벗』, 평양, 2005

있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역으로 주체사상에 의해 역사적 건조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기 전까지 많은 수의 건축문화재가 보존의 대상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는지는 특히 건축문화재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찰 수 감소를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북한 정권 수립 이전의 사찰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과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찰의 현황³⁾을 검토한 표이다. 현재 일제강점기까지 확인되는 유존 사찰이 3~4백개 정도였던 것에서 현재는 60여개소의 사찰만이 확인되고 있어서 많은 수의 사찰이 실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북한의 유존사찰 현황 검토

구분		지역별							계
		경기	강원	황해	평안	함경	자강	양강	
史料 근거 사찰수	『東國輿地勝覽』(16C 초)	33	52	210	201	75			571
	『財産臺帳』(1911년경)	19	43	47	105	118			335
	總督府 學務局 통계자료 (1939년 12월)	30	56	124	87	106			403
	〈太古寺寺法〉(1941)	20	58	49	126	115			368
	『북한사찰연구』(1993)의 제반 기록 검토 사암목록	269	253	376	570	325			1,793
遺存 사찰수	『북한의 절과 불교』(1989)	2	7	11	27	9			56
	『북한사찰연구』(1993)의 추정 현존사찰	3	9	12	26	11			61
	『조선의 절 안내』(2003)	-	7	9	16	9	2	1	44
	『북한의 전통사찰』(2011)	6 (사지2)	11 (사지 2)	12 (사지 2)	23	9	4		65 (사지 6)

한편 주체사상의 확산으로 역사적 건조물이 보존의 대상으로서의 새로운 인식적 기반을 갖추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교양학습의 주요한 대상으로서 문화재를 바라보는 태도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보아야 할 특징이다. 이러한 내용은 <문화유물보호법> 제7조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 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교양학습을 위한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겠지만 북한 법제의 내용 변천 과정에서 ‘복구개건’이 강조되거나, ‘리용’에 관련한 규정이 강조되는 등의 태도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물에서의 모사품 제작에 관한 규정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즉, 역사적 건조물은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고 교양학습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보존의 정책적 기초가 이러한 방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사찰문화연구원 편저, 『북한사찰연구』,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993, p.531을 참조하고 일부 자료 추가 제작성

III. 북한의 문화재 보호 관련 제도 변화

해방 이후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문화재 보존 관련 제도도 독자적 행보를 보이며 전개되었다. 북한에서는 1946년 4월 29일 최초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제정한 전문 11조의 규정을 제정하였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인 1948년 11월에는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내각결정 110호)을 제정하면서 문화재 보존과 제도적 정비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법제 변천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에서는 문화재 보존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문화유물보호법>으로 채택된 199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는 문화재 보존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건축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 주목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유물보호법>의 제정과 그 특성

1990년대 들어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유적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이 제정되는데, 세부적으로는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1990),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1990), <력사유적과 유물에 관한 규정>(1992)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 내세워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하고, 그 이듬해인 1994년 4월 7일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통합된 법제를 갖추게 되었다. <문화유물보호법>은 전체 6장 52조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선, 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 통제로 구성되었다.

표 2. 문화유물보호법에서의 주요 보호 체계

구분	내용	문화유물보호법(1994)		
		주무(허가 또는 승인) 기관		
1. 발굴 및 유물 수집	발굴허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승인 - 발굴보고자료 제출 →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 발굴된 문화유물 → 해당 문화유물보존기관		
	발견유물처리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해당기관 신고		
	역사유물 수집	문화유물보존기관		
2. 평가 및 등록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구분	평가	등록
		국보 문화유물	정무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준국보문화유물		
일반 문화유물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3. 보존 관리 및 활용	문화유물 보존관리 책임	문화유물보존기관, 역사유물보관기관, 사업소, 단체, 공민특수지역 내 문화유물인 경우 지역관할기관		
	등록문화유물 폐기·이관·개명	정무원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승인		
	력사유적보호구역 설정	정무원		

구분	내용	문화유물보호법(1994)
		주무(허가 또는 승인) 기관
3. 보존 관리 및 활용	역사유적 표시·설명문 설치	지방행정경제기관, 문화유물보존기관
	역사유적의 이용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승인
	역사유물의 모조품 제작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승인
	문화유물 촬영 및 벽화무덤 참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승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행위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협의
	국외전시 반출	정무원
	국보적의의가 있는 유물 기록 관리(실측설계 도면, 사진자료)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4. 수리· 복원·이전	국가적 중요 역사유적 형성안	정무원 승인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	해당 설계기관에서 설계 후,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승인
	역사유적의 이설	정무원 승인
	역사유물의 복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수행
5. 기타	보호사업의 지도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감독통제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
	박물관 또는 민속촌 건립	정무원 승인

이 법의 내용을 보면 건축문화재는 역사유적으로 분류되고 국보, 준국보 또는 일반으로 구분하여 '등록'하며, 역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여 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통해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제 상의 용어로 '등록'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은 '지정'에 가까우며, 용어만 좀 차이가 있을 뿐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특이한 것은 '복구개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복구개건'을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규정하고 '해당 역사적 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 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문화유물을 복구개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복구개건'은 '복원'을 의미하며, 특히 전형적인 문화유물을 '복구개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어 일반적인 국제적인 경향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데, 이는 앞에서 개관한 애국주의 교양의 학습 장소로서 이용되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 중의 하나는 보호관리 분야에서의 과학기술의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8조에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 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47조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삽입하여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주체성의 원칙, 역사주의 원칙과 함께 과학성의 원칙으로 보호사업의 3대 기본원칙 중 하나로 명시되기까지 하였다.

2. 2000년대 법 정비의 경향 : <문화유물보호법> 개정 및

<문화유산보호법>, <민족유산보호법>의 제정 등

2000년대 들어 법령이 수정되거나 개정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보존대상의 확대에서였다.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에서 ‘문화유물’을 주 보호대상으로 하여 ‘역사유적’과 ‘역사유물’로 구분하였다면,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문화유물’을 ‘물질문화유산’으로 개칭하고 ‘비물질문화유산’이라는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에 더해 ‘자연유산’을 추가함으로써 급속도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법령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므로 여기에서는 2000년대 제정된 법제들의 내용 중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94년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은 몇 번의 수정절차(1999, 2009, 2011)를 거쳤다. 그 중 건축문화재의 보존과 관련하여 주목할 변화가 있는 것은 2011년 <문화유물보호법> 수정이다. 이 수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상세화 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등에서 평가신청서를 작성(제20조)하여 승인하는 절차나 평가위원회의 운영(제19조)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관련하여 ‘역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의 조직운영에 대한 내용(제55조)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규제 및 처벌 등의 조항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특히 ‘역사유적보호구역’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 이전까지는 ‘땅을 일구거나 그 안에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다’(제25조)라고 간단히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역사유적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철수’(제28조), ‘역사유적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제29조) 등으로 구분하여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유물과 관련하여서도 도굴과 반출행위 등에 처벌 조항(제58조)이 상세히 규정되었다.

또 하나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의 주목할 만한 변화로 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한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전에 과학기술의 도입을 적극 장려하던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제56조에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1조(행정적 책임) 조항에 ‘10. 승인없이 국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학기술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도입하였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한다는 조항을 두어 인식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적으로 과학적 조치의 도입에 있어 현재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개입 조치에서 최소한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식에서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이 2004년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통해 국제적 보존 흐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유산의 분류체계나 용어, 규제 방법 등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식 틀에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어 흥미롭다. 그 중 하나가 역사유적의 이용과 관련된 박물관 등의 시설 관련 조항이다. 2011년 <문화유물보호법> 수정 시 기존에 박물관과 민속촌의 설립에 관련된 조항에서 ‘역사교양마당’, ‘민속공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와 개념의 확대는 인민교양의 수단으로서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강화되기까지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마지막으로 전문을 입수하지 못하여 아직 정확한 내용 검토가 어렵기는 하지만 2019년의 <민족유산보호법> 수정보충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즉, 구체적인 조항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장의 구성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 구성의 변화가 흥미롭다.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 제정 이후 여러 번의 개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별도의 장으로 존속하고 있었던 '제5장. 복구개건(또는 복원)'이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복원'이라는 것으로 통합되었으며,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은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 '제5장. 민족유산의 리용'으로 분리되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체계 조정만으로도 앞에서 북한 법제의 주요한 특이점으로 언급하였던 복원과 리용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태도나 인식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정되는데, 단순히 구성만을 달리 한 것인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구분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	2019년 수정보충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복원
제3장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4장	민족유산 관리와 리용	민족유산의 관리
제5장	민족유산의 복원	민족유산의 리용
제6장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박영정, 「북한 문화정책에서의 민족유산에 대한 인식」, 『남북문화재교류협력 혁신워크숍』 (회의자료), 2019.4.11. p.18.의 발표자료 내용

요약하면 2000년대 들어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법령이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국제적인 규정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정교화 되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정립되었던 인식의 틀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보존정책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문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복구개건이라는 용어가 복원으로 그리고 별도의 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내용이 다른 내용에 통합되고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점에서 보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도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IV.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

1. 건축문화재의 지정

북한에서는 건축문화재는 '역사유적'으로 구분된다. 북한의 역사유적의 정확한 목록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태이나 대략 3,000여건의 유적 목록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파악된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현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보유적은

4) 김혜정에 의하면 여러 문헌의 자료를 통해 총 3,245건의 역사유적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북한 민족유산 정책 변화와 물질유산(역사유적) 연구 현황」, 『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2020.5.14., p.6.)

193건이 확인되고 보존유적의 수량은 대략 1700여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⁵⁾.

먼저 파악된 국보유적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목조건축물은 궁궐, 사찰, 서원향교 등으로 총 86건이며, 석탑, 첨성대, 석등, 석당, 부도, 불감, 당간지주 등의 석조건축물은 26건으로 건조물로 분류할 수 있는 문화재는 112건으로 전체 국보 유적의 58% 정도이다.

표 4. 북한의 국보유적 유형별 분류표

구분	세부내용	건수	소계	비고
성 및 성곽	도성 및 성곽	7	23	개성옛성, 평양성, 고려장성, 발어참성, 평양성기명성석 등
	평지성, 산성	16		연산읍성, 경성읍성, 대성산성, 청암리산성, 황룡산성 등
일반건축	궁궐	1	43	함흥본궁
	궁궐지	2		안학궁터, 만월대
	누정 및 문루	32		연광정, 부벽루, 을밀대, 보통문, 대동문 등
	사우	4		송인전, 송령전, 수충사, 삼성사
	관아, 주거 및 기타	4		강계아사, 함흥선화당, 김응서집, 화성동제단
유교 관련	성균관	1	5	개성 성균관
	서원	3		용곡서원, 소현서원, 송양서원
	향교	1		창성향교
불교 관련	사찰	40	80	묘향산 보현사, 석왕사 호지문 등
	사지	5		금강사지, 신계사지 등
	불탑	16		보현사 9층석탑 등
	불상, 종, 당간지주(1)	8		적조사철부처, 연복사종, 유점사종, 중흥사 당간지주
	석등(1), 석당(2), 부도(1), 불감(1), 비갈	11		자혜사석등, 성동리 다리니석당, 영명사8각 석불감, 현화사비 등
고분 및 무덤	고분 및 무덤	21	24	대성산 고구려무덤떼, 호남리사신무덤 등
	기타	3		노암리, 용동리, 관산리 고인돌
기타 유적	첨성대	1	18	개성첨성대
	석교, 석빙고	3		주둔리 무지개다리, 선죽교, 해주 석빙고
	종, 비갈	6		평양종, 황초령, 마운령 진흥왕순수비, 표충비 등
	기타	8		대성산 연못떼, 상원 검은모루유적 등
합 계		193건		

보존유적의 수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검토가 어렵지만, 2007년 미술공예연구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선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당시 입수 자료의 마지막 번호가 개성시 장풍군에 있는 장학리적석무덤(獐鶴里積石之墓)으

5)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박대남에 의하면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북한의 문화재 실태(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22)』,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p.24.), 장경희는 국보유적 193점, 보존급유적 1,776점(『북한의 박물관(아름다운 우리문화재 4)』, 예맥, 2010., p.16)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로 1,723호였으나 입수된 목록에서 보존급 유적으로 분류된 전체 수량을 합산해보면 1,629건 이어서, 단순 계산해 보면 목록에서 90여건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누락된 호수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정되었다가 결번이 발생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목록에서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확보된 목록만으로도 대략의 유형별 수량 분포 파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록에서 구분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보존급 유적 유형별 분류표

고고	성곽	고분	왕릉	고인돌	선돌	봉수	가마터	소계
	463	258	32	166	42	303	7	1,271
미술	탑	부도	비석	석당석등	석조물	당간지주	-	소계
	41	16	139	7	30	5	-	238
건축	문루	루정	사당	절간	서원향교	관아	다리	소계
	13	29	2	61	3	3	9	120
총 계								1,629

이 내용을 보면 보존급 유적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성곽과 고분 및 왕릉, 고인돌, 선돌, 봉수 등 고고학적 유적이다. 전체 확인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존급 유적의 78%가 고고학적 유적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건조물로 분류하는 유적을 검토해 보면 목조건축에 해당하는 것은 111건인데, 여기에는 절간유적으로 분류한 사지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실제 목조건축물은 이보다 적다. 그리고 석조건축물로는 탑을 포함하여 부도, 석당 및 석등, 마애불 등이 주류인 석조물, 당간지주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비석을 제외하면 99건 정도로 그 수량은 매우 적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보존급 유적에서는 건축문화재의 비중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 보면 북한의 건축문화재는 국보급 유적을 고려하더라도 남한에 비해 그 수량이 매우 적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에서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는데, 앞에서 검토한 북한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건축문화재가 새롭게 발굴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2. 건축 관련 기술의 지정

잘 알려진 것처럼 2012년 채택된 <문화유산보호법>에서는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규정에 신설되었다. 남측의 용어로는 무형문화재 분야가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재의 보존이 유형 중심에서 유무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흐름을 북측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역사유적,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문화재와 관련하여 북한의 국가비물질유산에 등록된 내용 중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즉, ‘단청기술’, ‘조선식 지붕양식’, ‘조선식 탑건축술’, ‘구들생활 풍습’ 등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남한이 무형문화재로 ‘대목장’ 등과 같은 것을 지정하고 있는 것과 비견되기 때문이다.

2012년 비물질문화유산 개념의 도입과 관련 기술 종목의 등록은 북한에서도 남한과 유사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북한 무형문화유산 중 건축문화재 관련 기술

구분	소분류	종목명	남한 유사종목
자연,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7)	노동생활 풍습	구들생활풍습	온돌문화
전통 수공예와 기술(20)	전통수공예	단청기술	단청장
	전통기술	조선식지방양식 조선식탑건축술	대목장, 제와장, 번와장 석장

표 7.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 중 건축문화재 관련 기술 지정 현황(2020.7. 현재)

순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지정일	전승자	
					명예보유자	보유자
1	48호	단청장(丹青匠)	경남 양산시	1972. 8. 1.	홍점석	유병순
					전수교육조교 김용우 등 6명	
2	55호	소목장(小木匠)	기타	1975. 1.29.	엄태조, 소병진, 박명매	조화신 등 2명
					전수교육조교	
3	64호	두석장(豆錫匠)	기타	1975. 1.29.	박문열, 김극천	
4	74호	대목장(大木匠)	기타	1982. 6. 1.	전흥수, 신응수, 최기영	김종양 등 3명
					전수교육조교	
5	91호	제와장(製瓦匠)	전남 장흥군	1988. 8. 1.	김창대	
6	120호	석장(石匠)	경기도	2007. 9.17.	이의상, 이재순	
7	121호	번와장(翻瓦匠)	서울 성북구	2008.10.21.	이근복	
8	135호	온돌문화(溫突文化)	기타	2018. 4.30.	-	-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남한에서는 건축과 관련된 기능 종목 중 1972년 ‘단청장’을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대목장’, ‘번와장’ 등의 관련 기능들이 지정되었으며, 당해 기능과 관련된 기능자들을 보유자들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능의 보존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전수교육조교를 두어 향후의 전승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자들은 주요한 건축문화재 수리공사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존의 현장에 참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종목을 지정하고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기술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비물질문화유산 등록증’을 발급하여 유사하다. 다만, <민족유산보호법>(2015)의 제42조에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등록된 비물질유산을 대를 이어가며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⁶⁾,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 보존을 하는지는 미상하다.

6) 비물질유산 관련 특이한 것은 상징 마크에 관련된 규정인데 제43조에 의하면 비물질유산에는 상징하는 마크를 정하게 하고 있으며, 이 마크는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마크를 상업적 목적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보존보다는 활용 측면이 법제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한편 향후 보다 상세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문화재의 수리에 적용될 때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승례문 복구를 계기로 전통 단청기술이 문제가 되었는데, 2003년 남북이 공동으로 시행하였던 범운암 남북공동 시범단청 및 개금불사 작업에 참여한 기술자들과의 교류 내용을 보면) 북측도 남측과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문화로서 전승 발전시켜야 하는 무형문화재로서의 전통기술과 특정 시기의 역사적 소산물로서 수리나 복원 등의 문화재 보존행위에 적용하는 기술로서의 전통기술에 대한 구분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기술자에 귀속된 기술이 그대로 문화재 보존에 적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참고로 무형문화재 제도를 우리보다 일찍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존과 관련된 기술은 무형문화재와 분리하여 '선정보존기술(選定保存技術)'⁸⁾로 구분하여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V.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을 위한 향후 과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문화재에 대한 인식 자체에서도 남한과 차이가 있으며, 보존의 상황 자체도 다르다. 향후 교류를 통한 사업 추진을 통해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의 깊이를 깊게 함으로써 민족의 유산을 공동해 나가는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어떠한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부족하나마 국립문화재에서 진행한 북한 관련 몇 가지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를 통해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과 관련하여 시급한 과제에 대한 생각과 또 사업 추진 상 어떠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지에 대한 생각 등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기존 사업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제언을 두서 없지만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보존의 대상이 되는 건축문화재 목록의 체계적 정리 및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건축문화재 보존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현황 조사이며, 현황 조사를 위해서는 가장 선행하는 것이 목록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연구소에서 추진한 『북한문화재해설집』 작업이나, 북한 소재 건축문화재 실측 조사 사업 추진 시 현황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의 기획에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다. 최근 많이 나아지기는 하였으며, 또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2010년대 이후 문화유산의 목록화 및 전산화 사업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상황이 계속 더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남측에서 파악하는 목록에는 여전히 혼선이 존재한다. 이는 북한의 폐쇄적 성향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향후 문화재 보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문화재에 대한 정보교류가 필수적이다. 법령의 변화나 문화재의 지정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계속되고 있지만, 비정치적 정보의 교류가 보다 원활히 되는 환경을 남북한 당국자간에 조성하여 현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원활히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작업 중 하나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보다 중요한 문제이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분야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건축문화재의 경우 보존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 중 하나가 실측

7)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남북의 단청-남북 단청문화 교류 자료집』, 2004 내용 참조.

8) 일본의 '선정보존기술' 제도는 1975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 도입한 제도이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전통 기술 또는 기능 중 보존조치가 필요한 것을 '선정보존기술'로 선정하고 그 보유자(保持者)와 보존단체(保存團體)를 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규구술(規矩術), 지붕 제작기술(屋根瓦葺, 檜皮葺, 茅葺), 단청(建造物彩色) 등과 관련된 기술이 선정되어 보유자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건조물 수리, 건조물 목공, 건조물 장식 등과 관련된 보존단체를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조사이나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으로는 북한에서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측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북한 내부의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제한된 정보 내에서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정밀 실측조사가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출판된 건축 관련 서적이나 논문에서 정밀실측에 준하는 도면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회과학원에서 출판한 『조선건축사』에 수록된 도면을 보면 거의 약도(略圖) 수준의 도면을 이용하고 있으며, 2004년 조선문화보존사에서 출판된 『우리나라 중세탑』⁹⁾에 수록된 도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북한의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력사유적 조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들을 봐도 정밀실측도라 할 만한 도면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로 치면 보수도면 정도에 준하는 약실측 도면조차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4~2009년까지 추진하였던 북한 건축문화재 실측조사 사업은 그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측의 기술지도로 북측에서 실측하는 방식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사업인데, 2004년부터 6년간 31건의 문화재를 실측 조사하였으며, 8건의 자료를 수록한 보고서 4권을 발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조사된 자료의 일부만 도서로 발간하고 중지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사업의 기획에서 북한의 자체 역량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과의 사업 기획에서 종종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북한을 사업의 동반자라기 보다는 단순히 조사연구 사업의 대상을 제공하는 역할로 한정하거나 선진 기술 지도의 대상 등으로만 바라본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 그러므로 북측 전문가들과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며, 단순한 시혜의 대상인 아닌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실현 가능한 사업의 공동 참여 시행을 통해 북측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정치적 성격의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고 북한 스스로가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분적인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통일 이전까지 북한의 문화재는 북한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VI. 결어

한 민족으로서의 통일을 부인할 수 없는 과제이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건축문화재 분야에서 그간의 상황이나 인식의 차이 등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해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재 분야에서도 빈번한 교류와 소통이 필요하다.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서로간에 대한 이해와 신뢰 구축이 결국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며, 그 중에서도 문화재 분야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문화재 보존의 대상이나 보존의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는 향후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복원에 대한 논

9) 리기웅, 『우리나라 중세탑』, 조선문화보존사, 2004

의는 직면한 당면과제라 생각하고 있다. 유적에 대한 복원이 한국에서도 전문가 사이에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통사 복원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무분별한 지원이 오히려 유적의 진정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언하자면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한의 근대건축 전공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북한에 남아 있는 근현대건축도 향후 건축문화자산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근대건축은 2000년대 들어 등록문화재 제도를 통해 문화재 보존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부상하였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근현대건축도 향후 보존의 대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남아 있는 건축은 사회주의 건축은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시대를 거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가 붕괴, 또는 개방과 개혁으로 급속히 도시의 모습이 바뀌어 나간 반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산물로서의 건축물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유산적 가치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¹⁰⁾

참고문헌

1. 줄고, 「건축문화유산 분야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자산 남북협력』, 통일부·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12.8.31.
2. 줄고, 「북한의 불교문화재 현황과 교류협력 과제」, 『북한 불교의 이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인문한국(HK) 연구단, 2013.6.1.
3. 줄고, 「개성의 건축문화유산」, 『2013년도 개성한옥보존사업 연구결과보고서』, 경기문화재연구원, 2013.12.31.
4. 사찰문화연구원 편저, 『북한사찰연구』,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993
5. 이왕기,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 도서출판 발언, 1994
6. 이왕기, 『북한건축 또 하나의 우리 모습』, ㈜서울포럼, 2000
7. 신법타, 『북한불교 연구』, 민족사, 2000
8.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강원도편』, 2003
9. 지병목, 「문화유물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문화재』 제36호, 2003
10. 리기웅, 『우리나라 중세탑』, 조선문화보존사, 2004
11.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남북의 단청-남북 단청문화 교류 자료집』, 2004
12.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V-서울·경기도편』, 2007
13. 대한불교 조계종 신계사복원추진위원회, 『단청무늬 자료집』, 2007 (조선문화보존사, 2005의 재판집 간행)
14. 문화재청·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공동 세미나 자료집)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간 문화재협력 학술회의』, 2014.3.28.
15. 김유진, 「북한의 통치이념 변화에 따른 문화유산정책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론, 2016
16.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문화재청·경기도·강원도, 2020.5.14.

10) 2009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한국관에 남북한 건축 100년의 흐름을 주제로 전시하여 처음으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다. 사회주의 도시계획과 건축물들이 잘 남아 있는 평양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유산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발표2

북한 민족고전학의 성립과 전개

허원영 | 한국학중앙연구원

북한 민족고전학의 성립과 전개

허원영 (한국학중앙연구원)

-
- I. 머리말
 - II. 민족고전학과 역사과학
 - III. 민족고전학의 성립 과정
 - IV. 민족고전학의 성과와 자료 현황
 - V. 민족고전학의 내용과 고문헌의 분류에 있어서의 문제점
- 참고문헌
-

I. 머리말

남한에서 고문헌을 다루는 학문은 서지학과 고문서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반면 북한은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민족고전학이 정립되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보편적 학문인 문헌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으로, 우리의 전통시대 문헌들을 대상으로 체계화하고 계통화하며 아울러 비평하고 해석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동질성을 지닌다.

남한에서 고문헌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다루는 체계화된 연구분야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른 시기부터 서지학 분야에서 고서를 다루기는 하였지만 고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고문서학의 모색은 비교적 최근이다. 더욱이 그 개념과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에서도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서지학과 고문서학을 중심으로 번역학과 보존처리학, 금석학, 그리고 최근의 인문정보학 등이 고문헌과 매우 밀접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학문분야로서 민족고전학이 확립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고문헌에 대한 관심은 이미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어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자료의 수집과 정리사업이 진행되어 갔다. 이후 1960년 무렵부터는 고문헌의 번역·복각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리조실록』과 『팔만대장경』 번역 사업 등을 수행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민족고전학은 민족고전의 수집·정리, 번역, 평가와 해제, 한자와 한문 교육, 기초 참고서의 편찬 등을 연구방향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문헌학, 고증학, 번역학, 한문학, 사전학 등의 연구분야와 밀접하게 관련한다.

민족고전학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성격은 남한에서의 고문헌학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족고전학의 대상은 남한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북한의 역사 분야인 혁명역사(수령사)와도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로 전통시대, 특히 조선시대를 주 배경으로 하는 자료에 대한 분야인 만큼 북한과의 학문 교류를 위한 대상으로서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

나아가 민족고전학은 우리 민족 공통의 문화유산인 기록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는 연구가 어려운 북한 지역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사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북한과의 학문적 교류 필요성이 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II. 민족고전학과 역사과학

민족고전학은 고문헌을 다루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서 정립되었다. 북한에서는 “력대 봉건 통치계급의 지배하에서 형성”된 모든 기록자료를 ‘고전문헌’으로 지칭한다.¹⁾ 또한 ‘민족고전’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민족의 선행세대들이 창조하여 물려준 민족문화유산가운데 문자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서사자료의 총체’를 정리하고 있다. 이 민족고전은 계급적 제한성과 시대적 제한성을 내포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비판적으로 이어받아야 할 문화유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유물인 민족고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성립된 학문이 바로 민족고전학이다.

민족고전학은 고서와 고문서뿐 아니라 금석문을 포괄하는 고전유산을 자료로서 이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성립하였다. 대략적인 내용은 남한에서와 대동소이하다. 고문헌의 수집·정리로부터 평가와 해제, 번역 등의 작업과 이를 위한 이론적 제반 학문 및 교육 활동이 주요한 내용이다.

민족고전학은 “우리 인민의 슬기와 지혜를 담은 수만종의 귀중한 고전유산들을 진정한 인민의 향유물로, 과학연구의 믿음직한 자료적토대로 옮겨 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독자적인 과학분야로 성립하였다. 민족고전학은 세 가지 특징에서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데, 그것은 ①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형성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②문자로 기록된 유산을 연구하는 학문 ③사회생활과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첫 번째 특징으로 언급하고 있는 ‘일정한 역사적 시기’란 다름 아닌 중세시대로, “민족고전은 력대 봉건통치계급의 지배하에서 형성”된다고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민족고전학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기록자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민족고전학의 연구대상, 즉 임무는 “고전문헌의 형성발전과 고전유산의 수집, 감별, 정리, 해석, 평가에서 나서는 학술적 문제를 탐구하고 리론화 하는 것”에 두어진다.²⁾

민족고전학은 사회정치학, 경제학, 법률학, 역사학, 언어학, 문예학과 함께 하나의 독자적인 연구대상을 가진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³⁾ 또한 모든 문헌학이 그러하듯이 역사학의 보조학문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1) 윤국일, 「민족고전학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 『역사과학』 1996년 제4호, 1996, 40쪽.

2) 이상의 민족고전학에 대한 개요는 윤국일(앞의 논문)을 정리한 것이다.

3) 오희복, 『민족고전학 개론』, 사회과학출판사, 2015, 4쪽.

표 1. 북한 '역사과학'의 구성체계와 내용

분류	내 용	확 장	
"수령사" (혁명역사)	"백두산3대장군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불멸의 업적"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에 대한 연구 조선노동당에 대한 연구 김형직, 김형권, 김철주, 강반석 등에 대한 연구 김정은에 대한 연구(2012년 이후)	
"인민사" (일반역사)	조선역사(원시~현대)	조선역사	원시 : 구석기, 신석기
			고대 : 고조선, 부여, 진국 등
			중세 :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
			근대 : 1860년대~1926년
			현대 : 1926년~현재
		세계역사	
		역사철학, 역사이론 등	
보 조 과 학	고고학	"역사유적·유물의 발굴과 년대 고증"	
	민속학	"조상전례로 형성발전하여 온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전통"	
	민족 고전학	민족고전의 수집, 정리 민족고전의 번역 민족고전의 평가와 해제 한자와 한문의 교수 역사와 민족고전 연구에 필요한 참고서 편찬	민족고전의 번역출판

〈표 1〉은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잡지인 『역사과학』 2006년 제4호에 수록된 리영환의 글을 바탕으로 북한 '역사과학'의 구성체계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⁴⁾ 북한의 역사학에서 가장 큰 특징은 혁명역사(수령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1970년대 후반부터 혁명역사는 북한 역사학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떠올랐으며, 양적 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해 갔다.

4) 리영환, 「주체역사과학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과학리론잡지-《역사과학》」, 『역사과학』 2006년 4호.

표 2. 『역사과학』 게재, '역사과학' 연구의 부문별 시대별 분포

논문편수(%)

분류		1955 ~1962	1963 ~1967	1977 ~1985	1986 ~1994	1995 ~2000	2001 ~2011	2012 ~2017	합계	
수령사(혁명역사)		2(0.8)	1(0.6)	63(21.5)	132 (32.4)	199 (50.1)	606 (52.1)	553 (66.5)	1,555 (44.1)	
인 민 사	조선 역사	원시	1(0.6)	3(1.0)	0(0)	0(0)	2(0.2)	1(0.1)	13(0.4)	
		고대	12(4.7)	15(8.5)	5(1.7)	13(3.2)	22(5.5)	17(1.5)	7(0.8)	91(2.6)
		중세	71(27.6)	60(33.9)	108 (36.9)	174 (42.8)	103 (25.9)	248 (21.3)	102 (12.3)	866 (24.6)
		근대	64(24.9)	55(31.1)	38(13)	24(5.9)	19(4.8)	62(5.3)	30(3.6)	292(8.3)
		현대	46(17.9)	23(13)	37(12.6)	18(4.4)	19(4.8)	69(5.9)	45(5.4)	258(7.3)
		조선역사 합	199 (77.4)	154 (87.0)	191 (65.2)	229 (56.3)	163 (41.0)	398 (34.2)	185 (22.2)	1,520 (43.1)
	세계사	3(1.2)	4(2.3)	3(1)	12(2.9)	11(2.8)	65(5.6)	38(4.6)	136(3.9)	
	역사일반	33(12.8)	2(1.1)	3(1)	1(0.2)	2(0.5)	3(0.3)	7(0.8)	51(1.4)	
	인민사 합	235 (91.4)	160 (90.4)	197 (67.2)	132 (59.5)	176 (44.3)	466 (40.1)	230 (27.6)	1,707 (48.4)	
민족고전학		18(7)	15(8.5)	8(2.7)	29(7.1)	16(4)	63(5.4)	30(3.6)	179(5.1)	
고고학		1(0.4)	1(0.6)	20(6.8)	2(0.5)	0(0)	12(1.0)	13(1.6)	49(1.4)	
민속학		1(0.4)	0(0)	5(1.7)	2(0.5)	6(1.5)	16(1.4)	6(0.7)	36(1.0)	
합계		257 (100)	177 (100)	293 (100)	407 (100)	397 (100)	1,163 (100)	832 (100)	3,526 (100)	
연평균 논문편수		32.1	35.4	32.6	45.2	66.2	105.7	138.7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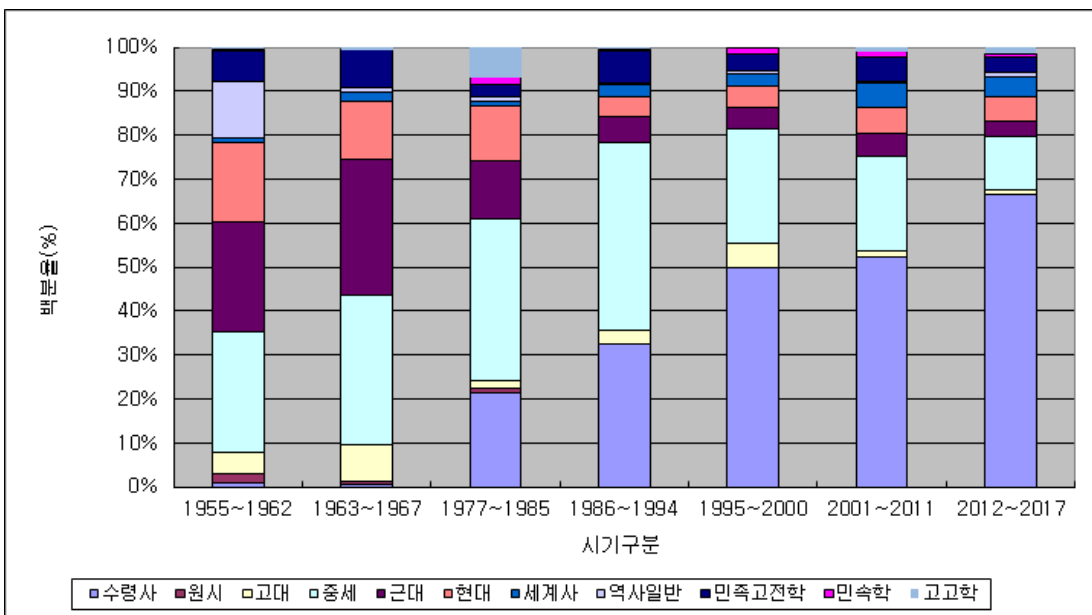


그림 1. 『역사과학』 게재, '역사과학' 연구의 부문별 시대별 백분비 누적그래프

혁명역사의 비중이 급속히 늘어난 만큼 여타 부분의 비중이 그만큼 감소하였다. 이는 『역사과학』에 게재되는 논문의 양상만 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2>는 1955년부터 2017년까지 『역사과학』에 실린 3,526편의 논문을 분야별로 살핀 것이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백분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혁명역사로 분류되는 논문들은 1970년대 후반 20% 정도로 본격 등장한 이래 2010년대에는 65% 이상으로 『역사과학』 논문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정도까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만큼 다른 부분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중세와 근대, 현대의 비중 축소를 주목할 만하다.⁵⁾

그러나 보다 자세히 볼 때, 조선시대와 관련한 연구는 수에 있어서도 비중에 있어서도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양상은 조선시대를 다룬 논문뿐 아니라 조선시대 자료를 대상으로 한 민족고전학 분야의 논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3. 『역사과학』 게재, 조선시대 논문의 시대별 분포 논문편수(연평균논문편수)

분류	1955 ~1962	1963 ~1967	1977 ~1985	1986 ~1994	1995 ~2000	2001 ~2011	2012 ~2017	합계
조선시대 논문	44(5.5)	26(5.2)	21(2.3)	79(8.8)	61(10.2)	126(11.5)	73(12.2)	430(8.0)
민족고전학 (조선시대 자료) 논문	11(1.4)	12(2.4)	5(0.6)	26(2.9)	14(2.3)	50(4.5)	26(4.3)	144(2.7)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시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는 자본주의적 요소의 등장에 대한 글들을 포함하는 경제분야의 연구로, 110편의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치와 군사-대외관계분야의 글들이 97편과 80편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밖에 사회분야에 관한 글이 58편, 문화에 관한 글들이 50편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나타낸다. 조선시대 연구는 다양한 문헌자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민족고전학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민족고전학 분야에서는 총 180편 정도의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조선시대의 문헌에 대한 글들이 144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편수는 조선시대를 다룬 모든 역사논문이 430편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민족고전학의 글들은 1980년대 후반에도 연평균 2.5편 정도의 글들이 꾸준히 제출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4.5편 내외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의 고양에 복무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빛나는 전통을 분명히 교양시킴을 통하여 고양’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일환에서 다른 역사유적·유물과 함께 민족고전에 대한 발굴과 소개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물론 『역사과학』에 수록된 논문만을 가지고 모든 경향성을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표와 그림을 보면 원시~고대에 관한 논문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1986년부터 현재까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기관지로 고고학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지인 『조선고고연구』가 별도의 중요 지면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민족고전학의 성립 과정

북한에서 “민족고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1960년대부터 사용되고는 있었지만,⁶⁾ 그것이 학문적인 엄밀성을 가지고 사용되지는 않았다. “민족고전”이라는 용어가 학술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민족고전학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모색을 시작한 시점은 1977년 무렵 사회과학원 직속으로 민족고전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부터라고 추정된다.⁷⁾ 그러나 민족고전학의 성립이 1970년대 후반 이후라 해서, 민족고전학 분야의 사업과 성과들이 이 이후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현재 민족고전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들은 북한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민족고전학이 고전문헌에 대한 학문인만큼, 그 시작은 고전문헌의 수집과 정리라 할 수 있다.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고전문헌의 수집은 북한정권의 초창기부터 강조되었으며,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직접 언급을 통하여 뒷받침되었다. 김일성은 이미 1952년 4월 27일, 과학자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록문헌, 서적 그밖에 다른 유물과 같은 귀중한 우리의 유산이 널려있고 잃어져 우리의 연구사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며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과학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자료들을 전국가적범위에서 수집정리하며 그것을 연구자들이 널리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도록 대책들을 세워야 하겠습니다.”⁸⁾라고 언급, 전쟁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기록문헌 등에 대한 전국가적 수집과 정리를 지시하였다.⁹⁾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북한은 조선고적보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다음해인 1947년 2월에는 조선력사편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자는 고고학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1948년에 민속학을 포함하는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후자는 역사학에 대한 연구기관이었으며, 1948년 10월 내각 4차회의에서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사료수집원과 정리원을 배치, 본격적인 사료수집에 착수하였다.¹⁰⁾ 북한은 시작에서부터 유적·유물과 민속·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기록문헌에 대한 자료의 수집을 엄밀히 분리하여 진행해 나갔다.

북한 정권은 해방 직후부터 역사박물관과 민족해방투쟁박물관 등의 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및 지방도서관들을 속속 개관시키면서 자료수집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전쟁

6) 『력사과학』 1964년 6호에 보면 이미 ‘민족고전소개’라 하면서 과학원 고전연구소에서 간행 또는 간행 예정인 『고려사』와 『반계수록』 등을 소개하고 있다.

7) 윤국일(1996)은 민족고전연구소가 만들어 진 과정에 대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리조실록》번역정형을 료해하시면서 《리조실록》번역실이 《리조실록》만 번역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민족유산들도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민족고전연구소》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연구소를 꾸려주시었다.”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에서 1975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번역본 『리조실록』의 간행주체를 보면 1975년과 1976년은 리조실록번역실이었으며, 1977년부터 민족고전연구소가 『리조실록』의 번역·간행을 주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민족고전연구소가 설치된 시기는 1977년 무렵으로 판단할 수 있다.

8) 김일성,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52년 4월 27일 과학자대회에서 한 연설(1980), 『김일성저작집』 7, 조선로동당출판사, 202쪽.

9) 김정일 역시 시기는 불명확하나 “옛날책을 비롯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전면적으로 수집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옛날책이 적지 않게 널려져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냥 뒤두면 귀중한 나라의 재부가 없어질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운동을 벌이거나 국가적조치를 취하여 지방에 널려있는 옛날책을 다 수집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고전문헌의 수집과 정리를 전 사회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였다.(윤국일, 앞의 논문, 40쪽)

10)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력사과학』 1960년 4호, 1960, 3쪽;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스런 40년」, 『력사과학』 1988년 3호, 1988, 2쪽.

이전까지 '각 대학들과 도서관, 역사박물관들에 적지 않은 자료들이 수집'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자료수집사업은 전쟁 중에도 지속되었고, 전쟁 이후에는 상당한 진전을 가져와 대학, 도서관, 박물관에는 수십만 점의 문화 유물과 고문헌이 수집, 전쟁 전의 수배에 달하는 소장품을 수집하였다.¹¹⁾

전쟁 중이었던 1952년 3월에는 「내각결정 57호」를 통하여 역사편찬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조선력사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과학원을 개원, 산하에 력사연구소와 물질문화사연구소 등 9개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이때 력사연구소 아래에는 고대 및 중세연구실과 근세 및 최근세연구실, 철학연구실과 함께 별도로 사료편찬연구실을 설치하여 사료의 수집·정리와 편찬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¹²⁾

이후 1956년에는 사료편찬실이 력사연구소에서 분리, 과학원 직속 고전연구실로 독립하였다. 이는 제3차 당대회의 '교시'에 입각한 것으로, 이때부터 고문헌의 복각 번역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¹³⁾ 이 해에는 물질문화사연구소도 민속학 및 고고학연구소로 개칭하였으며, 산하에 고고학연구실, 민속학연구실, 미술사연구실과 함께 별도의 자료편찬실을 설치하였다.¹⁴⁾ 이로써 민속학과 고고학분야에서도 독립 편제로써 자료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당중앙위원회 직속으로 당력사연구소를 창설하였다. 당력사연구소의 창설은 민족고전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력사연구소는 당의 문헌과 항일무장투쟁 등의 자료를 포함하는 당사 연구에 필요한 일체의 문헌자료를 수집·정리하도록 하였는데,¹⁵⁾ 이를 통하여 혁명역사와 관련되는 일체의 문헌이 별도로 수집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력사연구소 사료편찬연구실과 이를 계승하는 일련의 기구인 고전연구실-고전연구소-민족고전연구소에서는 고전문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¹⁶⁾

1959년 초, 력사연구소는 1957년을 기점으로 하는 '과학발전 10개년 전망계획'을 내놓는다. 여기에서 북한 역사학계의 4대 과제를 규정하였는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연구', '조선인민의 혁명전통 및 애국전통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연구'와 함께 '민족문화에 관한 연구'를 네 번째 과제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는 민족문화유산에 관한 연구사업과 함께 자료수집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였다.¹⁷⁾

1961년에는 고전연구실이 고전연구소로 승격, 고문헌의 번역, 복각 및 정리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고전문헌에 대한 인식에 있어 당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자료뿐 아니라 일반 근대사에 관한 자료와도 분리되는 "고(古)문헌"의

11) 『력사과학』 1960년 4호, 앞의 논문, 3~6쪽.

12) 『력사과학』 1960년 4호, 앞의 논문, 6쪽; 전영률, 앞의 논문, 2쪽; 이영화, 「북한 역사학의 학문체계와 연구동향」, 『한국사학사학보』 15, 한국사학사학회, 2007, 179~180쪽.

13) 『력사과학』 1960년 4호, 앞의 논문, 12쪽.

14) 이영화, 앞의 논문, 180쪽.

15) 「(권두언)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 우리 력사 학계가 거둔 성과」, 『력사과학』 1961년 5호, 1961, 3쪽.

16) 사업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다루는 문헌의 구분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러한 구분이 아직까지는 엄밀한 학술적 구분으로까지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 1965년까지도 모든 문헌자료들은 시대의 구분이 없이 '조선 문헌학'의 대상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같은 분리 후 오히려 조선 문헌학은 당의 혁명전통에 대한 문헌을 보다 중심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최영식, 「조선 문헌학의 대상과 과업」, 『력사과학』 1965년 6호) 즉 1960년대까지는 고문헌을 여타의 근현대 문헌과 분리해서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못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17) 최영식, 「조선 문헌학의 대상과 과업」, 『력사과학』 1965년 6호, 1965, 10~12쪽.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¹⁸⁾ 고문헌과 관련한 사업은 역시 번역·복각과 수집·정리사업으로, 고전 연구소에서는 특히 고문헌의 번역과 복각 사업에 집중하였다. 고전연구실이 고전연구소로 승격된 후, 『리조실록』의 분류와 정리사업을 일차적인 과제로 규정하여 추진하였고, 『고려사』와 『삼국사기』, 『징비록』, 『반계수록』 등의 고문헌들을 번역 또는 복각을 통하여 간행하였다. 특히 1959년에는 한국전쟁의 와중에 북한으로 반출해 간 적상산본 『조선왕조실록』을 저본으로 북한의 과학원과 중국과학원이 공동으로 고종과 순종 두 왕대의 실록을 출판하였다. 같은 시기에 고문헌들과 고문서 및 금석문들에 대한 수집사업은 과학원 역사연구소를 위시하여 과학원 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중앙과 지방의 역사박물관 및 도서관들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역사연구소에서는 이미 수집된 고문서들에 대한 통일적 정리사업과 국내외로부터의 고문헌 수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¹⁹⁾

1964년 2월 사회과학원이 창설되었지만, 역사연구소와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고전연구소는 그대로 유지되었다.²⁰⁾ 1975년부터는 리조실록번역실이 주체가 되어 『리조실록』을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7년 리조실록번역실이 고전연구소에 통합되면서 드디어 민족고전연구소가 출범하였고, 『리조실록』 간행사업 역시 이후에는 민족고전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리조실록』 간행이 마무리되기 전인 1988년 또 다른 대표적 업적인 『팔만대장경』 해제본 15책이 출간되었다.

역사학계의 회고를 통해 볼 때, 대체로 1960년대 후반 이전에 고전문헌에 대한 수집과 정리사업이 일단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의 고문헌 수집은 박물관 등의 기관에서 기타의 유물 수집과 함께 진행되었을 것이다. 1980년대까지는 역사학계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민족고전을 널리 수집정리하고 복각번역하는 사업이 활발히 벌여져 큰 전진을 가져오게 된 것도 역사학계가 달성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언급하였다.²¹⁾ 그러나 1990년 이후 역사학계의 주요 성과에 고전문헌의 수집과 정리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있다.²²⁾ 반면 민족고전학의 또

18) 『역사과학』 1961년 5호, 앞의 논문.

19) 『역사과학』 1961년 5호, 앞의 논문, 5~6쪽.

20) 이영환, 앞의 논문, 180쪽.

21)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역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역사과학』 1981년 4호; 전영률, 「주체의 역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역사과학』 1985년 3호;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역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역사과학』 1988년 3호.

1981년에 이와 함께 역사학계의 중요한 성과로 제시하는 것은 역사발전과정의 합법칙성 규명에 대한 성과로 ①조선인의 기원문제 규명, ②원시사회의 합법칙적 발전과정 해명, ③고조선과 노예제사회의 문제 해명, ④고구려사의 체계화, ⑤자본주의의 발생과 발전문제의 해명, ⑥조선현대사(혁명력사)의 체계화를 들고 있으며, 민족고전학 분야의 성과에 앞서 유적과 유물을 적극 조사발굴하고 복원, 복구하여 정리한 것을 우선 들고 있다.

1985년 역시 1981년과 많은 항목이 일치하지만, 방법론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언급하면서 조선민족의 역사를 주체의 역사관에 기초하여 파악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간주하였다는 점은 불과 4년 사이에 북한의 역사학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외에 봉건화 과정의 문제 해명과 조선에서의 첫 번째 통일국가 형성문제의 해명을 새로이 언급하였다. 또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의 성과로 민족고전학과 고고학의 성과를 제시하면서 이와 함께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의 진전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는 1986년 김정일의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 표방의 토대가 그 전에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88년의 언급 역시 1985년과 대부분 일치한다. 두 글 사이의 주목할만한 차이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단지 발해에 대한 연구사업의 전면화와 살수대첩이 발생했던 위치를 해명한 것 정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을 따름이다.

22) 리영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80년대에 역사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 『역사과학』 1990년 1호; 리영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한 주체의 역사과학」, 『역사과학』 1994년 4호; 리영환, 「주체역사과학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과학리론잡지-《역사과학》」, 『역사과학』 2006년 4호.

다른 분야인 민족고전의 복각과 번역에 대해서는 그 대표적 업적인 『리조실록』 번역본과 『팔만대장경』 해제본 등의 출판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후의 민족고전학이 주요 민족고전에 대한 복각과 번역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번역과 해제, 그리고 그에 기초한 연구 성과들은 대체로 고서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까지도 북한에서는 고문서에 대한 연구사업이 별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개인 소장 고문서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다.²³⁾

현재 민족고전학이 민족고전, 특히 고서의 번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김일성종합대학교 편제와 강의 내용을 통해서도 살필 수 있다. 민족고전학 강좌와 전문가들의 양성은 력사학부가 아니라 조선어문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⁴⁾ 조선어문학부는 “어문학교육과 발전의 중심기지, 작가, 기자들을 키워내는 원종장으로서 문학과 언어학, 민족고전학, 문학예술작품 창작부문과 출판보도부문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조선문학과, 조선어학과, 영화문학과, 창작학과, 보도학과, 문헌정보학과와 더불어 민족고전학과가 있으며, 민족고전학강좌를 포함한 7개의 강좌를 가지고 있다. 주요 과목으로 “고전문헌편찬사”와 “조선금석학”, “한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반면 력사학부는 “력사교육과 력사학연구의 기본거점으로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와 조선력사, 세계력사, 고고학, 민속학부문의 전문가들을 육성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민족고전학을 제외한 역사학의 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IV. 민족고전학의 성과와 자료 현황

북한에서 비록 1970년대 무렵부터 고문헌의 수집과 정리사업이 주춤해졌다 하더라도, 고문헌의 수집·정리 사업이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한 것인 만큼 상당한 자료의 축적이 이미 이루어졌다. 또한 민족고전학의 또 다른 사업인 고문헌의 복각, 번역 및 출간과 해제사업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북한 민족고전학의 결과물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력사과학』 등에 수록된 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일면을 파악하였다.²⁵⁾ 다음의 내용은 그 결과물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23) 리철, 「우리 나라 고문서의 유형과 고문서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문제」, 『국제고려학』 제18호, 국제고려학회, 2020, 393~394쪽.

24) 김일성종합대학교 홈페이지(<http://www.ryongnamsan.edu.kp> 2020.3.1.).

25) 이 내용들은 북한의 학술지인 『력사과학』에 실린 글들을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 역사학 논저 국내 소장처 현황』, 2002; 국사편찬위원회, 『북한역사학 논저 목록 상 : 북한의 역사학 연구』, 2001’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복각 또는 단순 영인 ※ ()는 간행연도 및 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여지도(56), 악학궤범(56), 고려사(3책, 58), 제왕운기(58), 훈민정음언해(58), 훈민정음해례(58), 리조실록(고종9책 순종6책, 59), 신증동국여지승람(3책, 59) • 두시언해(60년대 추정), 룡비어천가(60년대 추정), 무예도보통지(60년대 추정), 불경언해본 수종(60년대 추정), 실록약보(60년대 추정), 화성성역의궤(60년대 추정), 담헌서(62~65), 대동운부군옥(62), 문헌비고(64), 훈민정음해례(64), 경세유표(65), 목민심서(65), 화답집(65), 강역고(66), 대동수경(66), 대동운부군옥(교간본, 66), 성호새설(66), 창선감의록(66) • 창선감의록(86), 하진량문록(2책, 87) • 증보문헌비고, 동국여지승람 • 의방류취, 동의보감 • 천일록 등 실학자 및 증세 학자, 문인들의 대표문집 100여 종
구두, 교감 ※ ()는 간행연도 및 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사절요(60년대 추정), 동국문헌비고(5책, 60년대 추정), 동문선(60년대 추정), 만기요람(60년대 추정), 삼봉집(60년대 추정), 성호집(60년대 추정), 충무공전서(60년대 추정), 통문관지(60년대 추정), 해동역사(60년대 추정), 세종실록지리지(60년대 추정), 대전회통(60), 대동운부군옥(61), 여유당전서(11책, 62)
번역 ※ ()는 간행연도 및 책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병감(55), 리순신전집(55), 열하일기(3책, 55~57), 해동명장전(56), 동국세시기(58), 삼국사기(2책, 58~59), 삼국유사(주해·색인 포함, 59), 조선지(59), 정비록(상, 59), 반계수록(4책, 59~64) • 과농소초(4책, 60), 다산시문집(3책계획, 60~65년 추정), 동사강목(4책계획, 60~65년 추정), 연려실기술(6책계획, 60~65년 추정), 연암집(2책계획, 60~65년 추정), 경세유표(2책, 62~65), 고려사(11책, 62~66), 대동수경(62), 목민심서(3책, 62), 향약집성방(8책 이상, 63~), 담헌서(3책, 64), 산림경제(64), 신기통(64), 지봉류설(64), 택리지(64), 기축체의(65), 화답집(65), 성호새설(66) • 리조실록(400책, 75~91), 팔만대장경(80년대~) • 규원사화, 천부경, 삼일신고
주요 선본, 해제집 및 연구서 ※ ()는 간행연도 및 책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서지학개관(55), 리두연구(57), 조선옥편(62), 방언사전(80), 봉건 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89), 조선출판문화사-고대중세편-(95), 중세조선말사전(93), 조선식 한문연구(09), 한문문법(13), 한문문체론(13), 민족고전학개론(15) • 정다산선집(57), 리조실록 분류집(4책, 60~62), 조선봉건말기경제사자료집 1(61), 력대격문선(63), 조선기술발전사자료집1(63), 우리나라 고전 작가들의 미학 견해 자료집(6책, 64), 조선지도첩(78), (사범대학)조선사자료강독(86), 조선고전문학선집(13책, 87), 력사에 남긴 사죄문(92), 고려의학참고자료(93), 조선야담집(번역 2책, 95), 조선지도첩(97), 대동야승선집(99), 조선중세풍자해학집(번역, 00), 조선중세야담집(번역 6책, 13), 력대충신의사이야기(번역 2책), 백두산자료집(번역) • 조선고전해제 1(65),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2책, 86), 고전소설해제(2책, 91), 팔만대장경(15책, 92) • 삼국사기 색인집(60), 신증동국여지승람 색인(62),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저작년보(56) • 고전대사전(60년 이후 간행계획), 력사인명사전(60년 이후 간행계획), 지명사전(60년 이후 간행계획)

『역사과학』소개 자료(1955~2017년) ※ ()는 『역사과학』의 최초 수록년도와 호수

- 동인지문(55-7), 금석문(57-4), 신라장적 잔본(57-4), 신증동국여지승람(59-4), 삼국유사(59-6)
- 대동운부군옥(61-3), 관서평란록(62-2), 송영일기 초(62-2), 해영일기 초(62-2), 세종실록지리지(62-4), 택리지(62-5), 목민심서(62-6), 홍길동전(63-1), 리조실록(63-3), 경세유표(63-4), 연암집(64-4), 만기요람(64-6), 고려사(65-2), 고려사절요(65-2), 발해정혜공주묘비(65-3), 동사강목(65-4), 동국통감(65-6), 건원소전여기(66-4), 증보문헌비고(66-5), 경국대전(67-2)
- 삼국사기(81-4), 천상열차분야지도(82-1), 팔만대장경(85-1), 혼일강리력대국도지도(85-1), 의방류취(86-1), 동의보감(86-4), 대전속록(87-2), 정비록(87-2), 오주연문장전산고(87-3), 백량면지(88-4)
-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90-1), 대전후속록(90-4), 루판고(92-1), 제왕운기(92-1), 대전통편(92-3), 속대전(92-3), 농가총람(93-1), 병학지남(93-3), 립원십륙지(94-1), 대동지지(94-2), 증정교린지(94-4), 기묘록(95-3), 기묘록보유(95-3), 룰곡전서(96-1), 고사촬요(96-3), 규장각지(97-1), 성주읍도록(97-1), 기재사초(98-2), 묘향산 보현사비(99-4)
- 평양지(00-1), 혼정편록(00-3), 광법사사적비(02-1), 광사(02-1), 총통등록(02-1), 해동역사(02-1), 은대조례(02-2), 대각국사집(03-2), 발해고(03-4), 의종손익(04-1), 규원사화(04-2), 동의수세보원(04-3), 연려실기술(05-3), 고려로사방(05-4), 구성군지(06-2), 비변사등록(06-3), 소대수언(06-3), 이운지(06-4), 본조경험방(07-1), 현은산일기(07-3), 근역서화징(08-1), 육전조례(08-2), 동야취집(08-2), 병장도설(08-3), 면암집(08-4), 향산이적(09-1), 기영사례(09-2), 소위포창의록(09-2), 아희원람(09-2)
- 각사수교(10-2), 연려실기술(10-2), 십구장원통기(10-3), 통문관지(10-3), 증보문헌비고(10-3), 신증동국여지승람(10-4), 리조전반기 군사훈련교범집(11-4), 결송류취보(12-2), 해동제국기(12-4), 수교집록(13-1), 증정교린지(13-1), 무예도보통지(13-1), 해동금석원(13-3), 의과방목(13-3), 대동운부군옥(13-4), 대동지지(14-4), 울릉도검찰일기(15-1), 은송당집(15-1), 완당선생전집(15-2), 고사촬요(16-1), 사송류취(16-2), 력대병요(17-2)

북한에서는 이미 1950년대 중순부터 고전문헌의 간행, 번역 및 해제사업 등에 걸쳐 민족고전학 분야의 성과를 활발하게 제출해 나갔다. 각 부분의 성과를 살펴보면 북한학계의 동향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며, 민족고전학의 성과가 바로 해당 시기 역사학계의 성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²⁶⁾

영인과 북각, 구두·교감을 통한 고전의 간행에 있어서는 『악학궤범』, 『고려사』, 『고려사절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 각 부분 시대사 연구의 기본 자료들이 우선시되었다. 이 가운데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북한의 과학원이 중국의 과학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사업이다.²⁷⁾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학자들의 저술과 한글연구의 기초문헌들에 대한 간행이다. 특히 한글자료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언해본과 해례본을 비롯하여 『두시언해』와 『용비어천가』와 같은 문헌을 간행한 것과 함께, 여러 종류의 불경언해본들을 어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간행의 일환으로 영인해 나갔다.²⁸⁾

1960년대 중반까지 번역사업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으로는 1950년대 중후반에 집중 번역된 군사 또는 전쟁과 관련된 문헌들이 있다. 이것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실학자들의 저술을 번역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원문 간

26) 해방 후 최근까지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이영화(앞의 논문)와 줄고(「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연구 동향 -『역사과학』(1955~2017)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28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참조.

27)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역사과학』 1960년 4호, 13쪽.

28) 「학계소식」과학원 고전 연구실 사업, 『역사과학』 1959년 4호.

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실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실학자들의 저술 소개 및 번역은 1960년 이후 실학자들의 저서를 우선적으로 편찬 발간하겠다는 고전연구실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자료집으로 1961년에 『조선봉건말기 경제사자료집』이 간행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자료집은 당시의 시대구분과 사회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배경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이 논쟁 이후 연이어 시작된 조선후기 사회에서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발생 논증에 집중하는 조선 시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1966년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전문헌들의 간행을 통한 소개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다. 배경에는 1960년대 증반에서 1970년대 증반에 걸친 특수한 상황이 놓여 있다. 이 시기는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관철되어가던 시기로, 역사학 분야에서도 주체사상의 고수와 당성의 원칙 및 역사주의 원칙의 관철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68년에는 『력사과학』을 비롯한 학술지들이 전면적으로 정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사업들의 추진은 이후의 새로운 상황을 보여 준다. 1970년대 이후 『리조실록』 전체에 대한 번역과 『팔만대장경』의 해제 및 번역이라는 대규모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민족고전학의 모든 역량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기울여 졌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다른 고전들에 대한 간행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내 민족고전의 소장 현황 역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60년대 초까지 북한은 전 사회적 차원에서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수집을 추진하였고, 이 가운데 고문서에 대한 통일된 정리사업을 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수행해 나갔다. 1970년대 이후의 고문헌 수집사업은 중앙과 지방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역사유물 수집사업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추정된다. 1970년대에는 중앙역사박물관을 비롯하여 함흥과 원산 개성 등 지방 역사박물관들의 개건과 확장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신의주와 해주, 청진 등지에 역사박물관이 새로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박물관을 주체로 역사유물 수집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고문헌자료들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다.²⁹⁾ 그리고 이러한 수집사업은 이후에도 각 박물관의 기본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을 것이다.

『민족고전목록』(2008)에는 북한 전역의 42개 기관에 33,469점의 고문헌이 소장된 것으로 확인된다.³⁰⁾ 그중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에는 고서 3,402책, 고문서 471점으로 총 3,873점의 고문헌 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58년에 3책으로 정리한 『圖書目錄(漢書分類目錄)』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이 1957년 10월 31일 현재 수장하고 있는 한문과 한글 고어로 기록된 자료들이 7천 종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다.³¹⁾ 이것이 ‘漢書’와 ‘민족고전’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민족고전목록』 33,469점 외에도 훨씬 많은 고문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민족고전목록』의 소장 현황을 기관별로 나타낸 것이다.

29) 리기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유적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과학논문집』 1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30~135쪽.

30) 이 자료는 2018년 8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안승준 선생이 남북 유적 조사 연구 교5를 위한 국외 출장의 결과로 확보한 자료이다.

31)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의 『圖書目錄(漢書分類目錄)』은 필사본 3책으로,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 복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연 번	소장기관	고도서		고문서		합	
		(건)	%	(건)	%	(건)	%
1	인민대학습당	7,072	34.6%	3,891	29.8%	10,963	32.8%
2	사회과학원도서관	3,572	17.5%	501	3.8%	4,073	12.2%
3	의학과학원도서관	72	0.4%	0	0.0%	72	0.2%
4	농업과학원도서관	23	0.1%	0	0.0%	23	0.1%
5	고려의학과학원도서관	30	0.1%	0	0.0%	30	0.1%
6	량강도도서관	6	0.0%	0	0.0%	6	0.0%
7	강원도도서관	1	0.0%	0	0.0%	1	0.0%
8	평안북도도서관	3	0.0%	0	0.0%	3	0.0%
9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3,402	16.7%	471	3.6%	3,873	11.6%
10	김형직사범대학도서관	166	0.8%	1	0.0%	167	0.5%
11	평양연극영화대학도서관	12	0.1%	0	0.0%	12	0.0%
12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도서관	14	0.1%	0	0.0%	14	0.0%
13	평양체육대학도서관	1	0.0%	0	0.0%	1	0.0%
14	김철주사범대학도서관	3	0.0%	0	0.0%	3	0.0%
15	청진의학대학도서관	26	0.1%	0	0.0%	26	0.1%
16	오중흡청진1사범대학도서관	6	0.0%	0	0.0%	6	0.0%
17	청진2사범대학도서관	13	0.1%	0	0.0%	13	0.0%
18	함흥의학대학도서관	18	0.1%	0	0.0%	18	0.1%
19	함흥사범대학도서관	5	0.0%	0	0.0%	5	0.0%
20	원산농업대학도서관	10	0.0%	0	0.0%	10	0.0%
21	원산사범대학도서관	11	0.1%	0	0.0%	11	0.0%
22	남포사범대학도서관	9	0.0%	0	0.0%	9	0.0%
23	김종태해주1사범대학도서관	9	0.0%	0	0.0%	9	0.0%
24	조선중앙력사박물관	1,022	5.0%	1,925	14.7%	2,947	8.8%
25	조선민속박물관	695	3.4%	3,610	27.7%	4,305	12.9%
26	조선미술박물관	42	0.2%	1	0.0%	43	0.1%
27	청진력사박물관	95	0.5%	156	1.2%	251	0.7%
28	함흥력사박물관	63	0.3%	356	2.7%	419	1.3%
29	함흥력사박물관본공분관	1	0.0%	0	0.0%	1	0.0%
30	강계력사박물관	20	0.1%	2	0.0%	22	0.1%
31	원산력사박물관	165	0.8%	106	0.8%	271	0.8%
32	신의주력사박물관	560	2.7%	213	1.6%	773	2.3%
33	묘향산력사박물관	239	1.2%	26	0.2%	265	0.8%
34	해주력사박물관	192	0.9%	192	1.5%	384	1.1%
35	사리원력사박물관	184	0.9%	70	0.5%	254	0.8%
36	개성고려박물관	326	1.6%	267	2.0%	593	1.8%
37	평성력사박물관	38	0.2%	48	0.4%	86	0.3%
38	만경대혁명사적관	58	0.3%	1	0.0%	59	0.2%
39	칠골혁명사적관	99	0.5%	0	0.0%	99	0.3%
40	봉화리혁명박물관	38	0.2%	1	0.0%	39	0.1%
41	국가서적관	1,994	9.8%	398	3.0%	2,392	7.1%
42	국가문헌고	99	0.5%	819	6.3%	918	2.7%
합계		20,414	100%	13,055	100%	33,469	100%

문제는 이들 자료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 문제는 특히 고문서에서 두드러진다. 리철은 최근의 발표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고문서에 대한 연구를 오래전부터 진행하여왔으나 고문서가 여러곳에 산재되어있고 고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일부 자료들만이 해당 부문사연구에 리용되었거나 고문서학을 연구하는 자료로 리용되었을뿐 고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와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다.³²⁾ 따라서 “통일적으로 고문서를 장악하고 리용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된다.”³³⁾고 하면서 고문서를 수집하고 분류·정리하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V. 민족고전학의 내용과 고문헌의 분류에 있어서의 문제점

남한에서 고문헌을 다루는 학문과 북한의 민족고전학이 상당히 다른 것 같지만 학문의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민족고전학에서 제시하는 학문적 내용을 검토해 보면, 남한에서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³⁴⁾

우선 민족고전학의 연구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그 대체에 있어 남한의 관련 분야와 별반 다르지 않다.

- ① 민족고전의 수집·정리 및 이에 대한 이론실천적 문제의 해명 : 고전문헌의 발굴과 수집, 다른 문헌들에 산재한 자료를 통한 실전된 원서의 복원, 고전문헌들에 대한 분류와 목록작업, 원문에 대한 구두와 교감, 제반 작업 방법의 이론화.
- ② 민족고전의 번역 및 이에 대한 이론실천적 문제의 해명 : 번역작업의 수행, 번역의 원칙과 수법 및 방법의 모색과 과학화·이론화.
- ③ 민족고전의 정당한 평가와 해제 및 이에 대한 이론실천적 문제의 해명 : 당대의 계급적 편견과 시대적 제한성을 지닌 민족고전에 대한 전면적 심의와 정확한 평가, 비판적 이해를 위한 각이한 형태의 서지해제.
- ④ 민족고전의 주요 서사수단인 한자와 한문의 교육과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의 해명.
- ⑤ 역사와 민족고전 연구에 필요한 참고서들의 편찬 : 한자말사전, 조선인명사전과 같은 사전의 편찬, 색인, 편람류와 같은 참고서의 편찬, 그 방법의 과학화.

또한 민족고전학에서는 목록, 판본, 자료의 교감, 해석, 고증, 평가에 관한 학술적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족고전학은 크게 문헌학, 고증학, 번역학, 한문학, 사전학 등의 연구분야와 관련된다. 문헌학은 고전문헌의 발굴·수집·정리와 분류 원칙·방법, 판본, 해제·평가, 복원, 고전문헌의 발생·발전, 금석문·고문서 등을 연구할 수 있다. 고증학은 고전문헌의 교감, 위서·위작에 대한 판정·고증, 인명과 지명 등에 대한 자료고증의 문제를 연구할 수 있다. 번역학은 고전문헌의 번역 원칙과 수법, 민족고전번역에 대한 역사적

32) 리철, 앞의 논문, 394쪽.

33) 위의 논문, 395쪽.

34) 이하 민족고전학의 학문적 개요에 대해서는 윤국일(앞의 논문)과 오희복(앞의 책)을 참고하였다.

고찰, 민족고전에 대한 주해식 번역 등을 연구할 수 있다. 한문학에서는 고전문헌에 쓰인 조선식 한문의 특성, 한문의 사용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민족고전에 쓰인 한자표기어휘에 대한 문제 등을 연구할 수 있다. 사전학에서는 ‘우리 식’의 한자말사전 편찬 이론과 방법, 민족고전연구에 필요한 ‘우리 식’의 사전·색인·편람류의 편찬에 관한 문제 등을 연구할 수 있다.

이상 민족고전학의 연구 방향과 분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학문적 내용은 남한의 그것과 기본적인 함의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문헌의 분류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우선 고서의 분류에 있어 남한에서는 전통적인 ‘經部-史部-子部-集部’의 사부분류법을 사용하거나 현대의 국제적 표준에 기준한 한국십진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사부분류법은 동양학의 전 주제 분야를 일차적으로 경·사·자·집 4개의 ‘部’로 기초구분하고, 각 부를 일정한 전개의 기준에 따라 ‘類’로 2차 구분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학문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분류체계가 간단하여 한국학 및 동양학 위주의 전문도서관에 적합하고, 이해와 사용은 물론 분류업무에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분류의 기준이 중국과 유교 중심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항상적인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한의 고서 분류〉 四部分類法

- ① 經部: 四書五經, 小學, 孝經 등 유교 경전의 원문과 주석서.
- ② 史部: 史書, 傳記, 金石文, 地誌, 直觀, 政書 등을 통섭하는 부문.
- ③ 子部: 諸子百家書를 비롯하여 經·史·集部에 해당하지 않는 주제를 포괄. 儒家, 道家, 佛家, 兵家, 農家, 術數, 譜錄, 正音, 譯學, 雜家, 類書, 西學類 등.
- ④ 集部: 漢詩文, 文集類, 詩文評, 尺牘, 詞曲, 소설 등

북한에서도 1958년 『도서목록(한서분류목록)』을 살피면 ‘叢書-經書-歷史-子集-文集’의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부분류법을 기본으로 한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6년에 편찬된 『도서련합목록』의 민족고전에 대한 분류 및 『민족고전목록』(2008)에서는 7부 48류 체계에 따라 고서를 분류하고 있다. 7부 48류 체계는 전통적 분류방법을 참작하면서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오늘의 시대적 요구와 민족고전의 전반적인 실태를 고려한 과학적이며 현대적인 분류방법이라고 설명한다.

〈북한의 고서 분류〉 7부 48류 체계

- ① 자연과학부: 천문력서류, 수학류, 농서류, 의약류, 외서류.
- ② 력사지리부: 기전류, 편년류, 기사류, 야사류, 일기류, 연표류, 전기류, 계보류, 지리류, 읍지류, 지도류, 기행류, 민속의례류, 금석류, 외국사류, 외서류.
- ③ 정법병서부: 법전류, 정서류, 기록류, 병서류, 외서류.
- ④ 철학종교부: 철학유서류, 경서류, 불서류, 도서류, 잡서류.
- ⑤ 언어문예부: 국어류, 자서류, 역어류, 사곡류, 소설류, 제평류, 간독류, 예술류, 외서류.
- ⑥ 저작집부: 총집류, 총집외서류, 별집류, 공령류, 별집외서류.
- ⑦ 종합참고부: 목록류, 류서류, 수록류.

7부 48류의 북한 고서 분류체계 역시 ‘部’를 기초구분의 단위로 삼고, 각 부 아래에 2차 구분으로 ‘類’를 두고 있다. 경·사·자·집의 4부와는 달리 7부를 기초구분의 단위로 하였는데, 그 구분은 오히려 현대 학문분류에 따른 구분에 가깝다. 그러나 2차 기준인 48류의 구분은 고서의 유형분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사부분류의 유형분류와도 대동소이하다.

고서 분류에 있어 남과 북의 유형분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은 남·북한의 고서 분류에 대한 학문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료적 차원의 협력과 통합을 쉽게 하는 큰 장점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서를 제외한 고문헌, 즉 광의의 고문서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다.

고문서에 대한 분류는 남한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최승희가 제시한 분류법은 발급주체를 기준으로 國王文書, 王室文書, 官府文書, 私人文書 등으로 1차 분류한 후 발급 방향(수취자)에 따라 對王室文書, 對官府文書, 對私人文書 등으로 다시 분류하는 방식이다.³⁵⁾ 이 방식은 협의의 고문서 분류기준에 적합하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자료군으로서 고문헌을 출처를 단위로 하여 일괄적으로 조사, 수집하여 관리하는 한중연 장서각 등의 기관에서는 협의의 고문서뿐만 아니라 광의의 고문서, 즉 고서를 제외한 모든 고문헌 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법이 현실적으로 요청되었다. 윤병태 등이 제시한 기준이 그것으로,³⁶⁾ 이 방법은 광의의 고문서에 대하여 성격과 내용에 따라 9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 아래에 구체적인 자료들을 위치시키고 있다.

〈남한의 고문서 분류〉 (윤병태 등, 『한국고문서정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1 教令類: 冊文, 教書, 諭書, 曉諭, 傳教, 綸音, 有旨, 傳旨, 密旨, 告身, 紅牌, 白牌, 追贈, 贈職, 祿牌, 官教, 教牒, 度牒, 錄券, 批答, 下膳狀, 空名帖, 差帖, 勅令, 訓令, 告示 등.
- 2 疏·劄·啓·狀類: 上疏, 劄子, 奏本, 啓文, 啓本, 狀啓, 書啓, 呈辭, 啓辭, 省記, 薦舉單子, 都目單子, 謚號望單子, 褒貶單子, 進上單子, 薦新單子, 問安單子, 年分單子, 上書, 上言, 原情, 所志, 白活, 等狀, 議送, 陳情, 戶口單子, 稟目, 稟告 등.
- 3 牒·關·通報類: 平關, 移關, 傳令, 牒呈, 呈文, 解由, 書目, 手本, 論報, 報狀, 告目, 稟告, 邸報, 朝報, 赴學狀, 帖, 甘結, 望記, 暑經單子, 謚號望記單子, 褒貶同議單子, 緘答, 遲晚, 回通, 檢狀, 榜文, 露布, 先尺, 彙報, 外報, 廣告 등.
- 4 證憑類: 尺文, 馬帖, 草料, 路文, 行狀, 古風, 行下, 立案, 立旨, 題辭, 準戶口, 照訖帖, 完文, 俵音, 傳准, 驗標, 手標, 換簡, 完議, 立議, 立後成文, 遺書, 帖給 등.
- 5 明文·文記類: 分財記, 和會文記, 分給文記, 衿給文記, 別給文記, 許與文記, 奴婢文記, 贖身文記, 自賣文記, 贖良文記, 土地文記, 山地文記, 林野文記, 家舍文記, 漁場文記, 鹽盆文記, 船隻文記, 牛馬文記, 柴場文記, 京主人文記, 貢人文記, 其人文記, 監官文記, 導掌文記, 旅閣主人文記, 船主人文記, 典當文記, 牌旨 등.
- 6 書簡·通告類: 通文, 回文, 通牒, 答牒, 簡札, 書狀, 慰狀, 賻儀單子, 通告, 諺簡札, 婚書, 檄文, 昌義門, 問目, 箋文 등.
- 7 置簿·記錄類: 上下記, 捧上記, 秋收記, 禾谷記, 打租記, 春精記, 田畝置簿, 奴婢置簿, 頒賜記, 分定記, 擇日記, 婚需記, 四星錄, 問卜錄, 病錄, 和劑, 弔客錄, 扶助記, 笏記, 契會錄, 時到記, 衿記, 備忘記, 不忘記, 日記, 事蹟記, 先生案, 官案, 青衿案 등.
- 8 詩文類: 辭, 賦, 詩, 文, 祭文, 祝文, 齋詞, 青詞, 哀詞, 誄, 行狀, 遺事, 碑, 碑銘, 墓誌, 試券, 名紙, 科試 등.
- 9 外交·文書類

35)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36) 윤병태·박옥화·장순범, 『한국고문서정리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남한의 고문서 분류법이 일치를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각 기준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고문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민족고전목록』 고문서부(2008)의 분류를 통하여 엿볼 수 있는 북한의 고문서 분류는 체계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며, 학문적인 엄밀성이 보다 요청된다. 『민족고전목록』을 통하여 북한의 고문서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고문서 분류〉 『민족고전목록』 고문서부(2008)

- | |
|--|
| <p>① 정서문서류: 告示, 告目, 公文, 記錄, 關, 勸諭文, 綸音, 立案, 立議, 報告書, 事目, 上疏, 所志, 受教, 咨文, 傳令, 節目, 指示文, 牒呈, 通文, 訓令, 訓示, 會盟文, 案, 仰呈, 完文, 甘結, 檄文, 教書, 郡令, 寄別紙, 單子, 等狀, 履歷書, 立旨, 問情, 榜目, 復戶帖, 上書, 書簡, 書契, 書日, 手本, 狀啓, 指令, 尊號狀, 筭子, 帖文, 草稿, 草記, 策文, 通文, 褒彰文, 稟目, 鄉約, 解由帖, 行下, 諭, 日記 등.</p> <p>② 임명문서류: 記錄, 榜目, 案, 教書, 教旨, 關, 官旨, 圈點記, 單子, 望記, 書目, 所志, 頌, 謚號狀, 傳令, 照詔帖, 差帖, 帖文, 牒呈, 勅令, 勅命, 護戒牒, 訓令, 諭, 完文 등.</p> <p>③ 상벌문서류: 錄券, 教書, 立案, 明文, 別給文, 成文, 行下, 案, 諭 등.</p> <p>④ 소송문서류: 宣告書, 訴告狀, 所志, 案, 告目, 記錄, 單子, 等狀, 立旨, 立議, 明文, 文記, 別給文, 分給文, 上書, 上疏, 成文, 手本, 指令, 節目, 條目, 陳告狀, 帖文, 判決書, 標, 仰呈, 遺書, 原情 등.</p> <p>⑤ 호적문서류: 單子, 戶籍, 案, 傳準 등.</p> <p>⑥ 토지문서류: 踏驗, 案, 記錄, 官契, 單子, 立旨, 文記, 憑票, 手記, 證書 등.</p> <p>⑦ 매매문서류: 契約書, 侂音, 贍本, 領受証, 立旨, 明文, 不忘記, 成文, 手標, 申請書, 證書, 帖文, 標, 於音 등.</p> <p>⑧ 기타문서류: 記錄, 立案, 立議, 名簿, 文記, 生番記, 傳掌記, 節目, 重記, 座日, 請願書, 下記, 會計, 案, 郵便, 契約書, 官契, 侂音, 單子, 領受証, 路文, 墓表, 復戶帖, 赴學狀, 部照, 不忘記, 憑票, 書簡, 成文, 爻周標, 手記, 尺文, 條目, 尊號狀, 證書, 帖記, 草料, 通告書, 通文, 標, 婚書, 笏記, 訓示, 行下, 會盟文, 遺書 등.</p> |
|--|

이러한 고문서의 분류를 내용에 따른 것이라 하지만 이상의 8개 유형만으로는 고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에는 내용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일관성이 부족하며 고문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로 인하여 '기타문서류'에는 다량의, 매우 다양한 성격의 고문서들이 한꺼번에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첫 번째 유형인 '정서문서류'부터 그 성격을 가늠하기 어렵다. 자료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왕과 관부, 민간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혼재되어 있고, 지시와 보고, 권리의 증명은 물론, 편지도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일기와 같은 기록류 자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머지 분류들도 각각 임명, 상벌, 소송, 호적, 토지, 매매 등 내용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있다고는 하나 문서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적 분류로써 경계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동일한 성격의 문서가 서로 다른 유형에 분류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유형만을 가지고는 다종다양한 고문서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전체적으로 8개 유형을 기본으로 하는 북한의 고문서 분류는 체계적이기보다는 편의에 따른 내용 구분으로 보인다. 고문서를 성격에 따라 분류, 정의하고 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운 것이기보다는 기관, 또는 작업자들이 개별 고문서들의 내용을 파악하여 8개 유형

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민족고전목록』 고문서부(2008)를 통하여 엿볼 수 있는 북한의 고문서 분류목록은 학술적으로 확립된 체계적인 분류라기보다는 각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들을 관리하기 위한 편의적 차원의 목록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관별, 그리고 작업자 별로 역량과 주관에 따른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고문서의 관리와 활용에 있어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고문서에 대한 북한 학계의 현재 상황은 매우 엄중해 보인다.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과학기술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귀중한 유산인 고문서들에 대한 학술적연구를 심화시켜나감”³⁷⁾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의 정보화 수준을 따라오기는 버거워 보인다. 다음의 양식은 리철이 2019년 국제고려학회에서 제안한 고문서 입력카드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미지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실제 운영 중인 작업 화면이다.

민족고전문헌 고문서의 입력카드

기본 기입 사항	문서명	별급자	관직, 신분관계					
	번역문서명	번역별급자						
	계렬명칭	수급자						
	번역계렬명칭	번역수급자						
	작성일자	서기년도 조선년호, 중국년호, 간지	작성자	분류기호				
형태 적 사 항	장정	선장, 낱장, 권자, 첩장, 선풍엽	재질	종이, 천	문 자			한문, 국한문, 리두 국문
		체식						
수량 사 항	매수	내용사항			해제			
	크기				실마리어			

그림 2. 리철이 제안하는 고문서 서지 입력카드

37) 리철, 앞의 논문, 403쪽.

기본정보						
자료ID	FO0601-01-W000063	RFID	J007P6	태그재발행		
자료군	광주광역시 순암안정복 증가 전적(廣州 釜谷 慶州 安氏 靜庵 安鼎福 宗家 典籍)	상세정보	수집차수	1		
원서분류	교양류(敎育類) > 고신(告身) > [선택]	자동완성 입력				
내용분류	정치 행정 > 입면 > 고신 > 자동완성 입력					
관명명	1839년 안효근(安孝根) 고신(告身)	자동생성(수취)	자동생성(발급)			
문서명	告身	자동생성	원문 문서명	원문 문서명		
발급시기	원문정보	道光十九年六月 日	미상	장막	종류 5	원문보기
	서기	<input type="checkbox"/> 양력 1839		추정	추정	
발급지	원문정보	충청	미상	* 로마() 으로 구분		
	한자명	충청	한급명	이조		
수취지	원문정보	進士 安孝根	미상	* 로마() 으로 구분		
	한자명	安孝根	한급명	안효근		
주기사항	정의	정의				
	내용	通德殿(正五品上) 行 翼陵命후에 임명함. * 背面 : 更美 吳 祥 謙				
서명	行判書(判書) <복손>					* 세미로폰() 으로 구분
인장	表符(2타)(8.2*8.5)					* 세미로폰() 으로 구분
관수	1	크기(cm)	세로 52.5	가로 75.2		
연구기호	연구기호					
MF원문번호	MF원문번호	MF촬영현황	촬영번호	일대연번	촬영정보	
MARC정보	MARC정보					
문외제지정	[선택]	지정번호	지정번호	지정년도	지정년도	
수집고	제수집고	서기위치	[선택]	단위지	[선택]	
원문이미지관리		디지털장서각	미적재	자동적재	디지털장서각통합ID	디지털장서각ID
우선업무	[선택]	원문번호	<input type="checkbox"/> 반납완료	반납일자	자동원환일자	
비고	비고					

[저장](#) [정보저장](#)

연계 정보					
경연문서	순서	결연문서	결연문서	결연문서	상세정보
연결문서	순서	연결문서	연결문서	연구기호	상세정보
목록문서	순서	목록문서	목록문서	연구기호	상세정보
웹서비스	웹서비스명	서비스URL			비밀보기

디지털활성화 이미지 - 0 건										
번호	기본그룹	파일명	파일구분	파일크기	스트리밍	공개여부	등록자	등록일		
데이터가 없습니다										
										1 / 0

관리 정보			
입고상태	입고	최초입고일자	1900-01-01
이용상태		의뢰상태	
보존처리		상세정보	
활용관리		상세정보	
기증기탁구입		상세정보	

수정 이력 - 0 건				
번호	상위구분	하위구분	작업내용	수정자
데이터가 없습니다				
				1 / 0

그림 3. 장서각 자료관리 통합시스템 - 고문서 자료정리 화면

고서와 고문서 등 고문헌 자료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기 이전의 과거에 생산되어 전해진 공통의 문화유산이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공유하는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현재 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제약받아 온 우리의 역사와 문화 등 한국학 연구를 보다 풍부히 하고 온전하게 할 기초로서의 현재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남한의 고문헌학과 북한의 민족고전학이 보여주는 일정한 학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문헌 자료가 지니는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남·북한간의 고문헌 자료에 대한 학술적 교류는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라면 고서와 고문서에 대한 분류 체계의 차이가 그 협력과 활용을 어렵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처리 능력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에는 기술적 대응을 통하여 얼마든지 통합과 활용이 가능하다. 남한과 북한의 분단 지형을 넘어 우리의 고문헌들을 공통의 문화유산으로 자유롭게 다루어 나갈 날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일성,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김일성이 1952년 4월 27일 과학자대회에서 한 연설), 『김일성저작집』 7,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 리기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유적유물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과학론문집』 18,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3. 리영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80년대에 력사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 『력사과학』 1990년 1호, 1990.
4. 리영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화발전한 주체의 력사과학」, 『력사과학』 1994년 4호, 1994.
5. 리영환, 「주체력사과학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과학리론잡지-《력사과학》」, 『력사과학』 2006년 4호, 2006.
6. 리 철, 「우리 나라 고문서의 유형과 고문서목록작성에서 나서는 문제」, 『국제고려학』 제 18호, 국제고려학회, 2020.
7. 오희복, 『민족고전학 개론』, 사회과학출판사, 2015.
8. 윤국일, 「민족고전학의 연구에서 제기되는 문제」, 『력사과학』 1996년 제4호, 1996.
9. 이영화, 「북한 역사학의 학문체계와 연구동향」, 『한국사학사학보』 15, 한국사학사학회, 2007.
10.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력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력사과학』 1981년 4호, 1981.
11. 전영률, 「주체의 력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력사과학』 1985년 3호, 1985.
12.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력사과학』 1988년 3호, 1988.
13.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1981.
14. 최영식, 「조선 문헌학의 대상과 과업」, 『력사과학』 1965년 6호, 1965.

15. 허원영, 「북한 역사학의 전개와 연구동향 -『역사과학』(1955~2017)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28집,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16. 허원영, 「고문헌과 민족고전학, 고문헌을 다루는 남과 북의 학문적 입장」, 『藏書閣』 4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0.
17. 「(학계소식)과학원 고전 연구실 사업」, 『역사과학』 1959년 4호, 1959.
18. 「8.15 해방후 조선 력사 학계가 걸어 온 길」, 『역사과학』 1960년 4호, 1960.
19. 「(권두언)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 이후 우리 력사 학계가 거둔 성과」, 『역사과학』 1961년 5호, 1961.



발표3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현황

이규철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현황

2020.7.23.

2020년 제2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이규철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목차

- I.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기초 자료 현황
- II.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 III. 개성역사유적지구 보존 및 관리의 제언

* 이 발표문은 2019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주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수행한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 남북공동 보존 기본계획 연구>(연구책임: 이규철)의 성과와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제도적 관리 현황과 특성」(이규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0.6.)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 이 발표문은 2019년 말까지의 현황을 확인하여 작성되었고, 2020년 1월 이후에 개성역사유적지구의 현황이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I.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기초 자료 현황

- 1.1. 개성 관련 연구의 현황
- 1.2.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문헌 자료
- 1.3. 개성 일대의 남북 협력 사업 현황

I.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기초 자료 현황

1.1 개성 관련 연구의 현황

4/62

1 개성 관련 문헌 자료

■ 국내 단행본 (111건)

연번	저자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중일 중세도시 - 한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8
2	국사편찬위원회	고려건국 천백주년 기념: 개성의 역사와 유적	국사편찬위원회	2018
3	박종진	(박종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두근두근 개성 답사	청년사	2018
4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남북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북한의 현실과 남북협력	역사인	2018
5	국사편찬위원회	고려건국 천백주년 기념: 개성의 역사와 유적	국사편찬위원회	2018
6	박종진	(박종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두근두근 개성 답사	청년사	2018
7	알문수 외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경제협력 재개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경기연구원	2016
8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고려 황궁 개성 만월대: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출토유물 전시회 도록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6
9	문광선	(세계문화유산) 개성	역사인	2016
10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II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11	강화고려역사재단	두 개의 수도, 하나의 마음: 개성과 강화,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다	강화고려역사재단	2014
12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14 개성한옥 보존사업 성과 보고서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15
13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원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원	2014
14	이상준 외	개성의 문화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5	이상준 외	개성일대 문화유적 현황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참지로 보는)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4 : 경기도·황해도	국학자료원	2013
17	경기도·경기문화재단	동아시아 주거문화와 경기지역 전통한옥의 기치 : 개성 지역 전통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중심으로	경기도·경기문화재단	2012
18	박소영	개성 각경이의 사회주의적 적응사 : 북한 신해방지구 개성의 변화	선인	2012
19	문광선, 홍남기	개성: 고려 千年의都	월의木舎	2009
20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개발사	한국토지공사	2009
21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	2008년 개성관광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고서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경기도·경기문화재단

- 개성, 개경, 북한, 고려를 키워드로 개성 관련 문헌들을 검색하였고, 현재까지 총 111건의 국내 문헌 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경기도·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토지주택공사 도시주택연구원 등에서 다수의 문헌 발간
- 개성 관련 국내 단행본은 개성역사유적지구 외에도 개성공단, 개성한옥, 개성관광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음

1.1 개성 관련 연구의 현황

5/62

1 개성 관련 문헌 자료

북한 단행본 (47건)

연번	저자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1	강광수	(관광안내) 개성	관광선전동회사	-
2	KORYO TOURS	THE KORYO GUIDE TO NORTH KOREA (DPRK)	KORYO TOURS	2019
3	-	고려도읍 개성의 민족유산 -고려 건국 1100주에 즈음하여-	외국문출판사	2018
4	민족유산보호지도국, 프랑스극동연구원	조선-프랑스 개성성 공동조사발굴전시회 도록	민족유산보호지도국, 프랑스극동연구원	2017
5	김정철	세계유산-개성의 역사유적	조선민족유산보존사	2014
6	리기용, 변봉문	개성관음사	조선문화보존사	2012
7	리철, 리기용	개성명동사	조선문화보존사	2005
8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법률출판사	2005
9	리철 외	문화유산 애호가들의 벗	조선문화보존사	2005
10	-	평동사유적발굴보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개성시소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4
11	-	평동사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개성시소재 : 도판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4
12	김성복	(고려의 옛수도) 개성	조선중앙사진선전사	2004
13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문화유산연구원	조선왕릉대백과 2 : 남포시·개성시·라선시	평화문예연구소	2004
14	전용철, 김진석	개성의 옛 자취를 더듬어	문화예술출판사	2002
15	리순신 외	조선역사상식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8
16	문관심, 방환주	개성고려인상	외국문출판사	1992
17	-	조선유적유물도감 11 : 고려편 (2)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2
18	-	조선유적유물도감 12 : 고려편 (3)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2
19	-	조선유적유물도감 10 : 고려편 (1)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1
20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우리나라 역사유적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21	김일성	개성시 당단체들의 과업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북한자료센터, 북한대학원대학교 도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에서 북한단행본 총 47권 확인
- 북한에서 발행된 개성 관련 단행본은 과거부터 꾸준히 **개성의 유물·유적 및 역사**를 주제로 하는 도서 발간
- 조선유적유물도감 시리즈의 경우 총 7편이 개성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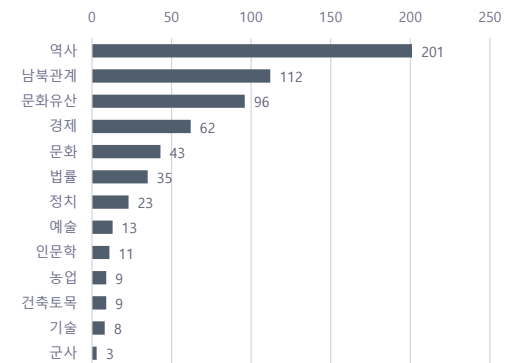
1.1 개성 관련 연구의 현황

6/62

2 개성 관련 연구 현황

국내 논문 (628건)

연번	저자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1	권학래	고전문학에 그려진 개성상인 형상 연구	열성고전연구회	2018년
2	박소영, 민경숙	북한의 역사도시 개성지역 관리보존정책의 흐름과 특징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년
3	김정현	고려 개성부와 조선초 한성부의 지체와 영역	서울역사편찬원	2017년
4	신동훈	조선 초기 사학(四學)의 성립과 '개성 학당(開城 學堂)'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6년
5	윤정	정종대 상왕 태조의 입어와 개성 덕수궁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5년
6	박소영	사회주의 도시 '개성'의 연속과 변화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2015년
7	노관범	조선 후기 開城의 儒學 전통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4년
8	박성진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14년
9	변광석	조선시대 개성 출신인의 지역 인식	효원사학회	2013년
10	박성진	북한 문화유산 목록(6 : 개성역사유적지구 : 한반도 중세문화의 장수 개성 세계가 인정하다)	평화문제연구소	2013년
11	박종진	조선 후기 개성읍지에 기록된 '개성'의 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년
12	박성진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13년
13	노혜경, 노태범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경쟁과 상생	한국경영사학회	2012년
14	박종진	고려전기 開城府의 변천과 지리적 범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년
15	한희숙	조선 초기 개성의 경관 변화	조선시대사학회	2012년
16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왕실 출신 화엄종 5 국사(國師)를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2011년
17	한희숙	조선 초기 개성의 위상과 기능	한국역사연구회	2011년
18	홍영미	조선 후기 회화와 지도에 기록된 개성의 유적과 경관	한국역사연구회	2011년
19	박종진	총론 : 개성(개성) 연구의 새로운 모색-인적 네트워크와 경관	한국역사연구회	2011년
20	정종현	일본제국기 開城의 지역성과 (일)서민의 문화기획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년



- 국내에서 출판된 개성 관련 연구 중 연구진이 현재까지 확인한 논문은 총 628건으로, 그 중 **역사·남북관계·문화유산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연구 진행
- **북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정치·경제 분야**의 연구가 월등히 많았지만, **개성에 한정했을 때는 역사·문화유산** 관련 연구가 다수

1.1 개성 관련 연구의 현황

7/62

2 개성 관련 연구 현황

북한 논문 (200건)

연번	저자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1	김강호	우리 민족의 뛰어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고려시기 탑들	문학예술출판사	2018년
2	김은택	첫 통일국가 고려의 성립과 그 의의	김원성종합대학	2018년
3	김인일(박사)	개성성의 도성문헌에서 새로 알려진 문헌들에 대하여	조선문화보존사	2018년
4	윤형미	고려시기 상서정부의 확립과정에 대하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년
5	전동철	호칭에 반영된 고려국왕들의 황제적지위	김원성종합대학	2018년
6	조광	은둔지방시절을 통해 본 고구려-고려계승관계에 대한 분석	김원성종합대학	2018년
7	조광	고려시기 성립방앗총채와 그 리용풍습	조선문화보존사	2018년
8	주성철(박사)	고려의 건국과 그 역사적의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8년
9	김창길	개성일대의 고려금석문유산	조선문화보존사	2017년
10	리수련	개성지방이 풍부한 관광유산을 가지게 된 사회사적전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년
11	리수련	개성지방 역사유적의 특징과 관광적의의	조선문화보존사	2017년
12	리인석	개성시 해선리에서 새로 발굴된 고려왕릉들	조선문화보존사	2017년
13	본사기자	새로 발굴된 고려15대왕의 무덤 <유적소개>	천리마사	2017년
14	김광혁	(사진)개성시 해선리 담동 1릉에서 나온 유물	사회과학출판사	2016년
15	김인철(박사), 박종명	개성시 룡흥동 1호돌간출무덤 발굴보고	사회과학출판사	2014년
16	주성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의 역사유적들	천리마사	2014년
17	본사기자	고려시기의 우수한 돌조각술	문학예술출판사	2011년
18	특파기자	문화유적관리에 힘을 넣어	천리마사	2010년
19	허태선	<백두산3대장군과 민족문화유산> 고려대조 왕건왕릉개건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어	민족문화유산	2009년
20	함설경	<상식> 만월대에서 또다시 발견된 고려청자기와	민족문화유산	2009년



1.1 개성 관련 연구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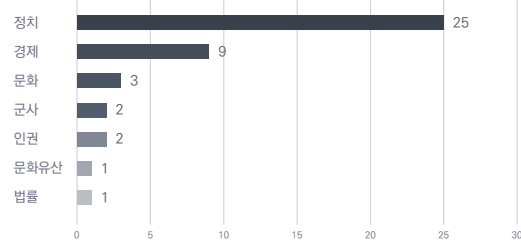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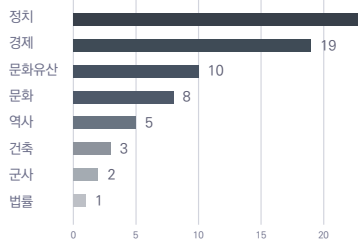
8/62

2 개성 관련 연구 현황

일본 논문 (79건), 그 외 해외 논문 (44건)

연번	저자	제목 (번역)	발행기관	발행년도
1	濱田 耕策	高麗開城の演福寺鐘の漢字銘文注解(前)	朝鮮学会	2019
2	森澤 久雄	高麗・朝鮮時代における開城商人の商人道に関する研究 ：開城商人(人參商人)と日本との関わりを探りながら	岐阜女子大学地域文化研究所	2018
3	張慶姫	北朝鮮の博物館	同成社	2018
4	キムジニャン	開城工団の人々 ：毎日小さな統一が達成される奇跡的空間	地湧社	2017
5	末松保和	高麗朝史と朝鮮朝史 オンデマンド版	吉川弘文館	2017
6	金 ジュンサン	開城工業団地の閉鎖、後悔だけが残る	統一評論新社	2016
7	朴 ヘジョン	6・15、10・4大連立で開城工団を活かそう ：開城工団全面中断と関連して	統一評論新社	2016

연번	저자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1	IS Kim, HK Cho	Shutting Dow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 A "Coitional Bargaining" Framework	Asian Politics & Policy	2019
2	NMP Bojikian	A Política de engajamento do governo Moon para a Coreia do Norte eo Complexo Industrial de Kaesong	Mundo e Desenvolvimento	2018
3	MF Arpan, S Harto	Motivasi Korea Utara Memutuskan Hubungan Kerjasama dengan Korea Selatan di Kawasan Industri Kaesong	Jurnal Online Mahasiswa	2018
4	EKA SUPRIYANTI	UPAYA DUA KOREA MEMBANGUN PERDAMAIAN PASCA PENUTUPAN KOMPLEKS INDUSTRI KAESONG 2016	unila	2018
5	S Byung-Chul, B Seliger	Der Arbeitsmarkt in Nordkorea am Beispiel des Industriekomplexes in Kaesong	econstor	2017
6	LE Easley	Kaesong and THAAD: South Korea's decisions to counter the north	World Affairs	2016
7	R Frank	The Kaesong Closure: Punishment or Shot in the Foot?	SSRN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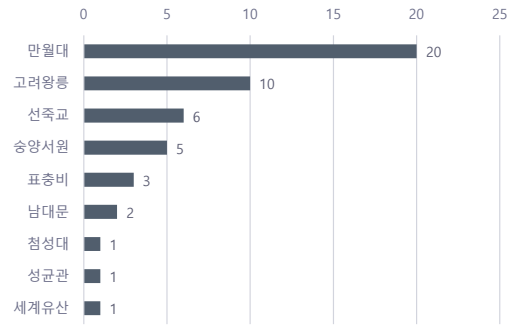
1.2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문헌 자료

9/62

1 연구 문헌

■ 국내 논문 (48건)

연번	저자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1	박지영	고려공성 출토 영문·기호 청자 고찰	문화재	2019년
2	홍영의	조선시대 고려왕릉의 현황과 보존관리 실태	한국중세고학회	2019년
3	권두규	고려 왕릉의 봉분 형태	한국중세고학회	2019년
4	조두림	[동양의 길] 포커스 : 함께 발굴하는 민족의 역사 ... 고려왕릉 만월대, 3D로 재단성!	통일한국	2018년
5	허문식	북한의 문화유산 활용 방안(案) : 매점문화재	한국고학회	2018년
6	지두원	송양서원의 성쇠와 포은 = Prosperity and decline of Sungyang Seowon(崑陽書院) and Pooun(圃邇)	포은학연구	2017년
7	홍순석	조선시대 문인들의 선죽교에 대한 인식과 시적 형상	포은학연구	2017년
8	공중도	청대 송양서원 생원모집 및 교학활동	한국서원학회	2017년
9	홍영의	「개성 고려공성(만월대) 조사를 통해 본 고고분야 남북 협력방안」에 대한 토론문	한국고고학회학술회의	2016년
10	박성진	Manwoldae, the Main Royal Palace of the Goryeo Empire	국립문화재연구소	2016년
11	박성진	개성 고려공성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최신 조사성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6년
12	박성진	개성 고려공성(만월대) 조사를 통해 본 고고분야 남북 협력방안	한국고고학회	2016년
13	박대남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고려왕릉	북한연구소	2016년
14	통일한국, 편집부	[동양의 길] CAMERA FOCUS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 남북 문화협력의 길을 가다	통일한국	2015년
15	박성진	Culture 365 : 북한문화유산 특색 11 : "보수 복원" 대신 "개간"된 왕건왕릉	통일한국	2013년
16	박성진	북한 문화유산 특색 1 : 개성 고려공성 "만월대"란 이름으로 잊어진 고려 정궁(正宮)	평화문화연구소	2013년
17	박성진	북한 문화유산 특색 2 : 공민왕릉 : 우리 손으로 이어가는 고려의 흔적	통일한국	2013년
18	박성진	북한 문화유산 특색 3 : 개성 성군관, 고려 인제의 산실	통일한국	2013년



- 개성역사유적지구 및 12개 개별 유적과 관련된 국내 논문 총 48건 확인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의 시행으로 만월대 발굴 조사의 경과와 이와 관련한 연구가 주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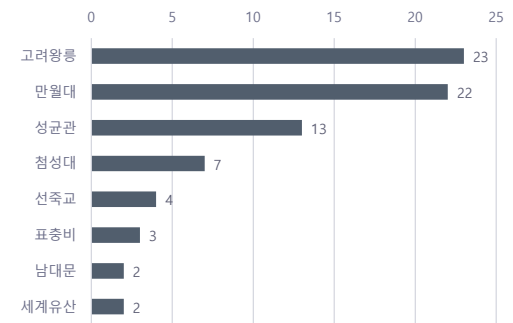
1.2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문헌 자료

10/62

1 연구 문헌

■ 북한 논문 (43건)

연번	저자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1	조희승	최근 개성 만월대서부건축군에서 새로 드러난 금속활자에 대하여(3)	과학백과사전	2018
2	조정철	만월대에서 발굴된 금속활자와 청자꽃모양점시에 대하여	조선문화보존사	2018
3	김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빛내어주시는 질서의 예극자	조선문화보존사	2018
4	리상철	만월대	문학예술출판사	2018
5	리상철	고려성군관 (유적소개)	천리마사	2018
6	윤광수	문화유산을 통해 본 우리 민족의 우수성	천리마사	2018
7	본사기자	세로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유적소개)	천리마사	2018
8	본사기자	고려성군관	천리마사	2017
9	리영식	고려의 대화공터유적과 만월대유적의 관계	김일성종합대학	2017
10	리수연	개성 지방 역사유적의 특징과 관광적의의	조선문화보존사	2017
11	주성철	개성첨성대와 고려천문학의 발전	과학백과사전	2017
12	최영철	명승지들의 역사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영도	과학백과사전	2017
13	최광철	고려성군관과 더불어 유구한 민족교육사를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어머니	교육신문사	2016
14	-	(토박산성) 만월대	문학예술출판사	2015
15	정세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1지구 윗문화층 공전유적들의 중간유적들의 평면배치 및 구조형식	사회과학출판사	2014
16	최현아	개성남대문	조선문화보존사	2012
17	본사기자	세로 발굴된 고구려시기 첨성대유적 (유적소개)	천리마사	2010
18	정성숙	공민왕릉	조선문화보존사	2006
19	본사기자	(역사소개) 첫 통일국가 고려의 상징 - 왕건왕릉	문학예술출판사	2006
20	김우경	백두광명성성상: 눈물흘린 표충비	문학예술출판사	2003
21	천석근	[유물소개] 고려태조 왕건의 금동좌상	조선문화보존사	2001
22	김용철	12지신의 조형적형상과 공민왕릉벽화	문학예술출판사	2000
23	김민철	고려돌기문무덤의 유형과 변천	사회과학출판사	2000



- 총 200건의 개성관련 논문 중 43건이 개성역사유적지구와 관련
- 고려왕릉 관련 연구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시행으로 만월대 관련 연구가 다수를 차지
-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지정 이후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개별 유적에 대한 연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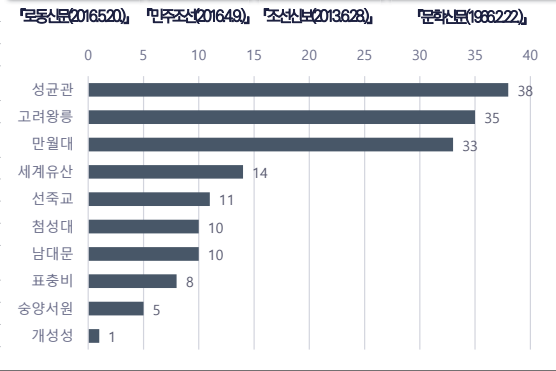
1.2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한 문헌 자료

11/62

2 언론 보도 자료

북한 신문 (131건)

연번	발행기관	제목	간행물	발행년도
1	조선중앙통신	개성함성대를 통해 알수 있는 고려의 높은 천문관측수준	조선중앙통신사	2018년
2	조선의 오늘	고려박물관에 깃든 서연	조선의 오늘	2018년
3	-	만월대에서 발굴된 문화유물	로동신문사	2018년
4	조선의 오늘	개성 만월대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조선의 오늘	2018년
5	통일신보사	왕건왕릉, 삼계탕, 박연목포... 개성관광의 이채로움	통일신보	2018년
6	조선중앙통신	개성에서 고려건국 1100돐기념 토론회, 력사와 문화를 해설문증	로동신문사	2018년
7	조선의 오늘	고려태조 왕건왕릉	조선의 오늘	2017년
8	조선의 오늘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새 모습을 갖춘 왕건왕릉	조선의 오늘	2017년
9	조선의 오늘	웅장하게 개건된 왕건왕릉	조선의 오늘	2017년
10	조선의 오늘	세계문화유산 - 고구려벽화무덤	조선의 오늘	2017년
11	조선중앙통신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금속활자와 그 문화사적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로동신문사	2016년
12	조선의 오늘	고려왕궁터-만월대유적	조선의 오늘	2016년
13	민주조선편집위원회	개성 만월대에서 발굴된 고려금속 활자와 그 문화사적의의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민주조선	2016년
14	민주조선편집위원회	수십개 대상의 력사유적들을 보수-개성시에서	민주조선	2016년
15	-	개성의 만월대유적	조선의 오늘	2016년
16	-	개성지구에서 고려시기의 왕릉들을 새로 발굴	조선의 오늘	2016년
17	-	력사의 이따금에 묻혀있던 개성의 평동사	조선의 오늘	2016년
18	조선중앙통신	수십개 대상의 력사유적들을 보수-개성시에서	민주조선 편집위원회	2016년
19	-	개성남대문과 연복사종	조선의 오늘	2015년
20	-	력사유적 표충비	조선의 오늘	2015년
21	조선의 오늘	웅장하게 개건된 왕건왕릉	조선의 오늘	2015년



1.3 개성 일대의 남북 협력 사업 현황

12/62

1 개성관련 사업 현황

연번	조직	구분	주요 사업	사업 기간
1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특별전	2018.12.4. - 2019.3.3.
		전시	「고려 왕실의 도자기」	2008.12.2. - 2009.5.10.
		전시	「북녘의 문화유산 - 평양에서 온 국보들」 특별전	2006.6.13. - 2006.8.16.
2	국사편찬위원회	출판	개성의 력사와 유적	2018
		사업	1차 개성한옥 보존사업	2012.3. - 2012.12.
3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업	2차 개성한옥 보존사업	2013.6. - 2013.12.
		사업	3차 개성한옥 보존사업	2014.2. - 2015.1.
		학회	개성한옥 보존사업 국제 학술회의	2012.10.24. - 2012.10.25.
4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2007(1차-2차); 2008(3차); 2010(4차); 2011(5차); 2014(6차); 2015(7차); 2018(8차)
		전시	「고려항공 개성 만월대」	2015.10.13. - 2015.11.6.
		전시	「고려건국 1100년 고려항공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평창특별전	2018.2.10. - 2018.3.8.
		학회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유적 답사	2005.11.18. - 2005.11.21.
5	대한불교 천태종	학회	개성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전시회 및 학술토론회	2015.10.15. - 2015.11.15.
		사업	개성 영동사 발굴·복원사업	2002.11. - 2005.10.
6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사업	개성 국청사지 발굴·복원사업 추진	-
		사업	동원기반구조사-분야별 연구지원	2015 - 현재
7	토지주택공사	사업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 조성사업	2002. - 2007.
		사업	개성공업지구 1단계 문화유적 남·북 공동조사	2004.4.20. - 2004.7.31.
8	토지주택박물관	사업	개성공업지구 2단계 남북공동 문화유적 지표조사	2008.1.25. - 2008.3.29.
		사업	개성 고고학 연구사업	2011. - 현재
9	프랑스 극동연구원	사업	개성 고고학 연구사업 연계 전시회	2014. 2015
		전시	「북에 있는 10대 민족문화유산」 취재 및 보도	2001
10	한국방송공사	보도	「북에 있는 10대 민족문화유산」 취재 및 보도	2001
		사업	개성 관광사업	2005.8(사범관광); 2007.12. - 2008.11.
11	현대아산	사업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	2003.6. - 7
		사업	개성관광사업	2005.8(사범관광); 2007.12. - 2008.11.
12	JTBC	보도	JTBC 다큐멘터리: 두 도시 이야기-수원과 개성	2019.9.12-13.

1.3 개성 일대의 남북 협력 사업 현황

13/62

2 주요 사업의 개요 및 시행 경과

- 토지구택공사 <남북경제협력 개성공단 조성사업 (2002. - 2007.)>
- 토지구택박물관 <개성공업지구·북 공동 (지표)조사 (2004; 2008)>
 -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조성은 토지구택공사가 자금조달·설계·감리·분양을 맡음
 -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대지면적 3,306천㎡, 사업자금 2,676억원(토지구택공사 1,103억, 남북협력기금 1,573억) 규모
 - 2004년 토지구택박물관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지원으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성공업지구 1단계 사업 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원 약 100만평에 대한 지표·사굴 발굴조사 실시
 - 2008년 개성공업지구 2단계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지표조사는 250만평의 부지에서 총 21개소의 유물(산포지) 조사

일정	사업 내용 (협의 장소)	일정	사업 내용 (협의 장소)
2000.8.	토지구택공사-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 협의서 체결	2008.3.4. - 2008.3.20.	토지구택박물관 2단계 사업지역 중 남쪽지역 현장조사 : 고려시대 대형 사찰지 혹은 이궁지로 추정되는 건축지 1개소 조사 : 구석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17개소 조사 : 조선시대 분묘 3개소 확인
2000.10.	개성지역 문화유산 대책협의회 구성 개성공단 예정지 문화재 현황과 보존방안에 대한 학술 보고회 개최		
2000.11.	개성공단 예정지의 문화재 현황과 보존방안에 대한 학술 보고회 개최		
2002. -2007.	토지구택공사 개성공단 1단계 개발 (개성시 봉동리 일원)		
2004.4.20. - 2004.5.6.	토지구택박물관 1단계 사업지역 지표조사 실시 : 구석기, 신석기, 고려, 조선시대 유물 수집, 조선시대 분묘 4기 확인		
2004.6.24. - 2004.7.31.	토지구택박물관 1단계 사업지역 유적 사·발굴 조사 : 삼국시대 전기 주거지 1기 조사 : 고려시대 건물지 4기 및 운돌 유구 조사 : 고려시대-근대 토광묘 19기, 화곽묘 13기, 화장묘 2기, 석곽묘 1기 조사 : 도기, 토기, 자기, 기와, 전, 구슬, 철유 등 유물 수습		
2008.2.26. - 2008.2.27.	토지구택박물관 2단계 사업지역 사전답사		

1.3 개성 일대의 남북 협력 사업 현황

14/62

2 주요 사업의 개요 및 시행 경과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2007.5.15. ~ 2018.12.10.)>
 - 북측의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사업은 남측의 남
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함께 약 10여년 간 총 8차례의 사·발굴 조사를 진행

일정	사업 내용 (협의 장소)	일정	사업 내용 (협의 장소)
2006.6.1.	만월대 발굴 협의서 작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성)	2009.6.21.	남북역사학자협의회-민족화해협의회 간 실무협의 (중국 심양)
2007.3.15. - 2007.3.16.	2006년 사업 전면중단 이후 발굴조사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협의 (개성)	2009.12.15.	남북역사학자협의회-민족화해협의회 간 실무협의 (개성)
2007.5.15. - 2007.7.13.	제1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서부건축군 33,000㎡지역 전역에서 만월대 궁궐 유적 및 건물지 확인	2010.1.26.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개성)
2007.8.16.	제2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개성)	2010.3.5.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및 개성 만월대 방문
2007.9.3. - 2007.11.16.	제2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1건물지구의 아(瓦)자형 건물 평면 확인, 축대 변화 및 2,000여 점의 유물 수집	2010.3.23. - 2010.5.18.	제4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건역전공의 일부 현황 확인, 자연 구릉의 본래 형태 확인
2007.10.2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실시단 개성 만월대 방문	2010.4.12.	3D 스캐닝 기술팀 방북 및 북측 교육
2007.10.30.	남측 자원위원 개성 만월대 방문	2011.10.28.	남북역사학자협의회-민족화해협의회 간 실무협의 (개성)
2008.3.25.	제3차 발굴조사 일정 연기를 위한 실무협의 (개성 지방산리관 면담실)	2011.11.14. - 2011.12.20.	제5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복구 보존조사 : 만월대 지역 수해로 인한 안전진단, 보존조사 및 3D 스캐닝 : 지하 유구의 교란 훼손 현황 파악, 배수로 복구보존조치
2008.6.7.	제3차 발굴조사 일정 연기를 위한 실무협의 (개성)	2011.11.15.	만월대 안전진단 착수
2008.10.6.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위한 실무협의	2011.11.24.	만월대 복구보존조치
2008.11.4. - 2008.12.23.	제3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경평전으로 추정 되는 곳 자취 발견	2011.12.16.	외부작업 축소 및 출토 유물 실측 기록 촬영 등 실내작업 매진
2008.11.28.	만월대 현장 자원위원회	2014.10.	남북역사학자협의회-민족화해협의회 간 실무협의 (중국 심양)
2009.2.24. - 2009.3.7.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남북공동 자원위원회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대회의실)	2014.7.22. - 2014.8.16.	제6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 왕실의 생활구역에서 집무구역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대형 계단 발견
2009.3.19.	남북역사학자협의회-민족화해협의회 수장실 장소 및 설계 협의	2015.6.1. - 2015.11.30.	제7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남북역사학자협의회-민족화해협의회 간 실무협의 (중국 심양)	2018.10.22. - 2018.12.10.	제8차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1.3 개성 일대의 남북 협력 사업 현황

15/62

2 주요 사업의 개요 및 시행 경과

■ 현대아산 <개성 관광사업 (2007.12. - 2008.)>,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 (2002. -)>

- 현대아산이 북측으로부터 50년간 백두산과 개성관광 독점사업권을 부여 받음
-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조성 시 남북을 잇는 도로 건설
- 2005년 8월말, 9월초 개성관광 시범사업: 총 1,643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행
- 2007년 실시된 개성관광 사업은 당일 코스로 관음사·선죽교·송양서원·고려박물관·박연폭포 등 개성의 명소 관광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1만여 명 관광
- 남북관계 경색으로 2008년 11월 29일 중단

일정	사업 내용 (협의 장소)
1998.6.	故 정주영 명예회장 소 1,001마리와 함께 방북
2000.8.	故 정몽헌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4차면담 후 7대 합의서 체결
2002.12.23.	북측 현대아산에 개성지역 약 2,000만평 토지이용중 발급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토지이용중 발급
2003.3.	개성관광사업 협력사업자 승인
2003.6.	개성공단 착공식
2005.2.	롯데관광, 개성관광열차 운행 사업을 위해 북측 접촉
2005.7.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1차면담
2005.8. - 2005.9.	개성시범관광 3차례 실시
2007.11.	현정은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차면담 (백두산 및 개성관광 협의)
2007.12. - 2008.11.	개성관광 실시



1.3 개성 일대의 남북 협력 사업 현황

16/62

2 주요 사업의 개요 및 시행 경과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개성한옥 보존 사업 (2012; 2013; 2014)>

- 경기도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3년에 걸쳐 '개성한옥 보존사업' 추진
- 개성한옥에 대해 학술조사 및 유지·보수 지원하여 민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취지
- 2015년 남북공동 학술대회 및 개성한옥 사진전 등을 추진하였으나 남북관계 악화로 사업 중단
-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2018년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 중단되었던 개성한옥 보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계획 발표
- 본 사업을 통해 개성한옥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사업 차수	구분	연도별 사업 주요내용	사업 기간
1차 개성한옥 보존사업	사업 예산	300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12.3. - 2012.12.
	주요 내용	개성역사지구 내 전통가옥에 대한 학술적, 민족적 가치 조사 보존을 위한 유지·보수 방안 모색	
2차 개성한옥 보존사업	사업 예산	440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13.6. - 2013.12.
	주요 내용	개성역사지구 내 전통가옥에 대한 남북공동 학술조사 보존(복원·정비)을 위한 학술적·기술적 방안 모색 남북공동 학술회의 개최 및 시범사업 추진	
3차 개성한옥 보존사업	사업 예산	660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2014.2. - 2015.1.
	주요 내용	개성지역 민족전통기어집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추진 개성지역 민족전통기어집 남북공동 학술조사 남북공동 보존사업(민속보존거리 16동) 추진	



1.3 개성 일대의 남북 협력 사업 현황

2 주요 사업의 개요 및 시행 경과

■ 프랑스 극동연구원 <개성 고고학 연구사업 (2011. - 현재)>

- 프랑스 극동연구원(EFEO)과 북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성 고고학 연구 사업 진행
- 프랑스 극동연구원 서울지부의 엘리자베스 사바늘(Elisabeth Chabanol)이 사업 책임
- 개성 고고학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성성 및 개성 남대문 조사·발굴 사업을 진행
- 2014년 조선민속박물관, 2015년 고려박물관에서 발굴 성과를 전시
- 현재까지 개성성 및 개성남대문 발굴에서 출토된 도자기 유물 연구를 진행
- 2019년에는 고려 왕릉과 관련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

일정	사업 내용 (협의 장소)	일정	사업 내용 (협의 장소)
2010.9.29.	개성의 역사와 고고학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방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중인 유산 방문	2014.4.17. - 2014.5.15.	개성 남대문 3차 발굴사업
2011.4.6.	"참자고 있는 개성: 문화유산과 한국의 역사적 수도" 학술회의 개최	2014.9.15.	프랑스 극동연구원-민족유산보호지도국 공동 전시 개최 : 북한 민속박물관 "개성성에 대한 공동발굴과 연구에 대한 전시" 개최
2011.11.2. - 2011.11.13.	북한 민족문화유산보호지도국과 개성성 모니터링 및 현장실사 수행	2015.4.20. - 2015.5.20.	개성 남대문 4차 발굴사업
2012.5.22. - 2012.5.31.	평양중앙역사박물관과 개성성 유적의 고고학 자료 기록화 논의	2015.7.10. - 2015.7.26.	"개성성에 대한 공동발굴과 연구에 대한 전시" 도록 작업을 위한 방북
2012.11.8. - 2012.11.18.	개성 남대문 남쪽 기저부 발굴	2016.2.18.	"개성성에 대한 공동발굴과 연구에 대한 전시" 관련 강연회 개최
2013.2.14.	엘리자베스 사바늘, 「한국의 경계선 허물기, 햇볕정책의 물질적, 비물질적 성과」 내 "개성경제특별구역의 문화유산 관리" 집필	2016.4.18. - 2016.5.16.	개성 남대문 5차 발굴작업
2013.6.2. - 2013.6.25.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인력에 훈련 교육 제공 개성 남대문 남측과 북측에 새로운 발굴 트렌치 설치	2017.7.6. - 2017.7.15.	개성 고고학 연구사업 관련 설문조사 캠페인을 위한 방북
2013.10.17. - 2013.10.28.	기존에 진행중인 발굴사업 지속 발굴 사업과 연계한 전시회 및 출판물에 대한 협의	2018.7.16. - 2018.7.28.	개성 남대문 및 개성성 발굴에서 출토된 도자기 유물 연구를 위한 방북
		2019.4.25. - 2019.5.9.	개성 유적지 및 평양 중앙역사박물관 방문
			고려 왕릉 관련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방북
		2019.8.26. - 2019.9.14.	개성 유적지 및 평양 중앙역사박물관 방문

II.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 2.1.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현황
-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개별 유적 조사 및 관리 현황
-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2.1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현황

19/62

1 세계유산 등재의 과정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경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경과

일자	내용	일자	내용
2000.5.20.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2012.2.27.	12/20 회의에 대한 회신
2006.2.1.	등재 관련 문서와 관리계획의 준비를 위한 지원 결정 (30,000 USD)	2013.6.23.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결정
2005.11.18.	개성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남북 공동 학술토론회와 유적답사	2013.8.	유네스코 베이징의 협조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문 이행 활동 착수
2007.1.17.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제출	2014.6.	유네스코 베이징의 지원을 받아 관광 관리 교육 워크숍 개최
2008.7.6.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려 결정	2014.9.	KTMP(Kaesong Tourism Management Plan) 위원회 설립
2009.2.16.	등재 관련 문서와 관리계획의 준비를 위한 지원 결정(25,000 USD)	2015.3.	2014년 보존 현황 보고서 제출
2011.1.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했으나 "등재서미비 판정"	2015.6.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14년 보존 현황 보고서 평가의견 전달
2011.2.14.	수정변경된 등재신청서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와 "Management Plan(MP)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 in Kaesong" 제출	2015.12.	KTMP 수립
2012.9.21.	ICOMOS에서 동아시아에서 문화발달에 대한 개성의 역할, 비교연구. 진정성, 완충지대와 관리에 관한 서면 질의	2017.5.9.	2016년 보존 현황 보고서 제출
2012.10.19.	9/21 회의에 대한 회신	2017.7.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16년 보존 현황 보고서 평가의견 전달
2012.12.	ICOMOS 패널 심의	2019.2.	2018년 보존 현황 보고서 제출
2012.12.20.	패널 심사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두 번째 서면 질의	2019.6.-7.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19년 보존 현황 보고서에 대한 평가의견 전달

이해은의 연구와 북한이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2013년, 2015년, 2017년의 보존 현황 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 by the States Parties)를 참고하여 작성(이해은, 「개성역사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 『개성의 문화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p.164; 이해은,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과정」, 『2013 제주 세계유산포럼 발표자료집: 세계유산의 등재경향과 우리나라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정책』, 2013, p.89;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목록, <https://whc.unesco.org/en/list/1278/documents/>, 검색일: 2019년 3월 18일

2.1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현황

20/62

1 세계유산 등재의 과정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Heritage List (2011)

- 2007년에는 완충지역을 설정하지 않고 개성성 자체만 유적지구로 설정
- 2011년에는 **대흥산성과 관음사 제요, 7릉매, 명릉매, 첨성대 포함**
- 유적을 포괄하는 **도시 전체를 완충지역에 포함**
- 유적지구의 면적이 55.05ha에서 494.2ha로 약 9배가 증가, 완충지역을 포함하면 103.85ha에서 5,716.3ha로 55배 증가

2008.05.22 Decision ; Defers(반려) 사유

- ① 고려왕조와 그 수도였던 개성의 의미있는 대표적인 예로서 유적에 대한 재고가 필요
- ② 신청유산의 문화 및 자연환경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유적과 완충지역의 경계를 재설정
- ③ 미래 개발로 유적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을 잠정적인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완충지역의 설정

	2008 (2007년 제출된 신청서)	2013년 (2011년 제출된 신청서)
등재면적(ha)	103.85 (55.05 + 48.8)	5716.3 (494.2 + 5222.1)
등재유산	모두 11개 지역 • 개성성곽 • 남대문 • 만월대 • 고려성군관 • 송왕서원 • 선죽교 • 표충사 • 왕건릉 • 공민왕릉 • 대흥산성 • 관음사	모두 12개 지역 • 만월대 • 개성첨성대 • 개성성곽 • 개성 남대문 • 고려성군관 • 송왕서원 • 선죽교 • 표충사 • 왕건릉 • 7개릉군 • 명릉군 • 공민왕릉
등재기준	(i)(ii)(iv)	(i)(ii)(iv) ⇒ (ii)(iii)
참고사항	대흥산성과 관음사의 경우 완충지대가 없었음	대흥산성과 관음사가 빠지고 첨성대, 7개릉군과 명릉군이 포함됨



2.1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현황

21/62

1 세계유산 등재의 과정

개성역사유적지구

개성역사유적지구 지정 구역(ha)			
유적	핵심구역 면적	완충구역 면적	총면적
만월대	43.5	494.2	5,222.1
개성 첨성대			
개성성			
개성 남대문	0.5		
고려 성균관	3.5		
송양서원	2.9		
선죽포, 표충비	1.8		
왕건왕릉	214.6		
7릉때			
명릉때			
공민왕릉	51.6		



2.1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현황

22/62

1 세계유산 등재의 과정

Management Plan(MP)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2011)

- 10년의 장기목표('11~'20)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첫 5년간 단기목표('11~'15) 설정
- 목표 달성을 통한 미래비전 제시
- MP 모니터링 계획 수립과 이를 통한 5년 주기의 MP 검토

관리 계획의 주요 목표

1. 유산의 문화적 중요성의 **완벽한 보존** 강화
2. 유산 및 완충구역 유지를 위한 **매커니즘과 규정** 강화
3.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및 인공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조치
4.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체로서의 유산 개발
5. 현장의 보호 및 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유네스코 및 국제기구와 협력
6. 현장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발표 및 홍보 강화

실행 계획

1. 유적 및 유적지 보존
2. 역량 강화
3. 완충 구역 관리
4. 연구와 기록
5. 현장 프레젠테이션, 해석 및 교육
6. 접근과 통제



2.1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현황

23/62

2 보존 현황 보고 및 유네스코의 평가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관련 보고서

- 2000.5. Tentative List Brief Description. p.1
200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 2007.1.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08.5. WHC-08/32.COM/INF.8B1.Add2, pp.31-44
2007년 등재 신청서의 평가의견 (반려 결정)
- 2011.2.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수정 변경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2.9. ICOMOS 현장 실사 수행
- 2013.6. 2013 Evaluation of Nominations of Cultural and Mixed Properties to the World Heritage List(WHC-13/37.COM/INF.8B1, pp.140-155)
ICOMOS 평가서
- 2013.6. WHC-13/37.COM/20, pp.195-197
2013년 등재 신청서의 평가의견 (등재 결정)
- 2015.3. State of conservation reports by the States Parties(Report on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37COM 8B.30 adopted by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2014년도 보존현황 보고서 제출
- 2015.7. WHC-15/39.COM/19 pp.123-124
2014년도 보존현황 평가의견
- 2017.4. State of conservation reports by the States Parties **2016년도 보존현황 보고서 제출**
- 2017.7. WHC/17/41.COM/18, p.167
2016년도 보존현황 평가의견
- 2019.2. State of conservation reports by the States Parties **2018년도 보존현황 보고서 제출**
- 2019.7. WHC/19/43.COM/18 pp.147-148
2018년도 보존현황 평가의견

2.1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현황

24/62

2 보존 현황 보고 및 유네스코의 평가

보존 현황 보고서 (2015.3)	유네스코 평가 의견 (201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기관 간의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관광관리계획(KTMP) 및 해석 계획 개발 프로세스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관리계획의 비전,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초안 마련 - 민족유산보호국과 유네스코 베이징 사무소 협력 - 민족문화유산보존사(KNHPPA)에서 관광관리계획(해석 계획) 실무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을 위한 부서를 설립, 협력 강화는 유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긍정적인 단계로 평가 • 보존 및 관리 지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관광관리계획 및 해석 계획 개발, 채택 및 이행 권고 • 2016년 12월 1일까지 유산보존상태와 그 이행에 관한 실행 요약을 포함한 업데이트 된 보고서 제출 요청

• 관광관리계획(KTMP)

Vision

1. 문화 유산 자원과 환경을 완벽하게 보호
2.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3. 방문자에게 보람있는 경험 제공
4. 아시아의 고품질 문화 유산 기반 관광지 모델로 개성을 발전

Strategies

1.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문화유산 관련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의 관광 지식 강화
2. 유적지 관리 계획을 주요 지침으로 유지하여 유적지 보존
3.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국가관광총국, 개성인민위원회 간 긴밀한 연락 및 조정
4. 관광 자원의 모니터링 강화
5. 현장의 주제별 해석 및 소개를 통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 창출
6. 개성의 발전 원동력 중 하나로 문화 유산 중심의 관광 진흥

2.1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현황

25/62

2 보존 현황 보고 및 유네스코의 평가

보존 현황 보고 (2017.4)	유네스코 평가 의견 (201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관리계획에 따른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시 인민위원회에서 시행 - 5만명의 개성시민 참여 - 24개 유적지 수리, 환경개선 - 프로젝트로 KTMP 효율성 조사, 계획 승인을 위해 정부 제출 왕건왕릉 벽화의 보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관리계획을 완료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시에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권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추가 개발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 보고 요청 유산 보존상태 및 이행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요청

[파일럿 프로젝트 활동]

유 산	활 동
개성성	도찰문에서 송악산까지 돌담부분(2000m) 복원. 벽의 양쪽 영역을 5-10 미터로 개선
만월대 / 개성 첨성대	회경전 영역 앞의 4개 계단 보수, 잔디 식재, 접근도로 보수
개성 남대문	용마루 보수, 이각문 보수, 통로 평탄화
고려 성교관	건축물의 기둥, 서까래, 기와 등 수리 및 교체
송양서원	사당의 벽체와 천장 보수, 건축물과 담장의 기와 보수, 마당과 진입로 보수
선죽교와 표충비	선죽교: 강 개선, 잔디밭 및 화단 만들기, 포장을 화강암 돌로 교체 및 교각 수리 표충비: 침식된 서까래 교체, 용마루와 기와 보수, 재채색, 삼문의 지붕 보수
명릉때	석재 부재 보수, 잔디 식재, 탐방로 개량
질릉때	석재 부재 보수, 봉분 보수
공민왕릉	봉분의 석재 보수, 탐방로 개량, 배수를 위한 벽돌 공사, 잔디 식재

2.1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 현황

26/62

2 보존 현황 보고 및 유네스코의 평가

보존 현황 보고 (2019.2)	유네스코 평가 의견 (20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각에 의해 관광관리계획 승인 및 시행(1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부터 관련 법률의 법적 근거에 의해 계획이 시행 - 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관리의 목표와 실천 전략제시('19~'28) - 세부적인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19~'23) 유산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민족유산보호 관리사무소, 왕건왕릉 관리사무소, 만월대 관리사무소 개설 등 상근관리 기관 운영 유산의 OUV에 영향을 주는 보존관련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조 건축물의 부식, 층 벽화의 탈락 및 부식 - 국제원조 및 협력과 현장 전문가의 전문지식 필요 완충지역 내 구 주거지역의 거주자 특성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 인식제고, 전통 특성을 보존하는 관광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관리계획 승인 및 이행하려는 당사국의 노력 인정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유산관리 체계의 구조 개선 필요 계획된 모든 프로젝트에 HIA(유산영향평가) 적용 및 제출 요청 기술전문분야에서 추가적인 역량 강화 계획 필요 개성 구 주거지의 역사적 조직(fabric)과 특성 보존에 관한 당사국의 우려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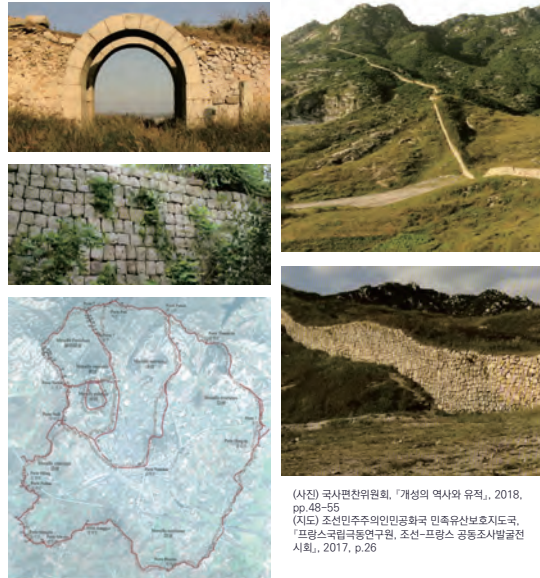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27/62

1 개성성

■ 개성성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9년 초축 추정 1350년 대대적 보수 1837년까지 내성의 여러 차례 수리가 진행 2004년 개성성의 대보수 작업 진행 2011년9월 ~ 2013년10월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 민족유산보호사업으로 개성성 공동조사발굴 2017년 개성시 역사유적보존관리사업 중업원에 의해 역사적 시기의 특성에 맞게 보수 2017년 개성성 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 식재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간별 쌓기 방식: 고려말~조선초 시기에 토성벽 밖에 돌성벽을 덧쌓은 구간과 발아참성벽을 그대로 활용한 구간으로 구분됨 토성벽 쌓기 방식: 마사트(석비레)와 진흙을 층으로 다진 방식과 마사토로 다진 후 돌로 쌓은 층을 다지는 방식으로 구분됨 형식별 쌓기 방식: 평지는 양면 쌓기, 산지는 외면 쌓기(평양성과 동일한 축조 방식으로 밝혀짐) 개성성 내성은 벽들을 구워 쌓은 양식으로 16세기 초까지의 대표적 산성으로 소개(천리마, 2011)
보존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성 보존상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음 궁성 보존상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나, 서쪽벽 260m구간에 기초가 드러나 있음 외성 보존상태: 동남쪽 성벽과 동쪽 부흥산 줄기를 제외하고 잘 보존되어 있음 내성 보존상태: 북쪽과 동쪽쪽 석성구간만 비교적 잘 보존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 48-55
(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지도국,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조선-프랑스 공동조사발굴전시회』, 2017, p.26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28/62

2 개성 남대문

■ 개성남대문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94년 남대문 건립 1563년 연복사 화재 후 누 위에 연복사 종을 옮겨움 1899년에 크게 보수 1950년 12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소이탄에 의해 남대문 문루 파괴로 홍예문과 종만 남음 1954년 8월 11일 남대문 복구 시작 (약 3개월 만에 남대문 상량, 토공에 의해 밑 쌓기와 벽체 보수 진행) 2000년 개성시 시장위원회의 지도로 역사문화유적 관리보수사업 진행 2001년 개성시 시장위원회의 지도로 개성시 문화유적관리소는 역사유적유물을 원상태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보수정리사업과 보수관리사업 진행 2005년 남대문 원상보존관리를 위한 개성시 문화유적관리소 문화유적보존사업 진행 2012년 10월 ~ 2014년 7월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과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남대문 발굴조사 진행(문화층, 도로유적 등 확인) 2015년 개성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에서 남대문을 잘 보존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면 3칸(13.63m), 측면 2칸(7.96m) 밑의 돌기둥 높이는 1m이며 네 모를 죽임 나무기둥은 배부른 기둥 두공은 포식두공으로 짧은 소허형제공에 첨차를 맞추어 안팎3포를 짜올림 안도리를 서까래까지 올리는 방법을 안쪽에 포수를 늘이는 보통 방법대신 안쪽의 장어를 겹으로 놓고 그 가운데에 화반을 끼우는 방법으로 해결, 모습은 고려 말기 두공 특징 문루의 널마루는 가운데 한칸에만 깔고 내부는 전부 통천정 현재 축대가 지면에서 2.14m 더 내려가 있음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60-67
(도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지도국,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 조선-프랑스 공동조사발굴전시회』, 2017, p.38
(성면도 및 발굴총 평면도 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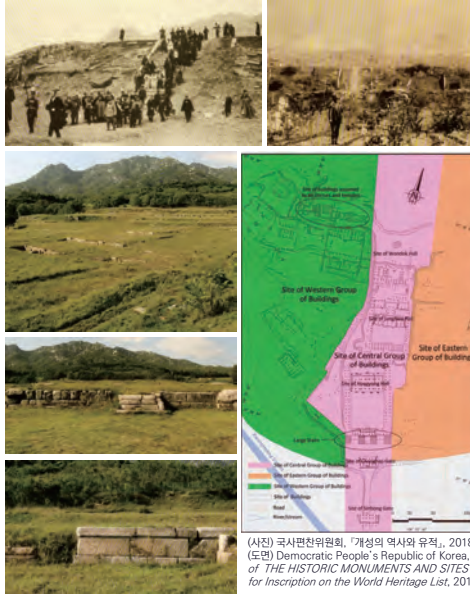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29/62

3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9년 건축 1011년 거란2차 침입 때 왕궁이 불타 1126년 이자겸의 난 때 큰 화재 발생 1361년 홍두직(홍건적) 침입으로 왕궁이 완전히 불타 1953(4)년 복구 현재까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8차에 걸쳐서 시행
유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왕궁의 넓이는 125만㎡, 궁성의 넓이는 약 39만㎡ (중심건축군) 회경문 본전 터는 전문 터에 비해 한 단이 높음 (중심건축군) 회경전 후면에 셋째 궁전터와 넷째 궁전터는 한국전쟁 때 주춧돌 소실 (중심건축군) 원덕전을 포함한 건물터의 파기가 심하지만 건물의 평면 구조를 복원할 수준은 됨 (서쪽건축군) 건덕전, 내전 등 많은 궁전터가 잘 남아있음(20여 채로 구성, 사당이나 절로 판단되는 유구도 있음) (서쪽건축군) 규모가 큰 중심건물은 없으며, 대부분 긴 장병형의 회랑식 건물터 (북쪽화원) 정자터 발견 (북쪽건축군) 아직 발굴조사를 진행하지 못함 (만월대 동지) 고려왕궁과 함께 건설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 궁궐건축에 쓰인 꽃벽돌과 기와를 굽기 위한 가마가 예성강, 개풍 등에서 발견 1차가 31.25cm에 가까운 단위자 체계 적용된 것으로 추정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17-36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011, p.27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30/62

3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 개성 고려궁성(만월대) 현황 - 남북공동조사 경과

구분	조사기간	조사범위	주요 내용 및 결과
1차	2007.05.15-07.13. (60일)	서부건축군 33,000㎡	건물지 40여동 축대 및 배수로 확인
2차	2007.09.07.-11.16. (75일)	제1건물지군 3,000㎡	건물지 5동 조사 서부건축군과 연결 축대
3차	2008.11.04.-12.23. (50일)	제2, 제3건물지군 3,600㎡	건물지 10동 조사 경행전과 집회전 확인
4차	2010.03.23.-05.18. (57일)	추정 건덕전구역 3,600㎡	건물지 5동 조사
5차	2011.11.14.-12.20. (37일)	서부건축군 긴급복구 제4건물지군 1,280㎡	긴급복구조사 제1건물지군 남면 연결부
6차	2014.07.22.-08.16. (25일)	제5건물지군 220㎡	대형계단 및 배수로 확인
7차	2015.06.01.-11.30. (183일)	제6, 제7, 제8 건물지군 7,000㎡	건물지 20동 조사
8차	2018.10.22.-12.10. (50일)	회경전 북면 축대구간 1,070㎡	대형계단 및 회랑지 확인



(표 및 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조은경), 『개성 고려궁성 조사연구 성과와 향후과제 - 2018년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고려 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조사성과 학술회의), 2019,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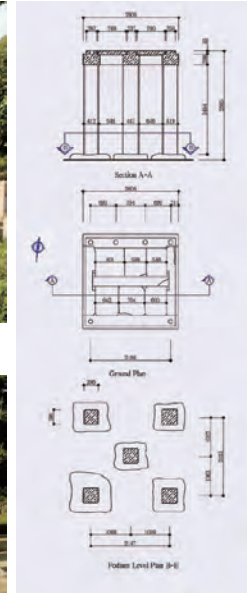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31/62

4 개성 첨성대

■ 개성 첨성대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적의 건설과 관련된 기록은 없음 1994년 첨성대 축대의 방위를 고려한 지구의 세차운동을 고려할 시 1085년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 만월대 건설 시 기초공사를 하였다고 판단됨(919년 경)
유적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월대 서쪽 궁성 밖에 바로 위치 첨성대 건물은 고려가 멸망한 후에 없어졌고, 축대만 보존됨 축대의 높이는 2.8m이며 한 변의 길이는 2.6m, 동서남북 방위 일치 대들은 네모난 긴 돌로 가로세로 日형으로 틀을 짰 다음 그 사이에 판돌을 깔아 만들고, 틀을 이룬 돌 사이를 一모양의 사계를 물리어 튼튼하게 연결(철물로 연결) 최근 조사에 의해 주변에서 기둥 돌과 비슷한 부재들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축대 위에 2층짜리 건물이 서있는 것으로 추정 돌기둥 높이는 고구려자 7자(2.45m)이며, 기둥 사이 너비는 고구려자 3자(1.05m)로 추정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70-73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011,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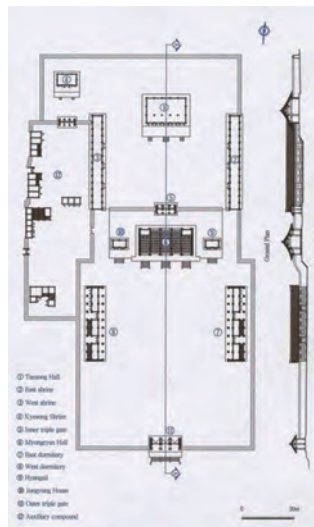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32/62

5 고려 성균관

■ 고려 성균관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98년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이 현 위치로 이동 1304년 국자감에 대성전 및 그 밖에 건물을 증축 1310년 성균관이라 이름을 고쳐 부름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건물이 불타 1602년 대성전과 서재를 복구 1605년 동무와 서무와 명륜당을 복구 1610년 중재를 복구 1992년 5월 5일 성균관에서 김일성 주석이 교시(대학으로 전용) 1992년 9월 경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꿈 2012년 새 교사 건설 현재 대성전 구역에서 고려시기 유물의 일부가 전시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성전: 앞면 5칸(14.69m), 옆면 3칸(9.75m), 단익공두공, 겹처마, 합각지붕 명륜당: 앞면 5칸(19.3m), 옆면 3칸(9.34m), 단익공두공, 겹처마, 큰 배집 동무·서무: 각각 28칸 규모, 홀처마에 두공이 없는 배집 중재·서재: 각각 27칸 규모, 홀처마에 두공이 없는 배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 좌우에 1000여 년 자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보존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164-168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011, p.56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3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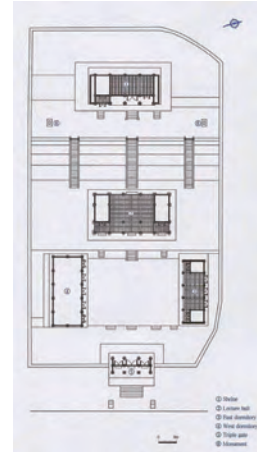
6 송양서원

■ 송양서원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73년 정몽주를 추모하여 그의 집을 서원으로 꾸림 (서원의 기능에 맞게 변화) 1575년 조선왕조는 송양서원이라 이름 지음 1894년부터 한문을 가르치는 학당으로 이용 1907년부터 약 3년간 보창학교로 개조되었고, 그 후에 한문강습소로 이용(이 때 바깥문이 삼문으로 개조) 한국전쟁 시 미군에 의해 파괴 1987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송양서원을 잘 보수하여 관광객에게 보여주라고 말할 2011년 당의 문화유물보존정책에 의해 옛 모습을 그대로 찾음
형식	<p>[사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양서원의 중심건물인 사당은 1.3m 높은 밑단 위에 건축, 앞면4칸(9.43m), 옆면 2칸(4.83m)로 되어있음 잘 다듬은 흘림기둥에 두공이 없는 형식 지붕은 겹처마의 배집지붕 <p>[강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면 5칸(12.79m), 옆면 3칸(6.96m), 1.6m 높은 밑단 위에 건축 흘림기둥을 세우고 두공이 없는 홀처마 할각집 <p>[중재와 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공이 없는 배집, 앞면 5칸, 옆면 2칸으로 규모가 큼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195-199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NAGEMENT PLA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2011, p.47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3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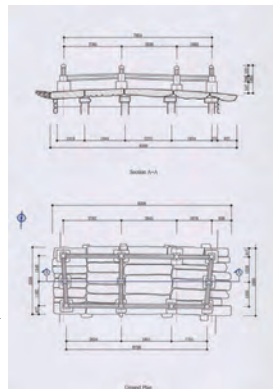
7 선죽교

■ 선죽교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16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 1480년대 선죽교라는 다리 이름을 선죽교로 고친 것으로 확인됨 1641년 정몽주의 충절을 추모하는 음비가 선죽교 인근에 세워짐 1780년 정몽주의 후손 류수 정호인이 다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돌난간을 설치 1992년 5월 5일 김일성 주석은 선죽교 밑을 옛날과 같이 개울로 만들고 양쪽 호안을 잘 정리하고 조경을 가꿀 것을 명령 2006년 선죽교와 그 일대에 대하여 당의 민족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해 관리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리 길이는 8.35m이고, 너비는 3.36m 화강암을 재료로 만들었으며, 난간의 너비는 2.54m, 길이 6.67m 다리 면의 판들은 뒷면은 평평하게 하고 밑면은 가운데를 두껍게, 양 옆은 그보다 얇게 가공 난간 돌 가운데에는 범자(고대인도 글자)를 새긴 것이 2개 있는데, 이는 개성시 묘각사터에 있는 석재를 가져다 쓴 것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178-181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NAGEMENT PLA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2011, p.50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35/62

8 표충비

■ 표충비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40년 영조가 비를 건립 1872년 고종이 비를 건립
형식	<p>[사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충비 비각은 북한 지역에 현재 남아있는 옛 비각 가운데서 가장 큰 건물 앞면 4칸(11.41m), 옆면 2칸(5.25m) <p>[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조가 건립한 비는 높이 3.17m, 너비 93cm 고종이 건립한 비는 높이 3.58m, 너비 94cm 두 비석은 같은 짜임새로 바닥돌, 거북받침과 비몸, 머리로 이루어짐 비석들은 비몸만 검은색 대리석이고 다른 것은 모두 화강암으로 이루어짐 통돌로 만든 거북기 조각은 비례가 조화롭고, 잔등 위에 새긴 연꽃 잎의 조각 기교가 우수함 비 머리들은 합각지붕형식으로 네 마리의 용이 좌우대칭으로 새겨짐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188-189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011,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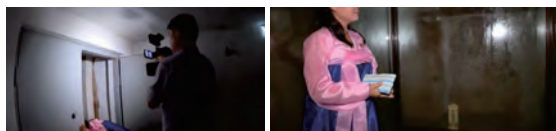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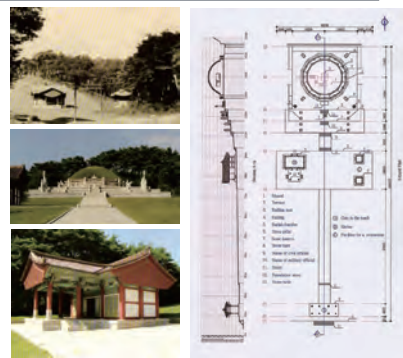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36/62

9 왕건왕릉

■ 왕건왕릉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943년릉을 축조 고려시기가 외적 침입 때마다 왕건의 시신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음 조선시기가 7차례의 고려왕릉을 보호하는 조치가 있었음 (영조 때 석조물과 정자각을 크게 중수) 1867년 왕릉을 중수하고 세운 비인 현릉비는 보존유적 제16232호로 관리 중 1992년 5월 5일 김일성 주석이 개성시 현지지도를 통해 왕건왕릉의 보존상태를 확인 할 정자각이라 말함 1992년 6월 왕건왕릉과 만일대 개건확장공사에 필요한 기초설계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고고학적 발굴사업 진행 1994년 왕건왕릉 개건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조 현릉은 정자각이 남아있는 유일한 무덤 <p>[고려돌칸흙무덤의 구성 및 특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단: 무덤무지와 돌담, 축대, 계단, 병풍돌, 돌난간, 돌짐승상, 상석(제상), 망주석이 있는 곳 제2단: 돌등(장명등)과 문관상 제3단: 무관상 제4단: 정자각이라 불리는 (T)자형의 각터가 있는 곳 내부 구조: 무덤간, 무덤 안길, 무덤문, 천장, 내부 시설물들로 이루어짐 무덤간 크기 남북3.18m, 동서 3.25m, 높이 2.2m
보존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벽)청룡부분은 회벽이 탈락되고 흐려져 발날개 부분만 알아볼 수 있음 (북벽)대부분 지워졌으나 현무의 형상이 약간 남아있음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78-81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011, p.79
 (오른쪽 아래, 사진) JTBC, [두 도시 이야기 수원개성], 2019년 9월 12일 방송영상 캡처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37/62

10 7릉때

7릉때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릉때의 축조시기는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음 축조형식으로 보아 1릉은 12~13세기의 무덤이고, 나머지 6기는 모두 13세기 말~14세기로 추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장자가 확인되지 않은 고려시기 왕릉급의 무덤 7개의 릉들이 하나의 골짜기를 끼고 산등선 위에 나란히 위치 무덤 외부시설은 무덤무지 아래 12각으로 병풍들을 두르고 그 밖으로 돌난간과 돌집승을 배치 무덤 앞으로는 상돌, 망주석, 돌등과 돌집승, 돌사림을 배치 7릉때는 축조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도굴을 당함 발굴된 무덤은 모두 돌로 무덤칸을 만들고 회죽미장을 한 평천정의 외칸무덤임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88-105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011, p.98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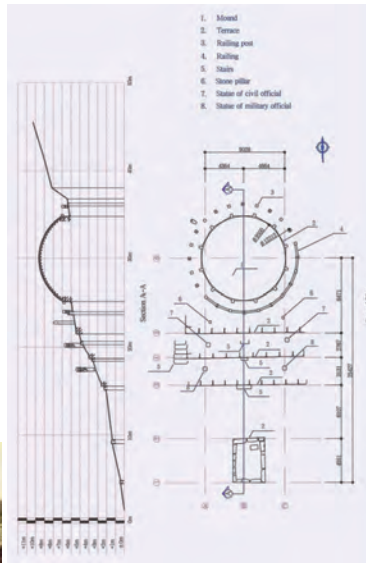
38/62

11 명릉때

명릉때 현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49년 고려 29대 충목왕의 릉을 만들고 안장 2릉과 3릉은 명릉과 거의 같은 시기인 14세기 중엽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 1983년 명릉 발굴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릉때는 고려 29대 충목왕의 무덤인 명릉과 그 주변에 있는 피장자가 밝혀지지 않은 2기의 무덤으로 구성 왕건왕릉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산기슭에 있음 맨 서쪽이 명릉(1릉)이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약 40m씩 가면서 2릉과 3릉이 차례로 배치 세 무덤의 외부시설은 7릉때와 유사 발굴결과에 의하면 무덤칸은 평천정을 한 외칸무덤으로 판돌로 만들 무덤칸 벽면에는 벽화의 흔적이 있음 천정에는 별그림의 일부가 남아 있음 2릉과 3릉은 왕 또는 왕족 무덤으로 추정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114-120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011, p.103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39/62

12 공민왕릉

공민왕릉 현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65년 1372년 공민왕이 직접 릉을 축조 일제강점기 시 무덤을 폭파하고 유물을 모두 강탈함 1956년 생릉 중 현릉을 발굴함 1957년, 1992년 김일성 주석은 공민왕릉의 관리를 교시 	<p>[2층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층단은 1층단보다 1.2m 낮게 남북 6m, 동서 46m로 마련하고 1층단으로 오른 돌계단을 앞면 가운데 2개, 양 옆에 1개씩 4개 만들 앞면 돌계단 앞에 장중한 돌등 1개씩 세움 2층단 좌우 끝에는 네 상의 문관조각, 3층단 좌우 끝에는 네 상의 무관조각을 세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려시기에 등장한 첫 생릉형식 무덤구역은 동서로 긴 장방형의 세 층단과 하단에 비탈진 넓은 층단으로 구성 <p>[1층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닥에서 1층단 윗면까지의 높이는 15m, 1층단의 크기는 동서 40m, 남북 24m, 동, 서, 북 세면에는 화강석으로 높이 3m의 담장을 쌓음 무덤무지 밑 둘레에는 바닷돌, 면돌, 갈돌, 기둥돌, 당김돌로 이루어진 화려한 12각의 병풍돌을 둘렀으며 12각형의 돌난간을 두름 <p>[병풍돌, 상돌, 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풍돌의 면돌에 12지신상을, 방위에 해당하는 짐승의 대가리를 얹고 구름을 탄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부각함 갈돌, 바닷돌, 당김돌에도 꽃무늬를 새김 무덤 앞면 길이 3.36m, 너비 1.82m, 두께 0.45m의 큰 북모양으로 된 받침 돌을 받쳐놓은 상돌이 있음 무덤 앞면 좌우 끝에 자름 면이 6각으로 된 키 높은 망주석 세움 두 무덤의 둘레에는 돌이거머 돌양과 돌범을 서로 엇바꾸어 놓음 	<p>[3층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층단의 크기는 2층단과 같은데 그보다 1.4m 낮게 높이고 돌계단은 앞면 가운데와 좌우에 각각 1개씩 3개 남 3층단에서 북편과 양 옆 면에 낸 돌계단으로 내려서면 경사층단이며 밑의 제사 터까지의 경사거리는 23m, 그 수직높이는 10m 경사층단 앞 평지에는 정자각타가 있고 여기에 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광통보제 선사비가 서 있음 <p>[현릉 내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릉의 무덤칸은 무덤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짐 안칸의 평면은 동서 2.97m, 남북 3m, 높이 2.29m이며 질 좋은 화강암 판들로 쌓고 평천정을 얹음 무덤안길은 안칸 남쪽벽 가운데에 내었으며 길이는 9.1m, 너비는 2.04m, 높이 1.82m 안칸 동, 서, 북 세 벽면과 천정에는 벽화를 그림 세 벽면의 벽화는 모두 12지신 그림이며 각 벽면에 네 상씩 배열됨 벽화에는 붉은색, 누런색, 푸른색, 흰색, 검붉은색, 검은 갈색, 흙색, 검은색 등 여러 가지 색을 씀 천정에는 북쪽에 복두칠성, 남쪽에 한 쌍의 상성을 그렸으며 복두칠성의 동쪽 끝 남쪽에 해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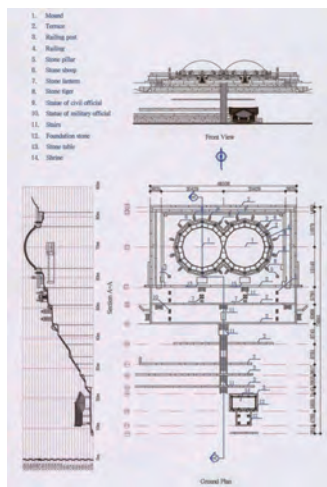
2.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조사 및 관리 현황

40/62

12 공민왕릉

공민왕릉 현황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개성의 역사와 유적』, 2018, pp.124-137
 (도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MINATION OF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for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2011, p.112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41/62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최신 북한 법령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법률출판사, 201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법률출판사, 2004
- 장명봉 편,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8
- 「북한 법령집-상·하」, 국가정보원, 2019
- “북한법령”,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통일부·법무부·법제처 (<https://www.unilaw.go.kr/>)
- 「개성·금강산 관련 복측법을 및 당국간 합의서」, 현대아산,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법률출판사,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법률출판사,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법률출판사, 2016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4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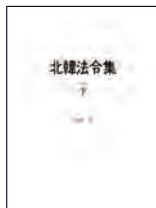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북한 법령 자료

- 온라인 법령 시스템이나 관보 게재 시스템 부재
- 비정기적으로 수년마다 발간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통해서만 법령 내용 확인
- 주요 신문의 기사를 통해 개략적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 확인 가능
- 2019년 현재 2016년 7월 출판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을 통해 최신 법령 확인
- 남한의 북한법연구회(2018)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의 법령은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2016)을 편집하여 제작되었고, 국가정보원(2019)에서 발간한 법령집은 2016-2018년의 개정 사항 반영
- 개성공업지구 관련 규정: 「2018 최신 북한법령집」(북한법연구회, 2018), 「개성·금강산 관련 복측법을 및 당국간 합의서」(현대아산)



장명봉 편,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2018



북한법령집-상·하, 국가정보원, 2019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통일부·법무부·법제처 <https://www.unilaw.go.kr>



개성·금강산 관련 복측법을 및 당국간 합의서, 현대아산, 2005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43/62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문화재 관련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 주체83(1994)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6호로 채택]
- 주체88(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
- 주체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5호로 수정보충]
-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

- 주체101(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 채택]
- ※ 주체101(2012)년 8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이 없어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

-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채택]
- ※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이 없어짐
- 주체107(2018)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77호로 수정보충]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44/62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문화재 관련 법령

북한 문화재 관련 법령 체계 변화

구분	문화유물보호법(1994)	문화유산보호법(2012)	민족유산보호법(2015)	민족유산보호법(2018)*
전체 구성	총 6장 59조	총 6장 58조	총 6장 62조	총 6장 73조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문화유산보호법의 기본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제2장	문화유물 발굴과 수집	문화유산의 발굴과 수집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민족유산의 발굴과 복원
제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문화유산의 평가와 등록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	민족유산의 보호관리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문화유산의 복원	민족유산의 복원	민족유산의 리용
제6장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민족유산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출처: 윤성일(2017), 「남북한 문화재보존관리 정책과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3; 국가정보원(2019), 「북한 법령집(하)」, 569-580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45/62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문화재 관련 법령

[민족유산보호법](2016)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장 민족유산보호법의 기본	(제1조~제9조) 민족유산보호법의 사명, 민족유산의 정의, 민족유산의 소유권, 민족유산보호사업의 기본원칙,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투자원칙, 전국가적·전인민적인 민족유산보호원칙, 민족유산의 리용원칙, 민족유산보호관리분야의 교류와 협조, 민족유산보호법의 규제대상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	(제10조~제17조) 민족유산발굴 및 수집의 계획화, 민족유산의 발굴기관, 민족유산의 발굴방법, 민족유산발굴보고서제출·발굴한 민족유산의 처리, 민족유산발견의 통보, 민족유산의 수집, 수매 및 회수한 력사유물의 처리,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건설함의
제3장 민족유산의 평가와 등록	(제18조~제25조) 민족유산의 의무적인 평가·등록, 민족유산심의평가위원회의 조직,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방법, 민족유산의 등록 및 폐기, 민족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보수정형의 기록, 민족유산의 이관·명칭의 정정, 민족유산의 세계유산등록활동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	(제26조~제44조) 민족유산의 과학기술적인 관리, 민족유산권리의 담당자, 민족유산관리분담, 민족유산애호원간, 력사유적보호구역, 력사유적보호구역안의 시설물철수,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 력사유적표식주·설명문판의 설치, 민족유산의 보수·수복·소독, 민족유산보호에서 온도와 습도보장·사고방지, 력사유적의 이관, 력사유적리용자의 의무, 력사유물의 보관과 모조품의 리용, 민족유산참관,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건설과 그 보존관리, 민족유산과 력사교양거점을 통한 교양, 비물질유산의 보호, 비물질유산의 마크 , 민족유산의 매매·대외반출 및 출판물제작
제5장 민족유산의 복원	(제45조~제51조) 민족유산복원의 기본요구, 민족유산의 복원형성안, 민족유산의 복원실계, 민족유산복원대상의 계획화, 민족유산의 복원기관 , 민족유산복원의 질과 준공감사, 력사유적의 이설
제6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제62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비상실민족유산보호위원회의 조직운영, 민족유산보호사업의 조건보장,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조건보장·성과도입, 민족유산보존사의 조직운영, 종합적인 자료기지화 ,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원성복구·손해보상, 행정적책임, 형사적책임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46/62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문화재 관련 법령

• 「민족유산보호법」(2018.11.) 수정보충의 주요내용

- '제5장 민족유산의 복원'이 '제2장 민족유산의 발굴과 수집'으로 이동
- '제4장 민족유산의 관리와 리용'에서 "리용" 부분이 제5장으로 분리
- **민족유산의 가치로서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가치 추가:** 제2조 추가 (남측의 「문화재보호법」과 동일한 기준)
- **다른 나라의 단체 또는 개인과 공동 조사 및 발굴 가능:** 제14조 신설
- 수매 또는 몰수한 력사유물이 다른 나라의 것인 경우에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함: 제17조 추가
- **렐사유적 보호구역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하여야 함:** 제33조 추가
- 렐사유물은 해당한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와 기타 정해진 장소에 규정대로 보관: 제38조 추가
- **비물질유산과 자연유산의 관리자, 목록 작성, 보호 등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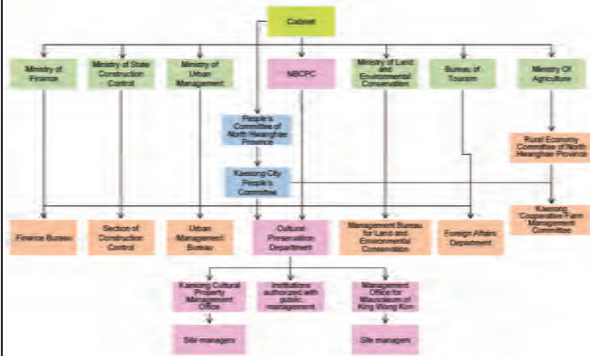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4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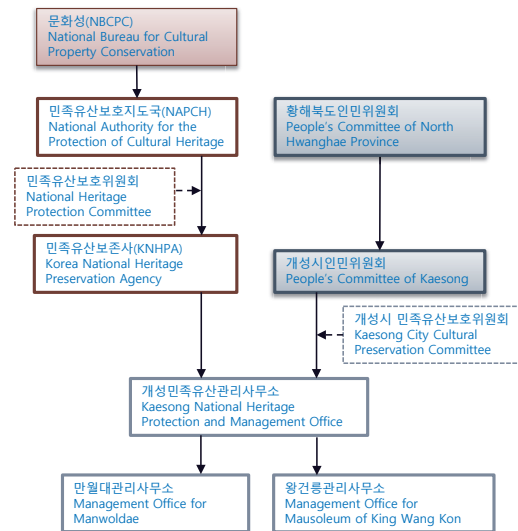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문화재 관련 법령

-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리 조직



2011년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리조직도



2019년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리조직도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48/62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도시 및 건축 관련 법령

- 「토지법」(1977년 제정, 1999년 개정)
- 「국토계획법」(2002년 제정, 2004년 개정)
- 「도시계획법」(2003년 제정, 2009년 개정)
- 「부동산관리법」(2009년 제정, 2011년 개정)
- 「건설법」(1993년 제정, 2014년 개정)
- 도시 및 건축 관련 법령의 개성역사유적지구 주요내용
 - 토지구분: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문화유적지 포함)
 - 국토건설총계획: 30-50년 전망기간, 문화유적유물 보호대책 포함
 - 국토계획 체계: 전국국토건설총계획 >> 중요지구/도(직할시) 국토건설총계획 >> 시(구역)/군 국토건설총계획
 - 도시계획: 20년 전망기간, 역사유적의 보존 포함
 - 도시계획 체계: 구획계획 << 세부계획 << 도시총계획, 마을총계획 << 국토건설총계획
 - 건설총계획: 역사유적 보존 포함, 조선식건물보존구역에는 다른 형식 배치 금지
 - 건설총계획 체계: 산업건설총계획,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 << 국토건설총계획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49/62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개성공업지구 관련 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용에 대하여」(2002년 제정)
- 「경제개발구법」(2013년 제정, 2017년 개정)
- 「개성공업지구법」(2002년 제정, 2003년 개정)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2003년 제정)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2006년 제정)

- 개성공업지구 관련 규정의 개성역사유적지구 주요내용
 - 개성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으로 구분
 -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만 하고 개성시 인민위원회에서 관리**
 - 토지임대기간은 토지이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
 - 개발업자는 토지측량, 지질조사, 개성공업지구개발총계획 작성
 - **공업지구 개발 과정에서 역사유적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알리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개성공업지구의 명승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 원상태로 보존하고 그 주변의 자연풍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명승지, 천연기념물, 역사유적 주변에는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없고,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봉사시설은 건설할 수 있음**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50/62

1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 관련 법령

■ 개성공업지구 관련 규정



(좌) 개성공업지구 전체 2,000만평 토지이용증
(발급: 2002.2.23, 기간: 2002.2. ~ 2052.2.)



(우) 개성공업지구 1단계 100만평 토지이용증
(발급: 2002.2.23, 기간: 2002.2. ~ 2052.2.)



구분	면적	종류	비고
개성역사유적지구	1,000,000	관광	
개성역사유적지구	1,000,000	관광	
개성역사유적지구	1,000,000	관광	
개성역사유적지구	1,000,000	관광	

개성공업지구 1단계 개발구역 국토개발 승인서
(2004.7.12.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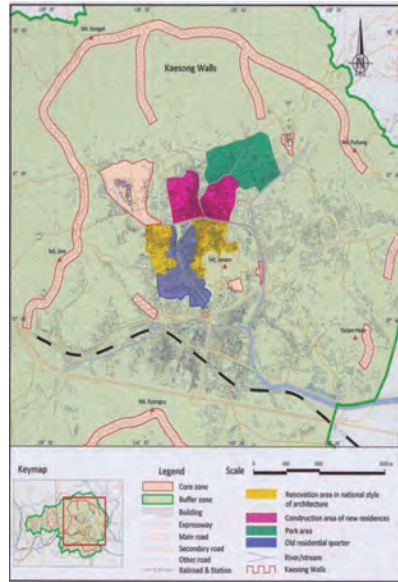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51/62

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구역계획

■ 개성시 국토 및 건설 계획

- 「개성시 건설총계획」(2010)
 - 공공건물과 주거지역은 환경과 역사유산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그것들의 원상태를 유지하는 원칙을 준수
 - 문화유적 주변에 녹지를 조성
 - 지역 구분
 - 민족건축양식 개건지역
(Renovation area in national style of architecture)
 - 신규주택 건설지역
(Construction area of new residences)
 - 공원지역(Park area)
 - 전통주거지역(Old residential quarter)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52/62

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구역계획

■ 개성시 국토 및 건설 계획

- 「개성시 국토건설총계획」(2010)
 - 도시, 마을, 휴양지, 명승지, 문화유적지 등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왕건왕릉과 공민왕릉 주변의 녹지는 엄격하게 관리되어 경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함
 - 모든 도로는 시멘트나 돌의 표면과 시공 상태가 양호하여 안전한 상태 유지
 -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안
 - 정부와 기업은 쓰레기, 소음, 진동 등을 관리하여 환경오염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
- 「개성시 복구 건설을 위한 총기본계획」(1955)
 - 조선식 건물들과 유서깊은 고전 건축물을 보존
 - 그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민족적 건축 구획

2.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제도 현황

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관리구역계획

■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2007)

• 개발목표

- 국제교류, 남북교류가 가능한 도시로 개발
- 정체성이 확립된 문화, 관광도시로 건설
- 자연과 공존하는 환경친화도시 건설
- 완결형 자족도시로 건설



• 1차 사업지역: 350만평

- 공장구역 1단계: 100만평
- 공장구역 2단계: 150만평
- 상업구역: 20만평
- 생활구역: 30만평
- 골프장: 40만평
- 기타: 10만평

• 2차 사업지역: 550만평

- 공장 3단계: 350만평
- 상업구역: 30만평
- 생활구역: 70만평
- 골프장: 80만평
- 테마파크: 20만평

• 개성시가지: 400만평

• 확장구역: 700만평

III. 개성역사유적지구 보존 및 관리의 제언

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 및 관리의 제언

55/62

1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계획 보완

■ 개성역사유적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구역 검토

-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의 개성시가지와 개성역사유적지구**
 - 개성시가지 400만평: 관광구역
 - 개성공업지구의 개성시가지 구역은 개성성 내부 일부에만 해당
- **개성역사유적지구와 개성공업지구 2차사업지역의 중첩**
 - 개성공업지구 2차사업지역의 서쪽 골프장 예정 부지와 생활구역 예정 부지 일부가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완충지역과 중첩됨
 - 개성성의 동쪽 완충지역에 해당되는 개성공업지구의 사업 예정지는 공원 등으로 변경 필요



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 및 관리의 제언

56/62

1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계획 보완

■ 개성역사유적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구역 검토

- **개성공업지구 구역에 포함된 문화유산**
 - 개성공업지구 구역 내에 옥천사 등 문화유적 포함
 - 개성 시가지 남쪽의 개성공업지구 확장구역에는 고려시대 능묘 포함
 - 2004년 개성공업지구 1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2008년 개성공업지구 2단계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구 확인

*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2003) 제16조: 역사유적이 발견되면 중앙공업지구지도 기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2006) 제10조 및 제11조: 역사유적은 원상태로 보존하고 주변에는 생산시설을 건설할 수 없음

- 개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유적 조사계획의 수립과 충분한 조사 필요
- 확인된 문화유적의 관리 방안이 개성공업지구의 계획에 반영되어 수정 필요



개성공업지구 2단계 예정지 문화유적 분포 현황도

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 및 관리의 제언

57/62

1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계획 보완

■ 개성역사유적지구의 생활 환경 고려

- 「개성시 건설총계획」(2010)의 지역 계획: 민족건축양식 개건지역, 신규주택 건설지역, 공원지역, 전통주거지역
- 개성 중심가의 '조선식살림집' 밀집지역: 전통주거지역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평가서에서 지속적으로 전통주거지역에 대한 보존과 관리 권고
 - 문화재급 역사유적과 함께 개성의 근현대 건축과 도시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 검토
 - 조선식살림집지구, 근대개성거리지구 등 시대적, 지역적, 건축유형적 특성을 갖는 구역계획 검토



(좌) [조선식살림집 보존지구 정비구상 조건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3년 개성 한옥 보존 사업 성과 보고서」, 2013, p.217)

(우) [개성 중심가의 조선식살림집 분포도]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012년 개성 한옥 보존 사업 성과 보고서」, 2012, p.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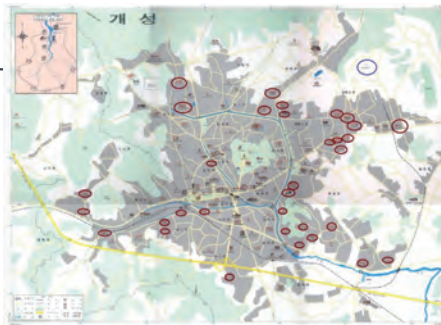
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 및 관리의 제언

58/62

1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계획 보완

■ 역사도시로서의 개성의 경관관리

- 개성 시가지의 공장
 - 개성시 중심가에 다수의 공장 시설 존재
 - 주로 경공업 공장이나 철로 주변에는 중공업 공장이 가동중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공장의 외곽 이전 권고
 - 공장의 이전 또는 폐쇄 검토 필요
 - 공장 부지의 활용 검토: 개성박물관, 세계유산센터 등 새로운 시설로 전용, 개축, 신축 검토
- 개성 일대의 산림
 - 개성 일대의 산림 황폐화
 - 동쪽과 서쪽의 외성 부근에 대규모 화강석 채석장 개발
 - 시가지 내부의 공원 등 녹지 부족



개성시가지의 공장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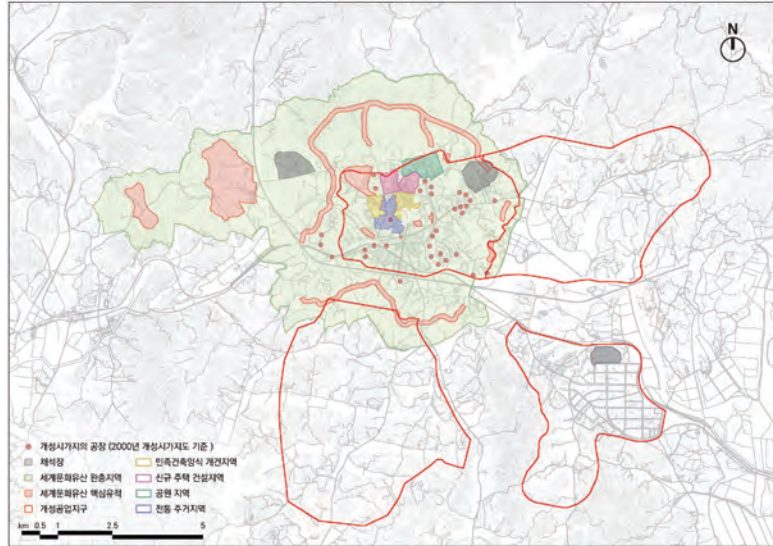
개성 위성사진 (2017.11./ 2018.4.)

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 및 관리의 제언

59/62

1.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계획 보완

■ 개성역사유적지구 일대의 현황



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 및 관리의 제언

60/62

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확대 고려

■ 개성일대의 역사유적 추가

- 고려릉묘 유적 추가
 - 1916년 일제강점기 조사에서 확인된 55개의 고려릉묘 검토



1916년 개성일대 고려릉묘 55기 조사 자료(국립중앙박물관)
 (좌) 「고려제릉묘조사보고서」(1918)
 (우) 「고려능묘분포도」

3.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 및 관리의 제언

2 개성역사유적지구의 확대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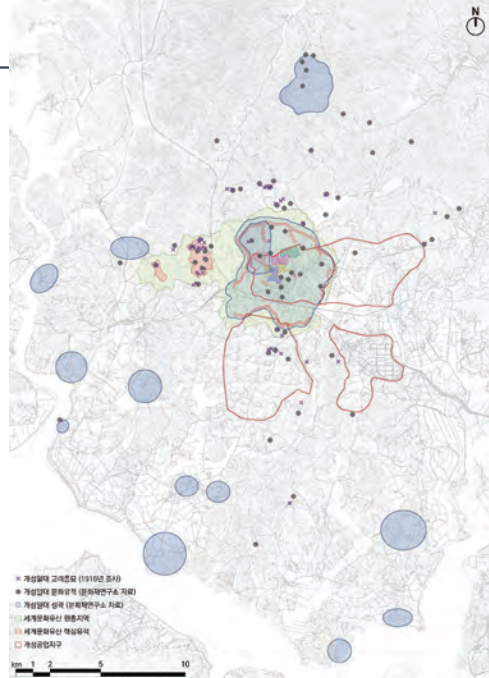
■ 개성일대의 역사유적 추가

- **고려 왕조의 역사와 문화 관련 유적**
 - 1차적으로 2008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적 중 2013년에 누락된 대흥산성과 관음사 검토
- **고려 왕조의 역사와 문화 관련 유적**
 - 관음사, 흥왕사, 대흥사, 영동사, 현화사, 안화사, 화장사 등 불교 유적 검토

개성 지역의 문화유적 현황

구분	무덤	정치 국방	궁궐	불교	유교	기타
계	148	52	24	5	37	4
지정문화재	국보	26	2	4	1	13
	보존	82	33	13	4	15
비지정문화재	40	17	7	-	-	7

박성진,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16(3), 2013, p.70에서 인용



감사합니다



발표4

북한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

김현우 | 서울대학교

북한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

김현우 (서울대학교)

-
- I. 머리말
 - 1.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
 - 2. 북한의 언론
 - II.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조직과 편제
 - III. 북한의 문화유산 조사 및 등록절차
 - IV. 북한의 문화유산 복원과 관리
 - 1. 문화유산의 복원
 - 2. 문화유산의 일상적 보수와 관리
 - V. 맺음말
- 참고문헌
-

I. 머리말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유용한 정치적 수단으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지만, 학술적으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 연구의 불완전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남한에서 북한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남한에서 북한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북한의 문화유산이 수집, 관리, 보존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북한 문화유산의 이해와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김현우·이선복 2019: 5).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문화유산 조사와 보존 및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 문화유산 관리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유산보호법>을 기본 자료로 삼되, 법령이 모호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유산 조사와 관리에 대한 북한의 언론 보도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1.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제도는 1994년 <문화유물보호법>이 제정되며 법적으로 체계화되었고(김응환·전영선 1997), 이후 2012년 <문화유산보호법>, 2015년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되며 관리 범위와 규정이 확대되었다. 명칭에서 드러나듯 법령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유물과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물’(1994)에서 비물질문화유산, 즉 무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산’(2012), 그리고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민족유산’(2015)으로 점차 관리대상이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법령인 <민족유산보호법>은 2015년 제정 이후, 2019년 초에 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창현 2019: 372, 표1). 개정 법령의 전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조선의 오늘』에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을 해설하는 5편의 연속 기사가 게재됨에 따라²⁾ 이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대략적이거나 유추해볼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2015년 제정 법령은 6개 장,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나, 2019년 개정 법령은 6개 장, 73개 조문으로 확대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³⁾, 『조선의 오늘』의 기사에는 조문별로 개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개략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의 보완, 수정, 삭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다. 다만 기사 내용을 고려하면 개정 법령의 조문 증가는 제4장에서 비물질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관리 규정이 대폭 추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⁴⁾ 본고의 목적상 여기에서는 이를 상세히 다루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2015년 제정 법령을 토대로 북한의 문화유산 조사와 관리체계를 살펴되, 개정된 부분은 『조선의 오늘』 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2. 북한의 언론

북한 언론이 선전선동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도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북한 언론의 보도 자체가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띄고 있음에도 기사는 특정 사건, 행사, 제도, 조직 등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다는 점에서 선전과 윤색을 걷어낸다면 북한의 실상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창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북한 언론을 통해 북한자료의 현재성과 사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유환 2006).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 조사와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법령의 보완자료로서 관련 북한 언론보도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연중무휴로 발행되는 북한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로동신문』과 북한에서 대부분의 기사를 공급하는 『조선중앙통신』(고유환 외 2012)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언론 기사를 추가로 활용하였다. 시기적으로는 현행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의 기사를 주로 참고하였다.

II.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조직과 편제

<민족유산보호법>에 따르면 중앙의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에서 문화유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민족유산보호기관’이 실무를 담당한다.⁵⁾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는 중앙뿐만 아니라 각급 인민위원회에도 설치되도록 규정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북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⁶⁾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내각의 지도하

1) 「민족유산보호법 수정 보충」, 『조선중앙통신』, 2019. 1. 31.

2)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1)」, 『조선의 오늘』, 2019. 2. 19.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3)」, 『조선의 오늘』, 2019. 2. 23.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4)」, 『조선의 오늘』, 2019. 2. 27.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5)」, 『조선의 오늘』, 2019. 2. 28.

3)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1)」, 『조선의 오늘』, 2019. 2. 19.

4)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3)」, 『조선의 오늘』, 2019. 2. 23.

5) <민족유산보호법> 제54조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의 조직운영

6) “중앙과 지방에 조직된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우리 민족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벌리었다.”(「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난 1년」, 『조선중앙통신』, 2015. 11. 2.)

에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총괄하며⁷⁾, 문화유산의 수집⁸⁾, 평가 등록⁹⁾, 관리¹⁰⁾, 이용¹¹⁾ 등의 계획 수립, 심사, 허가 등을 수행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며 관련 부처인 문화성 소속으로 추정되고 있지만(김현우·이선복 2019; 박지영 2020; 정창현 2019) <민족유산보호법>에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문화성 산하 조직으로 편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내각의 지도를 받는다는 표현이 확인될 뿐이다. 그러나 북한 문헌에서 1972년 유적유물발굴보존사업 담당 기관이 교육성과 문화성에 소속되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기에 내각 직속으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전신인 ‘문화유물보존국’이 새로 출범하였고, 이후 독자적인 기구로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으로 발전하였다는 기술이 확인됨에 따라(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4), 내각의 한 부처인 문화성 소속이라기보다는 내각 직속 기관일 가능성이 있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에는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및 ‘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서 존재한다. 이 위원회는 물질유산 혹은 비물질유산을 심의평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과학,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¹²⁾ 1987년 전신인 ‘역사유적유물심의평가위원회’가 신설될 당시에는 정무원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예술부(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 문화보존지도국(당시),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문화보존연구소(당시) 소속 인원들이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등을 구성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김순영 2017: 8), 현재도 이러한 구성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문화유산 연구 및 자문기관으로서 ‘조선민족유산보존사’가 있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 조사, 발굴, 복원 및 보수 설계, 보존 연구, 출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¹³⁾ 소속 인원은 기자, 연구사, 설계사 등으로 구성된다(허태선 2007). 북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앙의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별도로 각 시도 단위에 ‘민족유산보존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⁴⁾

북한의 문화유산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지도하에 각지의 ‘민족유산보호기관’ 및 각급 기관, 사업소, 단체, 공민에 의해 관리되는데¹⁵⁾,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민족유산보호법>에 편제와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각지의 유적관리소와 역사박물관으로 비정되어 왔으며(김현우·이선복 2019; 정창현 2012), 그 편제도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에 위치한다고 추정되지만, 법령상 그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탈북인사의 증언을 통해 2000년대에는 문화보존지도국→도 행정위원회 및 문화보존담당지도원→유적·유물관리소로 이어지는 체계가

7) <민족유산보호법> 제53조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

8) <민족유산보호법> 제10조 민족유산발굴 및 수집의 계획화

9) <민족유산보호법> 제18조 민족유산의 의무적인 평가, 등록

10) <민족유산보호법> 제28조 민족유산관리분담

11) <민족유산보호법> 제37조 역사유적리용자의 의무, 제38조 역사유물의 보관과 모조품의 리용, 제39조 민족유산참관, 제40조 역사교양거점에 대한 건설과 그 보존관리 등

12) <민족유산보호법> 제19조 민족유산심의평가위원회의 조직

13) <민족유산보호법> 제57조 민족유산보존사의 조직운영

1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라선시민족유산보존사의 연구성원들과 함께...”(“라선시에서 발굴된 자기 가마터”, 『로동신문』, 2019. 2. 6.)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각 도민족유산보존사들에 비물질유산연구실을 내오고 이 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조선에서의 비물질문화유산보호활동”, 『조선중앙통신』, 2018. 11. 20.)

15) <민족유산보호법> 제27조 민족유산관리의 담당자

알려졌으며(권오국 2006), 최근의 증언에서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도 역사유적관리소→시·군 인민위원회 역사유적감독원의 편제가 확인된 바 있다(김현우·이선복 2019).¹⁶⁾ 박물관의 경우,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방 행정기관과 중앙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장경희 2010), 법적으로는 지방정권기관에서 박물관 등의 역사교양거점을 건설할 수 있지만, 그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¹⁷⁾과는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적관리소는 령통사유적관리소, 왕건왕릉유적관리소¹⁸⁾, 단군릉 유적관리소¹⁹⁾, 동명왕릉유적관리소²⁰⁾와 같이 특정 유적을 중심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각 시도에는 민족유산보호관리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언론기사를 통해 만경대민족유산보호관리소²¹⁾,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²²⁾, 자강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²³⁾, 평양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²⁴⁾, 안악군민족유산보호관리소²⁵⁾, 황해남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²⁶⁾ 등이 확인되는데, 민족유산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유산보호관리소는 지역 내의 역사유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관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된다.²⁷⁾ 이러한 민족유산보호관리소는 각 시도단위에 일률적으로 편제된 것이 아니라 민족유산의 분포밀도에 따라 설치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서 보았듯이 평양에는 평양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가 존재하는 데에도 평양시 내에 만경대민족유산보호관리소가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반면, 강계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는 확인되지 않는 대신 자강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에 강계시관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²⁸⁾ 일반적으로는 각 시도에 민족유산보호관리소가 설치되지만, 민족유산이 집중되는 지역에는 만경대나 안악군과 같이 별도의 민족유산보호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강계시의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적어 민족유산보호관리소를 설치하지 않은 대신, 도 소속의 관리원들이 활동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⁹⁾

16) 뒤에서 확인되듯이 도 단위의 관리기관은 특정 유적을 대상으로 설치되는 유적관리소보다는 민족유산보호관리소가 적절하다고 여겨지며, 도 역사유적관리소라는 명칭은 인터뷰를 했던 탈북인사 기억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17) <민족유산보호법> 제40조 역사교양거점에 대한 건설과 그 보존관리

18)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개성시에서」, 『로동신문』, 2017. 11. 26.

19) 「단일민족의 귀중한 문화적재보」, 『로동신문』, 2013. 10. 3.

20) 「사연깊은 역사유적에 새겨가는 값높은 삶-동명왕릉유적관리소 소장 오계근동무와 종업원들」, 『로동신문』, 2015. 6. 4.

21)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조선의 소리』, 2020. 4. 11.

22) 「력사유적보존관리사업 적극 추진」, 『로동신문』, 2017. 4. 24.

23) 「관리일지에 비긴 애국의 마음」, 『로동신문』, 2017. 10. 19.

24) 「옛 모습을 보존하고있는 모란봉의 력사유적들」, 『조선중앙통신』, 2016. 9. 23.

25) 「구월산 월정사보존관리에 바쳐가는 삶」, 『로동신문』, 2015. 10. 2.

26) 「황해남도에서 력사유적들에 대한 보수공사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4. 11. 3.

27) 「만경대민족유산보호관리소에서 봄철기간에 력사유적들에 대한 보수 및 주변정리사업과 천연기념물들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대상별특성에 맞게 잘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다」(「민족유산보호사업에 힘을 넣고 있다」, 『조선의 소리』, 2020. 4. 11.)

28) 「자강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 강계시관리원들은 매일과 같이 마음도 가볍게 일손을 잡곤 한다」(「관리일지에 비긴 애국의 마음」, 『로동신문』, 2017. 10. 19.)

29) 강계시는 자강도인민위원회와 자강도당 소재지임에 따라 자강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가 소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라 별도의 강계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를 설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평양시-만경대의 사례를 고려하면 근거리임에도 별도의 민족유산보호관리소가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관리소의 설치 기준은 관리대상 민족유산의 분포와 밀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기관 외에도 지방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 소속 민족유산보호국이라는 기관명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민족유산보호법>은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를 각급 인민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중앙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같은 실무를 담당한 기관이 ‘민족유산보호국’이라는 명칭으로 각급 인민위원회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각 시도 인민위원회 소속 민족유산보호국은 개성시에서만³⁰⁾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민족유산보호국이 각급 인민위원회에 설치되었는지 아니면 개성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개성시 인민위원회에 특별히 설치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³¹⁾

지금까지 <민족유산보호법>과 북한 언론기사를 토대로 문화유산 관리조직과 그 편제를 살펴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북한의 내각에는 정책기구인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와 실무기관인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있으며,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산하에는 문화유산 심의평가기구인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그리고 전문 조사 및 연구기관인 ‘조선민족유산보존사’가 있다. 각지의 문화유산 관리를 담당했던 ‘민족유산보호기관’으로는 유적관리소, 역사박물관, 민족유산보호관리소 등이 있으며 각각은 민족유산의 분포와 밀도에 따라 각 지방행정단위에 설치·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III. 북한의 문화유산 조사 및 등록절차

민족유산에 대한 발굴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청원할 수 있으며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평가하여 조사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었다.³²⁾ 한편 발굴조사의 승인을 위해서는 긴급보존처리준비상태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발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족유산의 손상, 주변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여겨진다.³³⁾

비물질유산과 자연유산의 발굴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승인 없이 각급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³⁴⁾, 물질유산의 경우에는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만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의 경우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통보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³⁵⁾, 발굴조사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실시할 수 있다.³⁶⁾ 개정을 통해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에서만 발굴조사가 시행되도록 규

30) 「고려시기 력사유적인 관음사 개진보수」, 『조선중앙통신』, 2018. 2. 7.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 『로동신문』, 2017. 11. 26.

「민족유산은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야 할 귀중한 재보」, 『로동신문』, 2015. 10. 24.

31) ICOMOS 신청서에 따르면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을 위해 관리 감독의 주체와 관련 조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감독 체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로 계획되어 있는데(박성진 2013: 70) 개성시 인민위원회 민족유산보호국은 그러한 관리감독 체계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2)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33)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34) <민족유산보호법> 제11조 민족유산의 발굴기관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35) 개정 법령 해설 기사에는 “물질유산발굴을 위한 조사, 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발굴을 위한 조사, 시굴이라고 언급된 것을 미루어 여기에서의 조사는 지표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36)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정됨에 따라,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의 등록 기준은 별도의 시행 규정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표, 시굴, 발굴조사로 조사의 종류가 기존보다 세분화되어 규정되었지만, 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실제 중앙기관에 대한 통보만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해설 기사가 아닌 실제 개정된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서도 세부 규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실제로 그러하다면 문화유산 발굴조사 건수가 증가하여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 정밀발굴조사가 아닌 지표와 시굴조사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회의적이며 북한 언론보도나 『조선중앙연감』 기록으로 그러한 분위기는 감지하기 어려운 편이다. 아니면 기존에 관행적으로 발굴조사가 아닌 지표 및 시굴조사는 조사기관 임의로 이루어졌는데, 법령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삽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필요에 따라 해외의 단체 또는 개인과의 공동 발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됨으로써³⁷⁾ 해외기관과의 공동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남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개발구역에 대한 사전 발굴조사의 의무조항은 <민족유산보호법>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김범철 2019; 심광주 2018). 사전조사 대신 건설과정에서 문화유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당국에 통보하여 ‘민족유산보호기관’의 확인과 보호대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다.³⁸⁾ 이것은 개정 전에 발견된 문화유산에 대해 무조건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던 것에 비해³⁹⁾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은 발굴조사 완료 후 민족유산발굴보고서를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제출하는 한편,⁴⁰⁾ 보존대책을 세워 해당 유적을 관리하게 될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⁴¹⁾

조사유적과 출토유물은 심의평가 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⁴²⁾ 민족유산의 명칭, 소재지, 시기와 유래, 현상태, 보존전망과 장소 등을 기술한 심의평가신청서를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제출하면⁴³⁾,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유적과 유물의 등급이 부여된다. 역사유적은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역사유물은 국보, 준국보, 일반유물로 분류하며, 비물질유산은 국가와 지방비물질유산으로 등급을 나누어 평가한다.⁴⁴⁾

심의평가 이후 내각의 승인을 받아 역사유적, 국보 및 준국보유물, 비물질유산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일반유물은 해당지역의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등록하여 관리된다.⁴⁵⁾ 발굴한 민족유산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지정하는 해당 지역의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이관됨에 따라⁴⁶⁾ 중앙기관에 등록된 문화유산이더라도 대체로 유물은 각 지역의 역사박물관에 소

37)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38)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39) <민족유산보호법> 제14조 민족유산발견의 통보, 제17조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건설협의

40) <민족유산보호법> 제13조 민족유산발굴보고서제출, 발굴한 민족유산의 처리

41)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42) <민족유산보호법> 제18조 민족유산의 의무적인 평가, 등록

43) <민족유산보호법> 제20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

44) <민족유산보호법> 제21조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방법

45) <민족유산보호법> 제22조 민족유산의 등록 및 폐기

장하고, 유적은 대체로 민족유산보호관리소 혹은 유적관리소에서 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관련 중앙기관과 합의 후⁴⁷⁾ 내각의 승인을 통해 역사유적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세계유산인 경우에는 국제협약의 요구수준이 합당해야 한다. 보호 구역 내 토지는 '민족유산보호기관'으로 이관된다.⁴⁸⁾

북한에서 문화유산 발굴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비롯한 각급 박물관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과가 알려져 있다(최종택·성춘택 2019: 9). 다만 발굴조사와 관련한 북한의 언론보도에서는 다양한 기관이 발굴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지만(표 1), 여전히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굴조사 기관 중 일부는 법에 규정된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시되는데, 그 이유는 삼지연혁명사적관⁴⁹⁾, 강원도 민족유산보호부문, 판교군 일군들⁵⁰⁾, 개성시 답동고급중학교, 해선협동농장⁵¹⁾과 같은 비전문 기관 혹은 모호하게 표현된 조사참여인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승인을 받아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은 각지의 대학, 박물관, 민족유산보호관리소 등 모든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해당한다기보다는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조선민족유산보존사와 같이 규모와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조선중앙연감』에 소개된 발굴조사 건수를⁵²⁾ 감안하면(표 2), 소수의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이 전국 각지에서 여러 건의 발굴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소속 조사인력만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지역에 소재한 '민족유산보호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보조인력을 충원하여 발굴조사를 수행함에 따라 관련 기사에서 공동조사기관으로 보도된 것이 아닌가 한다.

46) <민족유산보호법> 제13조 민족유산발굴보고서제출, 발굴한 민족유산의 처리

47) 기존 <민족유산보호법> 제30조에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8)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3)」, 『조선의 오늘』, 2019. 2. 23.

49) 「백두산천지호반에서 력사유적유물 새로 발굴」, 『로동신문』, 2018. 9. 2.

50) 「고려시기의 절유적인 광복사터 새로 발굴」, 『로동신문』, 2018. 4. 24.

51) 「고려시기 왕릉들을 새로 발굴」, 『로동신문』, 2016. 7. 24.

52) 『조선중앙연감』에 정리된 연간 발굴조사는 발굴조사 허가 권한이 있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통계가 아니라 사회과학원에서 선별적으로 작성한 것임에 따라 정확하지 않으며,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정확한 발굴조사 통계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 1. 최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에 보도된 발굴조사 목록⁵³⁾

보도매체	보도일자	제목	조사기관
로동신문	2020.5.2.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에서 원시동굴유적 새로 발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고고학학회,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선중앙통신	2019.10.22.	조선에서 고려 2대왕의 무덤 새로 발굴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송도사범대학 교원 및 학생
로동신문	2019.9.28.	가치있는 유적유물들을 발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적발굴대
조선중앙통신	2019.7.21.	고려시기 왕릉급무덤 발굴, 국보유적으로 등록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송도사범대학 교원, 연구사, 학생
로동신문	2019.2.6.	라선시에서 발굴된 자기가마터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라선시민족유산보존사
로동신문	2018.9.2.	백두산천지호반에서 력사유적유물 새로 발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삼지연혁명사적관
로동신문	2018.4.24.	고려시기의 절유적인 광복사터 새로 발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강원도 민족유산보호부문 판교군 일군과 근로자들
로동신문	2018.4.17.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 새로 발굴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로동신문	2017.12.13.	규모가 큰 고구려무덤데 새로 발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로동신문	2017.9.21.	고구려시기의 벽화무덤 새로 발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로동신문	2017.8.20.	고려15대왕 숙종의 무덤 새로 발굴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연구사 및 발굴대원 개성시민족유산보호관리소 고려박물관 연구사
로동신문	2017.2.19.	민족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고구려에 통합된 조선후국의 소금생산유적 발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로동신문	2016.10.9.	라선시에서 원시,고대시기 유적유물 발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라선시 민족유산보호부문 일군
로동신문	2016.7.24.	고려시기 왕릉들을 새로 발굴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송도사범대학 력사학부 학생들 개성시 답동고급중학교 교원 해선협동농장 일군들
로동신문	2016.5.20.	조선민족의 자랑-금속활자 새로 발굴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조선중앙통신	2016.4.1.	조선의 력사학자들과 연구사들 개성 만월대발굴사업 활발히 진행	고고학학회 조선중앙력사박물관
로동신문	2015.10.17.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구석기시대전기유적 새로 발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53) <민족유산보호법>이 제정된 2015년 이후의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매체별로 보도가 중복되는 경우 『로동신문』 보도를 선택하여 수록하였다.

표 2. 『조선중앙연감』 2016~2018 수록 발굴조사 목록

기준연도	발굴조사 내용
2015년 (조선중앙연감 2016)	황해북도 승호군 리천리 집자리 남포시 온천군 고인돌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 구석기유적 평안북도 태천군 룡오리산성 평안북도 구성시 기룡니성 평안북도 동림군 동림성 평안북도 염주군 룡골산성 평안북도 피현군 홍화진성, 백마산성 등 황해북도 봉산군 고구려돌간흙무덤 함경남도 북청군 발해무덤 등 87개 유적 개성시 삼거리 5층석탑
2016년 (조선중앙연감 2017)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개성 해선리 고려 왕릉 라선시 선봉지구 웅상동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고구려무덤떼 평양시 삼석구역 광덕리 회곽무덤 함경북도 여량군 일대 고구려, 발해산성 수십기 평안남도 성천군 남포시 강서구역 개성시 일대 남포시 온천군 원읍로동지구 소금생산유적
2017년 (조선중앙연감 2018)	개성시 선적리 고려 15대왕 속종 무덤 평양시 락랑구역 보성리 고구려 벽화무덤

북한 언론보도에서는 발굴조사의 경위나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구제발굴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⁵⁴⁾를 제외하고는 학술조사인지 구제조사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토개발의 수준이 미미한 상황에서 평양 정도를 제외하고는 구제발굴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구제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하였듯 개발구역에 대한 사전조사 규정이 없는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체제와 단기간에 할당량의 초과달성을 장려하는 속도전(이관세 외 2016: 436-444)을 중시하는 북한 사회의 분위기가 결합되었을 때, 공사, 건설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는 문화유산의 존재를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일부 언론보도에서 발굴조사 현장에서 전문가 검토회의 또는 학술 자문회의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된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2017년 개성시 선적리의 고려 고분 발굴조사 현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가 이 무덤을 고려 속종의 무덤으로 고증하였다는 언급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⁵⁵⁾ 2020년 5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

54) 2016년 평양시 삼석구역 광덕리 회곽묘 발굴조사는 위치와 유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구제발굴일 가능성이 있다.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발굴현장에서 이 유적이 고려 15대왕 속종의 무덤임을 고증하였다” (『고려 15대왕 속종의 무덤 새로 발굴』, 『로동신문』, 2017. 8. 20.)

고고학회'와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가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 동굴유적을 심의평가하여 국보유적으로 등록을 결정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⁵⁶⁾ 개성시 선적리 고려고분은 고고학회 회원들이 방문하여 일종의 자문회의를 개최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시 향목리 동굴유적의 경우에는 고고학회가 심의평가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굳이 따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고고학회가 회원들이 유적의 보존조치를 위해 일종의 매장문화재 평가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평가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보유적 등록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고고학회가 발굴조사 자문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2건밖에 확인되지 않은데다가 보도 내용도 소략하기에 이러한 절차가 북한의 발굴조사 세부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유적에서 일회적으로 나타난 사례 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한편 북한의 고고학회는 자문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으로서 발굴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⁵⁷⁾

앞서 살펴보았듯이 발굴조사 이후 발굴보고서와 유적 보존대책의 제출과 함께 해당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에서 최근 5년 동안 유적에 대한 심의평가 결과, 국보유적 6개, 보존유적 30여개를 등록하였다고 하는데,⁵⁸⁾ 자세한 목록은 언급되지 않으며, 몇몇 보도를 통해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표 3). 등록되었다고 알려진 유적들은 선사시대와 고구려, 고려시대에 집중되는 양상이지만 전체 등록유적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양상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부 등록유적은 언론보도를 통해 발굴조사 시점과 등록시점을 어느 정도 판별하는 것이 가능함에 따라 조사 완료 후 보고서 작성과 심의평가 기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의 보도 중에서 발굴조사와 유적등록이 모두 확인되는 유적은 4개소이다(표 4). 각 보도시점은 발굴조사 완료와 유적등록 완료 시점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굴조사 완료 후 보고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심의평가위원회 개최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적의 규모나 출토유물의 수량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6개월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잠정 비정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사례가 적어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 보고서 제출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보고서를 완료하고 유적의 심의평가를 마칠 수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정식보고서의 단행본 출판보다는 약식보고서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연구풍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와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유적발굴과 연구정형을 심의하고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동굴유적을 국보유적으로 등록하였다”(『평양시 강동군향목리에서 원시동굴유적 새로 발굴』, 『로동신문』, 2020. 5. 2.)

57) “지난 3월 중순부터 개성 만월대에 대한 발굴사업에 착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와 조선중앙력사 박물관의 학자, 연구사들은 보름동안에 개성 만월대 서부건축군 6건축지의 10건물터와 14건물터, 그 배수로에 대한 발굴조사를 전부 끝내었다.”(『조선의 력사학자들과 연구사들 개성 만월대발굴사업 활발히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6. 4. 1.)

58)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로동신문』, 2019. 10. 24.

표 3. 최근 등록된 역사유적 목록

보도매체	보도일자	제목	유적	시대
조선중앙통신	2017.7.8.	조선에서 역사유적들을 새로 등록	남포시 온천군 원읍로동자구 소금생산유적	고구려
			황해북도 연산군 읍원동 고인돌	청동기
			황해북도 린산군 대촌 고인돌 6기	청동기
내나라	2018.6.20.	역사유적들을 새로 등록	강원도 판교군 사동리 광복사터	고려 (국보유적)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 벽화무덤	고구려 (보존유적)
조선중앙통신	2019.7.21.	고려시기 왕릉급무덤 발굴, 국보유적으로 등록	개성 온혜릉	고려 (국보유적)
로동신문	2019.10.24.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고려금속활자	고려
			고려 2대왕릉	고려
조선중앙통신	2020.1.15.	조선에서 비물질문화유산들과 발굴된 역사유적유물들, 천연기념물들을 새로 등록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 동굴유적	구석기
			평안남도 속천군 신평리유적	구석기
			남포시 온천군 송현리석불상	고려

표 4. 발굴조사 보도시점과 유적등록 보도시점 비교표

유적	발굴조사 보도	유적 등록 보도	시차
남포시 온천군 원읍로동자구 소금생산유적	2017. 2. 19. ⁵⁹⁾	2017. 7. 8. ⁶⁰⁾	약 5개월
평안남도 속천군 신평리유적	2019. 9. 28. ⁶¹⁾	2020. 1. 15. ⁶²⁾	약 4개월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동 벽화무덤	2018. 4. 22. ⁶³⁾	2018. 6. 20. ⁶⁴⁾	약 2개월
강원도 판교군 사동리 광복사터	2018. 4. 24. ⁶⁵⁾	2018. 6. 20. ⁶⁶⁾	약 2개월

59) 「민족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빛내이는 자랑찬 성과」, 『로동신문』, 2017. 2. 19.

60) 「조선에서 역사유적들을 새로 등록」, 『조선중앙통신』, 2017. 7. 8.

61) 「가치있는 유적유물들을 발굴」, 『로동신문』, 2019. 9. 28.

62) 「조선에서 비물질문화유산들과 발굴된 역사유적유물들, 천연기념물들을 새로 등록」, 『조선중앙통신』, 2020. 1. 15.

63)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 『조선의 오늘』, 2018. 4. 22.

64) 「역사유적들을 새로 등록」, 『내나라』, 2018. 6. 20.

65) 「고려시기의 절유적인 광복사터 새로 발굴」, 『로동신문』, 2018. 4. 24.

66) 「역사유적들을 새로 등록」, 『내나라』, 2018. 6. 20.

IV. 북한의 문화유산 복원과 관리

1. 문화유산의 복원

〈민족유산보호법〉에 따르면 민족유산의 복원은 역사적 그리고 교양적 가치를 지닌 역사유적 유물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원상대로⁶⁷⁾ 개건하고 보수관리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⁶⁸⁾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은 당대를 대표하고 교양적 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민족유산을 복원 대상으로 선정하며⁶⁹⁾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민족유산복원안을 작성하고 이를 내각의 승인을 받아 민족유산의 복원이 실시된다.⁷⁰⁾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책논의기구로서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를 거쳐 내각의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승인한 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담당 기관이 설계를 수행하며,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의해 지정된 기관만이 복원을 담당한다. 역사유적의 복원이 종료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역사유적 복원설계 기관은 평양건설건재대학⁷¹⁾ 과학연구소 건축사연구실과 조선민족유산보존사가 알려져 있다. 평양건설건재대학 과학연구소 건축사연구실 리화선 실장을 중심으로 대성산성 남문, 동명왕릉⁷²⁾, 정릉사, 광법사, 금강사탑 등의 복원설계를 담당하였으며(리재홍 2004: 8),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안주 백상루, 묘향산 보현사 대웅전과 만세루, 왕건왕릉의 설계에서 시공까지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다(허태선 2007: 14).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복원 또는 개건사업은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왕릉을 지칭하는 소위 3대 시조릉 개건사업이다(최명남 2015). 주체적 입장 및 민족과 현대적 미감에 적합하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시대의 기념물로서 재창조된 고분들로서 그 중 거대한 피라미드가 된 단군릉의 이미지는 북한식 문화유산 복원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단지 문화유산 복원 방식뿐만 아니라 북한학계가 부정하던 단군신화를 갑자기 인정하게 됨에 따라(이선복 1997: 47-48) 북한의 역사해석에도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였다.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왕릉 개건시의 상황과 교시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으며, 1994년 처음으로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에도 반영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후에도 이러한 복원경향이 유지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단군릉 개건 직후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했지만,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2000년대 이후에도 3대 시조릉과 같은 문화유산의 대규모 복원이 존재했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완료된 복원사업으로는 강원도 고산의 석왕사 개건사업이 확인된다. 석왕사는 조선 시대 사찰로 1998년 김정일이 방문하여 원상대로 복구하고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야 한다는 교시를 남기기도 했던 유적이다(최선학 2015). 2015년 7월 15일에 석왕사 복원공사가 진

67)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1)」, 『조선의 오늘』, 2019. 2. 19.

68)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69) 〈민족유산보호법〉 제45조 민족유산복원의 기본요구

70) 「법으로 담보되는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정책 (2)」, 『조선의 오늘』, 2019. 2. 20.

71)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건설건재대학은 평양건설종합대학으로 승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ktech.net/inform/nkt_briefing/nkt_briefing_v.jsp?record_no=342)

72)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s://nkinfo.unikorea.go.kr>)에 따르면 동명왕릉의 설계는 평양도시설계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마도 설계를 담당했던 리화선이 당시에는 평양도시설계사업소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평양도시설계사업소는 동명왕릉뿐만 아니라 단군릉의 설계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척되고 있다는 보도로부터⁷³⁾ 대웅전, 심검당, 응진전을 비롯한 건물 8동⁷⁴⁾ 및 불상과 불구가 복원되어 2019년 12월 12일에 준공식을 진행하였다는 기사를 고려할 때,⁷⁵⁾ 최소 4년 이상 복원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준공식에서 김정은의 지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최고지도자의 꾸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지만 지도의 세부 내용이나 복원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복원공사 당시 석왕사에 대한 보도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관계자가 여러 보수 및 복원사업의 하나로 언급하거나⁷⁶⁾, 다른 지역의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보도되고 있음에 따라⁷⁷⁾ 당 혹은 최고지도자의 관심사안이 되기보다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문화유산 복원 및 보수사업의 하나로써 간주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석왕사 복원사업은 3대 시조릉 복원과 달리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즉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석왕사 복원안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석왕사 복원공사는 평양건축대학의 설계를 바탕으로⁷⁸⁾ 강원도민족유산보호관리소가 인민군의 지원을 받아⁷⁹⁾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문화유산의 일상적 보수와 관리

앞서 살펴본 석왕사와 같은 복원사업 외에 유적과 유물의 보수, 수복, 소독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기업소, 단체에 의해 전문적인 과학기술을 갖춘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⁸⁰⁾ 언론보도에서 확인되는 문화유산 보수는 주로 단청작업, 기와 보수, 서까래와 같은 목부재 보수 및 교체 작업 등이 있다. 이러한 보수작업은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고 자칫 문화유산의 훼손 위험도 존재하며, 보수 작업을 위한 물자와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지방의 '민족유산보호기관' 독단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관계자의 인터뷰나 보도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기사에서 각지의 문화유산 보수 계획과 현황이 확인되는 것도⁸¹⁾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의 언론보도 상에서는 이러한 문화유산의 보수 외에도 꽃과 나무 심기 등의 녹지 정비⁸²⁾, 휴식공간 설치⁸³⁾, 도로보수⁸⁴⁾, 십지어는 버섯재배장, 온실, 축사 설치⁸⁵⁾ 등 단순 환

73) 「조선에서 민족의 역사유적유물들 훌륭히 보존관리」, 『조선중앙통신』, 2015. 7. 15.

74) 「우리의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로동신문』, 2019. 10. 24.

75) 「복원된 석왕사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2019. 12. 13.

76) 「민족유산보호지도국 부국장 로철수가 밝힌데 의하면 월정사(황해남도 안악군), 안불사(함경남도 금야군), 만년사(평안북도 구성시) 보수와 석왕사(강원도 고산군) 복원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역사유적들에 대한 보수 및 복원공사 한창」, 『조선중앙통신』, 2018. 5. 16.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올해 안악군과 석왕사복원공사, 고구려박물관건설, 수십개의 옛 건물들과 옛성들에 대한 보수를 계획하고 내밀고 있다」 「조선에서 보다 적극화되고있는 민족유산보호사업」, 『조선중앙통신』, 2017. 3. 22.

77) 「평성시와 평원군의 ...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고산군에 있는 석왕사의 고적들에 대한 복원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 ...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민족유산보호사업 활발히 진행」, 『로동신문』, 2017. 10. 29.

78) 「군중적운동으로 진행되는 민족유산보호사업」, 『조선중앙통신』, 2019. 10. 24.

79) 「민족유산보호사업 활발히 진행」, 『로동신문』, 2017. 10. 29.

80) <민족유산보호법> 제34조 민족유산의 보수, 수복, 소독

81) 각주 76)과 동일

82) 「민족유산보호사업 활발히 전개」, 『로동신문』, 2019. 11. 15.

83) 「개성시에서 많은 역사유적 개건보수」, 『로동신문』, 2019. 5. 25.

84) 「조선에서 문화유산보호사업에서 많은 성과들 이룩」, 『조선중앙통신』, 2018. 11. 30.

85) 「민족유산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 『로동신문』, 2017. 11. 26.

경미화에서 직무 관련성을 짐작하기 어려운 사업까지 추진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기에 단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보도는 대체로 4월과 11월로 지정된 민족유산애호월간을⁸⁶⁾ 전후한 시점에 집중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 이러한 현상은 민족유산애호월간 정책에 따른 기관별 활동보고를 위해 추진되었던 게 아닌가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의 <민족유산보호법>과 언론보도를 토대로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조직과 편제, 문화유산의 조사와 등록 절차, 복원 및 보수 절차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관련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는 문화유산 관련 조직과 편제, 조사, 복원, 관리 사례 등을 통해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지점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활용 가능한 보도자료가 많지 않았기에, 이 글은 북한의 문화유산 조사와 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통해 여기서 제시된 여러 가능성들을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은 <민족유산보호법>의 세부 규정을 담고 있는 <민족유산보호법시행규정>⁸⁷⁾과 <민족유산보호법시행규정세칙>⁸⁸⁾이다. 여기에는 <민족유산보호법>이 다루지 않거나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직제, 절차,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기사와 문헌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된 만큼 해당 자료의 입수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고유환, 2006,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의 이해」,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선인.
2. 고유환·이주철·홍민, 2012, 『북한 언론 현황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7, 「민속전통을 옹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7년 4호.
4. 권오국, 2006, 「탈북 인사 대담 110: 북한의 문화재 실태」, 『통일한국』 276, 평화문제연구소.
5. 김범철, 2019, 「북한지역 SOC사업 구상과 문화유산: 북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제언」, 『문화재』 52권 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86) <민족유산보호법> 제29조 민족유산애호월간

87) “민족유산보호법시행규정과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시행규정이 채택되어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조선에서 민족유산보호사업 활발」, 『조선중앙통신』, 2016. 11. 7.

88) <민족유산보호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유물보호법>에는 <문화유물보호법시행규정>과 <문화유물보호법시행규정세칙>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아(독고철남 2016: 9) <민족유산보호법시행규정>과 <민족유산보호법시행규정세칙>도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6. 김순영, 2017,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평가와 처리를 잘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7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7. 김응환·전영선, 1997,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연구: 김일성 부자의 교시와 법령을 중심으로」, 『민족학연구』 2, 한국민족학회.
8. 김현우·이선복, 2019,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지방의 유적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재』 52권 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9. 독고철남, 2016, 「민족문화유산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6년 3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0. 리재홍, 2004, 「한 민족건축학자에게 돌려주신 고귀한 믿음과 크나큰 은정」, 『민족문화유산』 2004년 1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1. 박성진, 2013,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활용 방안 연구」, 『현대북한연구』 16(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12. 박지영, 2020,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역사유물」, 『북한 정책변화에 따른 민족유산의 현황과 이해』 2020년 제1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문화재청·경기도·강원도.
13. 심광주, 2018, 「개성공단 건설부지 내 문화유산 공동조사의 성과와 과제」, 『북한 문화유산 공동조사 방안』 2018년도 한국고고학회 통일고고학특별위원회 학술회의, 한국고고학회.
14. 이관세·홍순직·장용석·장철운, 2016, 『북한 지식 사전』, 통일부 통일교육원.
15. 이선복, 1997, 「최근의 '단군릉' 문제」, 『한국사 시민강좌』 21, 일조각.
16. 장경희, 2010, 『북한의 박물관』, 예맥.
17. 정창현, 2012, 「북한의 문화유산정책과 관리 체계」, 『통일인문학』 53,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8. 정창현, 2019,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 교류」, 『통일인문학』 77,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9. 조선중앙통신사 편, 2016, 『조선중앙연감 2016』.
20. 조선중앙통신사 편, 2017, 『조선중앙연감 2017』.
21. 조선중앙통신사 편, 2018, 『조선중앙연감 2018』.
22. 최명남, 2015, 「3대시조릉을 발굴복원하기 위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민족문화유산』 2015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3. 최선학, 2015, 「석왕사」, 『민족문화유산』 2015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4. 최종택·성춘택, 2019, 「남북 문화유산 조사 현황과 공동조사를 위한 제언」, 『문화재』 52권 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5. 허태선, 2007,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자랑찬 길을 걸어온 조선문화보존사」, 『민족문화유산』 2007년 4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발표5

북한 자연유산의 현황과 과제

이 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북한 자연유산의 현황과 과제

- 천연기념물을 중심으로 -

이 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 I.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 1. 자연유산의 의미와 가치
 - 2.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의 탄생과 제도
 - II. 북한의 자연유산 관리 체계와 현황
 - 1. 제도의 변천
 - 2. 북한의 천연기념물 개념과 대상
 - 3.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 4. 북한의 천연기념물 현황
 - 5. 기타 북한의 자연유산
 - III. 우리의 과제
- 참고문헌
-

I.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1. 자연유산의 의미와 가치

오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자랑할 만한 문화 유산을 여럿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세계 유산이 이미 14곳에 달한다. 후손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연과 문화에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문화 유산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오래된 건축물이나 예술 작품에는 그것을 다듬고 만든 조상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으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이 탄생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즉 자연유산이 근간이 되었음을 간과하는 이가 많다. 주변 자연 지형과 빼어난 조화를 이루는 창덕궁이나 불교 세계의 이상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석굴암 본존불 등은 모두 이 땅의 산물로 만든 것들이다. 자연유산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생겨난 우리 고유의 유산이며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이 형성된 것이니 어찌 자연유산의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지역도 그 주변의 자연환경을 빼놓고서 문화를 논할 수 없다.

제주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난 뒤에 우리의 자연유산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듯하다.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로 우리의 자연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표현해 왔다. 그러나 입으로만 금수강산을 외쳤지 돌아서서는 난개발과 훼손을 일삼지 않았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끝없이 자연 보호를 외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구호를 들어 왔지만 실천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땅에 인간의 탐욕스런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그저 이 시대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하다 보니 조상들의 흔적이나 주변의 자

연환경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보존보다는 개발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자연을 확대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특히 오랜 시간과 역사가 쌓인 자연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문화유산보다 회복과 복원이 쉽지 않으니 애초부터 적극 보전하는 길밖에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민족이나 나라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탄생하는 데에는 그곳의 자연환경, 곧 자연유산이 배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연유산은 문화유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민족은 자연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들의 문화를 꽃피워 왔다. 자연이 재료라면 문화는 그 재료로 만든 음식인 셈이다

2.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의 탄생과 제도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자연물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제도의 근대적 시발점은 유럽이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새로운 제도와 문물의 시작이 그렇듯이 천연기념물 제도도 근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정착되었다. 천연기념물(Naturdenkmal)이란 용어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1800년 독일의 자연 과학자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년)가 남미 베네수엘라를 탐험 하던 중 자귀나무의 일종인 거대한 노거수(*Albizia saman*)를 보고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없었으나 독일어인 '나투어덴크말(Naturdenkmal)'을 일본의 식물학자 미요시 마나부(三好學, 1861-1939)가 1906년 『동양학예잡지(東洋學藝雜誌)』에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번역하면서 만들어 낸 조어였다.

서구 유럽과 교류가 잦던 일본에서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자연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일환으로 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와 제도를 받아들여 시행하고 지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천연기념물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이 보전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제도라 애석한 면이 많다.

II. 북한의 자연유산 관리 체계와 현황

1. 제도의 변천

우리와 문화적 원류(源流)를 공유하는 북한에도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과 유사한 천연기념물들이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천연기념물 제도는 남북한이 서로 나뉜 뒤에도 그 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남아 북한도 우리와 유사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문화재보호관련 입법은 해방 직후인 1946년 북한 임시인민위원회에서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46. 4. 29)>을 공포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적과 유물 및 천연기념물의 보존과 관리에 힘을 쏟았다. 이 보존령은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반출 금지, 현상 변경시 허가 등 총11조로 구성되었다. 북한은 이 보존령을 시초로 하여 1948년에는 '물질문화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으며, 1955년 12월에는 내각결정 제93호 '명승지

및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후 북한은 1994년 역사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물보호법>, 1995년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2012년 비물질문화유산을 포함시킨 <문화유산보호법>, 그리고 2015년에 공포한 <민족유산보호법>으로 유산의 개념을 점차 확대 발전시켜 왔다. 2015년에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에는 민족유산을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자연유산을 민족유산에 처음으로 포함시키면서 유산의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체계를 확립하였다.

2015년 제정된 <민족유산보호법> 제1장, 제2조 민족유산의 정의에는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 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라고 정의하였다.

2. 북한의 천연기념물 개념과 대상

북한의 『천연기념물 편람(1994)』에는 “천연기념물이란 우리나라 자연 중에서 학술적 및 풍치적(風致的) 의의가 있는 것으로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관리하는 대표적인 자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천연기념물을 통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고취시키고 과학발전과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을 오래 보존하고 증식시키며 우리 인민들이 더 잘 리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적으로 보호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천연기념물의 의의와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자연물들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상화, 사회주의 교육에 필요한 대상으로 여긴다. 따라서 북한의 『천연기념물 편람』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혁명사적 뜨거운 온정이 깃들어 있는’ 대상물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 그들에게 ‘역사적 의의’란 다른 아닌 김일성의 혁명사적 의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천연기념물을 우선 김일성, 김정일과 연관된 대상 또는 혁명사적 의의가 있는 대상물, 학술적 의의가 있는 대상물, 풍치적 의의가 있는 대상물, 그리고 경제적 의의가 있는 대상물 등으로 구분지어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의 의미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사회 전체의 공동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우선적이다. 또한 문화재(천연기념물)를 통한 민족 문화의 우수성 표현,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 등이 주된 목적이다.

반면에 북한에서는 자연물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김일성이나 김정일 등과 연관된 자연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으며, 북한의 정치체제를 선전하거나 상징할 수 있는 자연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자연물이나 자연유산도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 북한은 그들의 사회주의적 의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상화, 주체 사상 강화 등도 천연기념물의 지정 대상이자 반드시 관리해야 할 자연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북한의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

북한에서도 우리의 천연기념물 지정기준과 유사하게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중요한 동식물, 또는 지질·광물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연관된 것들이나 사회주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천연기념물은 크게 식물, 동물, 지리, 지질 등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유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독도천연보호구역,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등 ‘천연보호구역’을 천연기념물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의 각각의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물:

- 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식물, 즉 혁명사적 의의나 김일성, 또는 김정일이 직접 이름 지어 주었거나 관련있는 식물. ‘나무의 모양과 학술적 의의가 부족하더라도 역사적 사실(혁명사적 의의)이 중요할 때에는 우선 설정한다’라고 북한의 『천연기념물편람』에는 명기되어 있음.
- ② 풍치적 의미가 있는 대상으로 모양이 좋은 독립수, 모양과 관상미, 풍치미가 뛰어난 군락, 수령이 오래되고 모양이 좋은 원림식물, 그리고 역사유적이거나 기념비적인 건물, 휴양소나 공공시설물 주변 등의 풍치지점이 좋은 곳에 자라는 나무.
- ③ 학술적 의미가 큰 식물로 우리나라의 특산식물이나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여 자라는 외래수종, 그리고 외국의 주요 인사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 선물한 식물.
- ④ 그 외 경제적 가치가 큰 과수, 약용식물, 또는 희귀 식물 등.

2) 동물:

- 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직접 이름을 지어 주었거나 보내준 동물은 우선적으로 지정. 자강도 강계시의 홍주닭이 대표적 사례.
- ② 학술적 의미가 큰 동물로 크낙새와 같은 우리나라의 특산동물. 새로 발견된 종이나 도입종들 중에 전망이 큰 종들, 그리고 풍산개나 세포 조선소와 같이 북한 고유의 집짐승 시원종으로 순종 보존에 의의가 있는 종.
- ③ 호랑이, 사향노루, 곰, 수달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그 개체수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희귀동물.
- ④ 원앙새번식지, 왜가리번식지, 바닷새번식지 등 사람들의 정서생활과 풍치를 아름답게 하는 동물들의 번식지나 서식지, 또는 어류의 산란지.

3) 지리·지질 천연기념물

- ① 혁명사적 의의나 사회주의 교육에 필요한 대상(예: 백두산 천지, 삼지연 등).
- ② 순수한 학술적 가치가 큰 대상으로, 고지리환경이나 기후변동 등을 알 수 있는 화석류, 인류기원과 동식물의 진화과정을 알 수 있는 암석류, 지각구조운동을 파악할 수 있는 지질구조.

- ③ 지질적 특성과 주변 경관이 조화를 이룬 풍치적 가치가 큰 장소. 총석정, 삼선암 등의 경관적으로 아름다운 곳이나 동굴, 섬, 폭포 또한 약수(삼방약수, 신덕수 등), 온천(금강산온천, 경성모래온천 등), 담소(외금강의 옥류동, 내금강 만폭동 등), 호수(백두산 천지, 삼일포 등).

4. 북한의 천연기념물 현황

북한은 2000년대 중반까지 총 474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식물이 215건, 동물 106건, 지리 81건, 지질 72건 등이다. 북한의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식물

북한에서 식물천연기념물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거수다. 그 중 소나무류와 은행나무, 그리고 느티나무가 다수를 차지한다.

북한의 천연기념물 편람에는 김일성이 직접 심었다는 나무들이 가장 먼저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문수봉 이갈나무’(=낙엽송: 천연기념물 제8호), ‘릉라도 산벚나무와 전나무’(천연기념물 제1호), ‘장자산 잣나무’(천연기념물 제410호), ‘모란봉 전나무와 잣나무’(천연기념물 제395호)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나무들은 김일성이 직접 심은 기념수로 북한에서는 그 가치와 의의가 다른 천연기념물에 비해 크다. 그 다음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관련된 일화가 있거나(‘은정 배나무’: 천연기념물 제42호) 직접 이름지은 나무들(‘대성산 목란’: 천연기념물 제11호)이 뒤를 잇는다. ‘대성산 목란’은 함박꽃인데 북한의 국화(國花)이다. 흔히 북한의 국화는 진달래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북한의 천연기념물 편람에는 대성산 목란(함박꽃)을 “우리나라에 있는 목란이라는 꽃은 함박꽃과 같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향기도 그윽하고 나뭇잎도 보기 좋아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 것입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와 함께 김일성이 국화로 지정해준 내력을 기록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목란은 현재 평양의 중앙식물원에 심겨져 있다. 평양의 중앙식물원에는 목란 외에도 다양한 천연기념물이 자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의미와 내력이 분명한 천연기념물일지라도 그 역사적 내력이나 문화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오직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체가 되어 설명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함흥 반송(함흥 본궁송, 천연기념물 제252호)이다. 원래 함흥 반송은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옛 처소인 함흥 본궁에 심은 세 그루의 소나무 중 한 그루다. 이 소나무는 함경남도 함흥시 사포구역 소나무동 함흥 본궁 앞마당에 자라고 있는데, 조선 왕조 개창 이래 최초의 공식 기념식수로 추측된다. 태조 이성계는 자신이 기거하던 곳에 늘 푸른 기상의 상징인 소나무를 심음으로써 건국 시조로서 왕조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2005년 발행된 『조선천연기념물도감 1』에 수록된 함흥 반송은 이러한 역사적 내력이나 문화적 의미는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고 함흥 반송과 김일성·김정일의 연관된 내용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특산식물로는 우리나라나 북한에만 자생하는 희귀하고 학술적 의의가 큰 식물들인데 금강초롱꽃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미선나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남한 지역에는 자생하지 않으면서 개마고원 북동쪽에 위치한 관모봉에 자생하는 왕대황(일명 장군풀: *Rheum coreanum*)도 천연기념물에 등록되어 있다. 이 왕대황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

자 해발고도 약 2,000m 이상에서 주로 자라는 고산식물에 속한다. 그 외에도 사찰에 주로 심는 염주나무(‘강호 염주나무’ 천연기념물 제161호), 석회암지대가 자생지인 회양목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회양목은 북한에서 ‘고양나무’라고 불리워 지는데 강원도 천내군 동흥리에 무리지어 자생(‘두류산 고양나무군락’ 천연기념물 제202호)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그 학술적 의의를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양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여주 효종대왕릉(寧陵)의 회양목: 천연기념물 제459호)은 있지만 북한의 두류산 회양목처럼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곳이 지정된 사례는 없다.

또한 과일나무류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여러 건이다. 우선 북한에서 우리나라 사과나무의 시조(始祖)라고 전해지는 함경남도 북청군 룡전리의 ‘조상(祖上)사과나무(천연기념물 제285호)’를 들 수 있다. 이 사과나무는 1898년에 심은 것이라고 하며 품종은 북청(국광)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과일나무류 중에는 배나무, 밤나무, 살구나무, 대추나무, 모과나무, 가래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과수들은 경제적 가치나 신품종, 또는 장려 품종 중에 선별하여 지정한 것들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 중에는 원림(園林) 식물도 포함된다. 원림 식물이란 경관수, 풍치수, 또는 정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회화나무(‘청류벽 회화나무’ 천연기념물 제3호 등), 황목련(‘홍골 황목련’ 천연기념물 제174호 등)과 백목련(‘경성 백목련’ 천연기념물 제429호), 고로쇠나무(‘경성 고로쇠나무’ 천연기념물 제430호), 들메나무(‘동림 들메나무’ 천연기념물 제70호 등), 엄나무(‘평산 엄나무’ 천연기념물 제188호 등) 등과 외래종인 칠엽수(‘원산 칠엽나무’ 천연기념물 제199호)나 백합나무(‘원산 튜립나무’ 천연기념물 제197호) 등도 포함되어 있다. 원림 식물중에는 회화나무가 가장 많은 수로 지정되어 있어 회화나무는 남북한 모두 경관수나 전통 조경수로 각광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외 약용, 또는 식용으로 사용되어 경제적 가치가 큰 두충나무(‘대성산 두충나무’ 천연기념물 제13호)나 산수유(‘북청 산수유나무’ 천연기념물 제445호)나 서식지가 한정되어 있어 생태적 의의가 큰 부채붓꽃군락(‘백암 부채붓꽃군락’ 천연기념물 제300호), 산파군락(‘부전 산파군락’ 천연기념물 제422호), 돌부채군락(‘전천 돌부채군락’ 천연기념물 제121호), 그리고 북한의 대표적인 원시림이자 동·식물의 생태계가 매우 다양한 ‘오가산 원시림’(천연기념물 제467호) 등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한국 동란과 관련된 천연기념물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력 또한 다소 동화적이다. 강원도 이천군 이천읍에 자라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1,300년대에 심겨졌다고 하는데,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8월 미군의 비행기가 북한군 자동차를 공격하기 위해 저공 비행을 하던 중 이 은행나무의 가지에 걸려 추락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북한에서는 이 은행나무를 ‘미제 앞잡이’를 물리친 영웅으로 묘사하여 “영웅은행나무”라고 칭송하고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나무로 천연기념물(‘이천 영웅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241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도 식물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데, 대부분 상록침엽수 군락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금강산의 ‘내금강 전나무림’(천연기념물 제458), 함경북도 화성군에 있는 ‘화성 전나무림’(천연기념물 제326호), 강원도 고산군에 위치한 ‘광명(석왕사) 소나무림’(천연기념물 제207호), 금강산 외금강 구룡연 부근의 ‘창터 소나무림’(천연기념물 제416호), 자강도

증강군에 있는 ‘오수덕 잣나무림’(천연기념물 제114호) 등이 있다.

그 중 석왕사(釋王寺) 소나무림은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소나무 숲으로 소나무들의 형질 또한 매우 우수하다. 석왕사는 고려 말 무학대사(無學大師: 1327~1405)가 토굴에서 수행하던 중 이성계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그 토굴 근처에 태조가 창건한 절이다. 또한 이성계가 석왕사 입구에 배나무와 함께 소나무를 직접 심었다는 기록도 있어 석왕사 주변의 소나무 숲은 태조 이성계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금강산 신계사 주변의 ‘창터 소나무림’도 과거 “창터 솔밭”으로 불릴 정도로 매우 유명한 소나무 단순림이다. 이 소나무 숲이 자라는 곳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곧게 자란 소나무들이 밀집되어 자생하는 지역의 일부로 남쪽으로는 삼척, 양양, 울진, 봉화 지역의 소나무와 같이 그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솔잎혹파리의 피해가 심각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지정 기준에는 우리나라 자생종이 기본 전제가 되지만, 북한은 자생종도 중요하지만 외래종이라도 김일성과 김정일과 관련된 자연물이거나 경제적 가치,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 일례로 해주락우삼, 웅진왕삼나무 등이 그 사례다. 해주락우삼(천연기념물 제125호)은 우리나라에서 낙우송(*Taxodium distichum*)으로 불리는 미국 원산의 낙엽침엽교목으로 북한에서 1930년대 심은 것이다. 이 락우삼(낙우송)은 1976년 해주의 중앙식물원을 찾았던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지정된 것이다. 또한 웅진왕삼나무(천연기념물 제914호)는 웅진군 구곡리에 자라고 있는 북미산 메타세콰이어(*Sequoia gigantea*)인데 1959년에 북한에 들어 왔다. 이 나무도 1986년 김일성이 언급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종을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외래 수종을 조립하여 군락을 이룬 곳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룡포 가는잎 소나무림’(천연기념물 제51호)이나 ‘시중 긴방울 가문비림’(천연기념물 제112호) 등이 그 것이다. ‘룡포 가는잎 소나무림’는 평남 북창군에 북미 원산인 스트로브잣나무를 1930년대에 조립하여 조성한 인공림이며 ‘시중 긴방울 가문비림’는 자강도 시중군에 조성된 독일가문비 숲이다. 이러한 숲은 외래종으로 조성한 인공림이자 경제림으로 그 경제적 가치와 학술적 목적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다.

북한에서 1994년에 발행된 『천연기념물편람』에는 식물천연기념물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토양환경도 같이 서술되어 있다. 식물천연기념물의 경우, 해당 식물의 생육지 주변의 토양들도 조사·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식물은 토양 등 주변 입지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그 식물의 입지환경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백서나 기타 자료에도 응용을 고려해볼 만한 사항들이다.

2) 동물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동물종을 지정하거나, 번식지, 또는 서식지 등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물 천연기념물 중에는 조류가 가장 많고 포유류가 그다음이며 곤충도 2건이 지정되어 있다.

북한에서 중요한 동물 천연기념물로는 백두산의 호랑이를 들 수 있다. 백두산 호랑이는 ‘백두산 조선범’(천연기념물 제357호)이라는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대흥단군과 삼지연군의

해발 2,000m이상 고산지대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다양한 식물군락들과 희귀한 동물들도 함께 서식한다. 조선범은 보통 몸길이 150~180cm로 먹이를 찾아 보통 80~90km를 이동하지만 겨울에는 300~400km까지 이동한다. 이 백두산 호랑이는 세계적으로 그 마리수가 지극히 적어 국제적인 특별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백두산 호랑이 외에도 와갈봉 호랑이(‘와갈봉 조선범’ 천연기념물 제123호), 추애산 호랑이(‘추애산 조선범’ 천연기념물 제205호) 등의 호랑이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족제비과 담비속에 속하는 잘(검은돈)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남한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북한 양강도 삼지연군과 백암군 등지에 서식한다. 잘의 가죽은 고급 모피로 이용되어 수난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제216호)로 지정되어 있고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사향노루는 북한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사향노루는 수컷의 배꼽 가까이에 붙은 사향이라는 고가의 한약재 때문에 밀렵이 성행하여 남한에서는 1960년대 이후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북한에서는 현재 함북 은덕군 녹야리 사향노루(천연기념물 제337호), 함북 무산군의 마양 사향노루(천연기념물 제380호), 함남 신흥군의 천불산 사향노루(천연기념물 제260호), 대동강 최상류지역인 평남 대흥군의 대흥 사향노루(천연기념물 제401호) 등 4곳의 사향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북한의 사향노루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자라는 울창한 산림지대도 사향노루의 서식조건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범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물개(‘우암 물개’ 천연기념물 제339호)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우암 물개는 오래전부터 물개도래지로 알려진 라진-선봉시의 두만강 하구와 우암 앞바다에 초가을부터 봄까지 서식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달은 북한에서도 적극 보호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함북 연사군의 신양수달(천연기념물 제331호), 평남 대흥군의 대흥수달(천연기념물 제55호), 강원도 법동군 임진강 기슭의 법동 수달(천연기념물 제249호)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수달의 털가죽이 특히 좋아 옛날부터 수달피모자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조류천연기념물로는 황새, 멧황새 등과 크낙새 등이 지정되어 있고 두루미, 왜가리, 백로, 따오기, 고니 등의 서식지와 번식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총 49건이 지정되어 있는데 종(種) 자체가 지정된 것은 황새, 따오기, 메닭, 청조 등11종이고 나머지 38건은 서식지와 번식지다.

황새로는 유일하게 임령별 황새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황새가 서식하고 있는 곳은 함남 김책시 립령리에 가까운 설봉산으로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뒤섞여 자라며 바위절벽이 많은 곳이다. 주로 이 숲에서 생활하고 번식하며 임령천 유역과 그 주변에서 물고기, 개구리, 들쥐 등의 먹이를 구한다.

전 세계의 희귀종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크낙새는 북한에서는 클락새로 불린다. 북한에는 개성 크낙새(개성 클락새 천연기념물 제433호)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개성 크낙새의 서식지는 개성 박연리의 고려시대 성인 대흥산성 안으로 클락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크낙새는 한국 특산종으로 북한에서도 생태적 가치와 분포학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여 보호하고 있다. 인근에는 북한의 지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역사적·경

관적 의미가 큰 박연폭포(천연기념물 제388호)도 있다. 황해도 평산에는 크낙새의 서식지가 천연기념물(평산 클락새 살이터 천연기념물 제190호)로 지정되어 있어 크낙새는 북한에서 종과 서식지 모두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북한에서 조류의 번식지나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동물(조류)들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자연 경관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물들의 서식지나 번식지에 대하여 이처럼 경관적으로도 의미를 두는 것은 건강한 생태계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 준다.

북한에서는 중요한 어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산란지(북한에서는 산란지를 ‘알쓸이터’라고 한다)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주요 어류로는 은어, 산천어, 열목어 등이다. 또한 주요 어종의 산란지도 보호하고 있는데, 어름치나 쉬리의 산란지(‘구락리 어름치, 쉼리 알쓸이터’ 천연기념물 제187호), 정장어 산란지(장진 정장어 알쓸이터 천연기념물 제264호), 송어 산란지(마양 송어 알쓸이터 천연기념물 제370호) 등을 들 수 있는데, 산란지는 그 어류들의 분포상태와 생태 연구에 매우 중요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또한 함북의 명천군 보촌의 복조개와 조선파리조개, 그리고 평북 철산군의 검은 죽합과 록조개의 서식지 등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어류의 산란지나 조개류의 서식지를 동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사례가 없다. 이처럼 북한에서 조개류의 서식지나 어류들의 산란지 등을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해당 동물들의 생태적 지위와 그 중요성을 깨닫고 시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패류 산란지나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눈여겨 보아야 할 사례다.

동물종 지정에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가축으로 기르던 동물들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치면 진돗개와 오골계, 조랑말 등과 같은 사례다.

홍주닭은 김일성이 직접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닭으로 1979년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제102호)로 지정되었다. 미국의 뉴햄프셔 종을 개량한 것으로 자강도 강계시 장자강 근처의 닭공장에서 기르는 품종이며 수탉의 꼬리 색깔은 진녹색이 도는 검은 색이다. 일명 붉은 닭이라고도 불리는 홍주닭은 추위에 강하며 한 겨울에도 알을 계속 낳는다고 한다. 김정일은 최근에(2006년) 자강도 강계시에 있는 홍주닭 공장을 시찰하기도 했다.

또한 오리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던 1953년에 김일성은 함남 정평군 선덕리의 광포 호수를 찾아 오리의 축사를 짓고 오리 사육을 적극 후원했다고 한다. 그 이후 이 오리를 ‘광포종’오리라 부르고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제267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견으로는 남한의 진돗개와 북한의 풍산개를 들 수 있다. 북한의 풍산개(천연기념물 제368호)는 양강도 김형권군 광덕리와 함남 풍산군이 그 원산지인데, 오래 전부터 이곳은 풍산개를 사냥개로 이용했다고 한다. 풍산개는 용맹하고 영리하며 한국 특산종으로 일제가 194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1969년부터 광덕리에서는 풍산개를 모아서 길렀으며 최근에는 풍산개 목장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사육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가축천연기념물은 이외에도 세포 조선소, 자연 조선소, 산파 닭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 육성되고 있다.

3) 지리·지질천연기념물

북한에는 지리 천연기념물과 지질 천연기념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다.

지리천연기념물로는 주로 특이한 바위나 바닷가 기암절벽과 절경, 폭포와 호수, 동굴 등이 고, 지질천연기념물로는 화석, 공룡발자국, 특이한 암석이나 광물, 단층과 습곡, 온천과 약수 등이다.

지리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기묘한 바위들은 대부분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주변에 위치해 있다. 김일성이 그 빼어난 경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금강산의 삼선암(천연기념물 제220호)과 귀면암(천연기념물 제224호) 등이 대표적인 곳이며, 천선대(천연기념물 제216호), 금강산담알바위(천연기념물 제217호), 명경대(천연기념물 제231호) 등도 전부 금강산에 있는 것들이다.

바닷가의 기암괴석이나 섬의 절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대부분 금강산이 인접해 있는 강원도지역이나 함경도지역으로 대부분 동해안이다. 예전부터 절경으로 손꼽히던 명사십리(천연기념물 제193호), 총석정(천연기념물 제214호), 해금강문(천연기념물 제229호), 몽금포사구(천연기념물 제142호), 흥남구경대(천연기념물 제254호) 등이다. 대부분 여름 휴양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명사십리는 우거진 송림과 해당화가 어우러진 해수욕장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북한 사람들의 여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폭포로는 금강산에 있는 구룡폭포(천연기념물 제225호), 조양폭포(천연기념물 제221호), 비봉폭포(천연기념물 제222호) 등과 높이 86m나 되는 묘향산의 천신폭포(천연기념물 제90호), 개성의 박연폭포(천연기념물 제388호) 등이 대표적이다. 박연폭포는 금강산 구룡폭포와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한국의 3대 폭포로 손꼽히며 송도(松都) 삼절(三絶) 중의 하나로 그 역사적·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천연기념물이다. 폭포 주변의 못(潭沼)인 금강산 구룡폭포 주변의 상팔담(천연기념물 제219호)이나 옥류동(천연기념물 제418호), 내금강만폭동(천연기념물 제455호) 등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호수로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백두산 천지(천연기념물 제351호)다. 백두산 천지 해수면의 높이는 2,257m로 백두산과는 약 500여미터의 고도 차이가 난다. 북한에서는 백두산을 조종(祖宗)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 부른다. 천지에는 산천어와 붕어 등의 치어를 인공적으로 풀어 넣어 현재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에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시에서 개막되었던 제6회 동계아시안게임 성화 채화식도 백두산 천지에서 거행되었다. 중국인들도 백두산과 천지를 매우 신성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삼지연(천연기념물 제347호), 삼일포(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연호(천연기념물 제328호) 등의 호수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은 휴양지, 요양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석회암동굴이나 해안침식동굴 등의 동굴과 해안단구, 백악기의 물결의 흔적을 보여주는 장소(검산리 련흔, 천연기념물 제61호)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질천연기념물로는 화석이 가장 대표적이다. 모란봉 나무화석(천연기념물 제465호) 향교골 규화목(천연기념물 제306호) 등과 같은 식물화석류, 강령 골뱅이화석(천연기념물 제131호), 화성 제3기 조개 화석층(천연기념물 제323호), 일신 털꼬끼리화석자리(천연기념물 제308호) 등과 같은 동물 화석류, 그리고 공룡발자국 화석(천연기념물 제466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모양이 빼어나고 희귀한 수정결정체가 많은 암석지대나 특수한 성분을 띤 암석들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에는 온천과 약수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100여개의 온천이 개발되어 있고 주변은 요양소로 이용되고 있다. 온천의 대부분은 일반인들의 건강과 질병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며 황해도 배천군 배천읍에 있는 배천 온천(천연기념물 제159호)과 옹진군 옹진읍의 옹진 온천(천연기념물 제136호)은 난방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온천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북한의 실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금강산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인 금강산 온천(천연기념물 제226호)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다. 이 금강산 온천은 40~44℃로 온천욕에 적당하며 라돈과 메타 규산 등 광물질이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 피부병,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노천탕에서는 온천과 동시에 주변 금강산의 절경도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약수는 삼방약수, 창성약수, 신덕수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평남 온천군의 신덕수는 물 맛이 좋기로 소문나 김정일도 이 샘물을 마신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온천과 약수가 30여 곳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북한에서의 그 가치와 의미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천연기념물은 우리나라와 그 구분과 유형이 비슷하며, 북한도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지금의 자료들이 한반도의 천연기념물과 기타 자연유산들을 보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 기타 북한의 자연유산

북한의 자연유산에 관한 자료는 흔치 않다. 다행히 최근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어 개략적인 현황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로는 천연기념물에 관한 것 외에도 희귀동·식물이나 생물다양성에 대한 자료들도 나와 있다.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평양에서 발행된 『조선천연기념물도감 1』과 『조선천연기념물도감 2』에는 북한의 천연기념물 뿐 아니라 남한의 일부 천연기념물까지도 수록되어 있다. 그들의 편집의도를 알 수 없지만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도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붉은자료집(식물편)』,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우리나라 위기 및 희귀동물(Red Data Book¹⁾ of DPRK』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귀중한 자연유산들을 조사하여 책으로 출간하였다. 매우 고무적인 일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생물종, 천연기념물, 희귀 동·식물 등 자연유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국내의 사정을 감안할 때 북한에서 출간한 이러한 자료집들은 한반도의 전체적인 생태계 및 동·식물 현황, 자연유산의 보존 대책 수립 등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2000년에 『우리나라 위기 및 희귀동물(Red Data Book of DPRK)』을 발간하였으며, 2004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붉은자료집(식물편)』을 발간하였다. 특히 이 자

1) Red Data Book:: 1966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실태와 현황을 등급에 따라 목록을 작성한 자료집으로 특히 위협에 처한 종들은 붉은 색 표기를 한데서 그 명칭이 유래됨. 일명 적색 자료목록, 적색 자료집, 붉은 자료집 등으로 불리고 있다.

료들은 유네스코(UNESCO)의 ‘인간과 생물권계획(MAB=Man and Biosphere Programm e)2)의 후원에 힘입어 조사 및 출간을 했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결과물이다. 외부와 단절된 북한의 과학자들도 이처럼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의 자연환경 현황을 보고하고 과학 기술 정보 교환에 동참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북한에서 발행한 각종 자연유산 관련 책자들〉

이들 자료집에는 한반도의 지리적·역사적 특성을 기초로 생물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동물상이 풍부하고 다양한 것은 조선 반도의 고지리적 과정의 력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난 지질시대에 조선반도는 대륙과 격리된 일이 없었다. 지구의 한랭화와 온난화가 교체되던 빙하기와 간빙기에 조선반도는 우리나라 고유종 동식물과 함께 북방형 동식물과 남방형 동식물들의 북상과 남하의 중요한 통로로, 서식지로 되었으며 동식물의 중요한 진화마당으로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동물상은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김계진 등, 2002, 6쪽).”

“우리나라에서 《붉은 자료집》의 출판 사업은 국토의 분단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매개 종들의 위험수준 평가 사업이 한 지맥으로 연결된 조선반도 전체에서 관찰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응칠 등, 2004, 2쪽).”

북한 과학자들도 우리의 역사적·정치적 분단의 현실이 자연환경의 생태적·생물적 단절까지도 초래하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듯하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위기 및 희귀동물은 큰침서를 포함한 포유류 36종, 황새를 포함한 조류 100종, 구렁이를 포함한 파충류 10종, 금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 4종, 철갑상어를 포함한 어류 33종 등 총 183종이 위기 및 희귀동물로 지정되었다.

2)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 1968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생물권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의 과학적 기초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생물권(Biosphere)'이란 용어가 국제사회에 처음 소개되었다. MAB 사업은 생물권 파괴 방지를 위해 인간이 동·식물, 대기, 해안의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전체 생물권에 미치는 영양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희귀 및 위기식물로는 북한에 생육하는 유관속 식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특산 위기 및 희귀식물’과 ‘일반 위기 및 희귀식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중요도에 따라 보호 1급, 2급, 3급, 4급 등으로 세분하여 설명하였다. 특산 위기 및 희귀식물은 총 55종이며 일반 위기 및 희귀식물은 98종으로 총 153종의 식물이 위기 및 희귀식물로 등록되어 있다. 각 동물이나 식물종별로 현 상태에 관해서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분류 기준³⁾을 병기하였다.

북한에는 이처럼 생물종 자체의 현황과 보존을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의 보호를 위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연보호지역의 지정은 <환경보호법>, <자연보호구법> 등에 따라 내각에서 결정한다. 또한 북한에는 자연자원의 보호와 이용, 생태환경보호 등을 위해 현재 총 234개의 보호구를 지정해 놓고 있다. 보호구에 대한 개념, 설정 기준, 관리방법, 평가 등은 국제적 기준을 참고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맞게 관리하려고 애쓰고 있다.

북한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생물권보전지역), 자연보호구, 자연공원(국립공원), 식물보호구, 동물보호구, 철새보호구, 자원보호구 등 보호구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보호구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⁴⁾으로는 백두산생물권보전지역(백두산생물권보호구)과 구월산 생물권보전지역(구월산생물권보호구)이 있다. 백두산생물권보전지역(백두산생물권보호구)은 1959년 3월 북한이 자연보호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오다가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1989년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되었다. 북한은 백두산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의 다양성 보전과 자연자원의 이용적 가치 뿐 아니라 북한의 혁명적 의미와 가치가 커 1989년에는 혁명전적지특별보호구로 지정하였다. 백두산의 북사면에 위치한 중국 쪽의 장백산생물권보전지역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그 경관과 생태가 매우 대조적이다.

구월산 생물권보전지역(구월산생물권보호구)은 1975년부터 북한이 자연보호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오다가 2005년 10월 제18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1995년에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이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East Asian Biosphere Reserve Network)’를 설립하여 각국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관리 경험 공유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연구과학적 목적과 유전자 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설정한 자연보호구로는 자강도와 양강도 사이에 위치한 오가산자연보호구, 함경북도 관모봉자연보호구가 있다. 이곳은 자연자원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큰 보호구다. 특히 오가산자연보호구는 동식물상의 종구성이 다양하고 아한대와 온대성 식물분포구의 경계 지역으로 원시림과 같은 임상이 잘 보전되어 있어 북

3)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 평가기준: 적색목록의 범주는 멸종(EX), 야생멸종(EW), 위협/위기(Threatened: CR, EN, VU), 저위협(NT) 등으로 구분되며, 위협/위기 범주는 다시 3가지로 세분되는데, CR(Critically Endangered: 취약종), EN(Endangered: 위약종), VU(Vulnerable: 준멸종위기종) 등이다. 이는 멸종위기종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4)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사업을 실현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뛰어난 생태계를 유네스코가 지정한 곳으로 한반도에는 설악산(1982), 백두산(1989), 제주도(2002), 구월산(2004) 등 4곳이 지정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생물권보호구’라고 호칭한다.

한의 연구실습기지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 밖에 북한에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national park)에 해당하는 자연공원이 있다. 소규모의 자연공원부터 그 면적이 48000정보에 달하는 지역까지 총 81개소의 자연공원이 지정되어 있다. 자연보호구가 그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와 과학적 연구 등이 주된 지정 목적이었다면, 자연공원은 자연자원보호 외에도 자연경관 보존과 휴양의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자연공원으로는 금강산자연공원과 묘향산자연공원, 칠보산자연공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 대상에 따라 특별한 식물이나 동물(포유류)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지정된 보호구(서식지), 철새보호구(도래지) 등이 있다.

기타 여러 보호구 중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보호구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바로 자원보호구가 그것이다. 북한에는 현재 식물자원보호구 4곳과 수산자원보호구 26곳이 지정되어 있다. 식물자원보호구의 대표적인 곳은 평안남도 양덕의 '양덕 송이버섯 자원보호구역'이다. 북한은 2003년 4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송이버섯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식물자원보호구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또한 다양한 수산 자원(굴, 조개, 해삼, 전복, 산천어, 은어, 자라, 어름치 등)을 보호하고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산자원보호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철저한 보호사업과 인공 양식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생물다양성이나 환경보호교육 등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1992년 환경보호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강령에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1994년에는 과학원에 생물다양성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생물학 부문 박사원과정에서 생물다양성보호 전문가 양성지표를 포함시키도록 하였다고 한다.

우리도 가능한 한 북한의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천연기념물의 지정과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반도 자연유산 보존 대책에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III. 우리의 과제

자연환경이란 인간이 나눈 영토적 경계와 상관없이 연속성을 지닌다. 동식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를 남북한이 서로 공유한다는 것은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한반도 전체의 자연환경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아가 통일된 한반도의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고 지속적인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져 버린 정겨운 동식물, 문화가 깃든 자연유산들이 북한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파악과 교류도 요긴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정치적·경제적 교류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 되기 전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 그리고 통일된 이후 한반도를 더욱 큰 하나로 묶어 주는 바탕은 무엇보다 이 땅의 자연환경일 것이다. 자연환경과 유산에 대한 남북한의 학술적 교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북한은 우리와 문화와 자연의 뿌리를 같이하는 곳이지만, 오랫동안 이념과 사상의 갈등으로 여러 부분이 단절되어 왔다.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단절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생태계의 단절은 더욱 심각하다.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이 땅에 생존하는 생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장벽이다. 이는 북한의 학자들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경제 교류

나 문화 교류 못지 않게 북한의 자연 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이나 연구 등 학술 교류도 필요하다. 한반도의 지리학적 특성을 생각할 때 북한의 자연환경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자연유산을 말하기 어렵다. 차후 한반도 전체를 통합하는 자연 관리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연 환경에 관해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가 필요하다. 이것이 단지 일부 관련 학자들만의 몫은 아니다. 국민 모두가 북한의 정치와 사회뿐 아니라 자연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 중국은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장백산)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시키려고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백두산을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물밀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수 년 전부터는 '장백산(백두산) 보호 개발 관리 위원회'를 세워 백두산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남북이 협력하여 백두산을 관리하고 관심을 기울였다면 지금 중국이 쉽사리 백두산을 단독으로 등재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자연유산은 말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북한의 자연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김계진, 김광남, 김덕산 외. 2002. 『우리나라 위기 및 희귀 동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2. 김리태, 주종실, 신강 외. 2007. 『조선 천연기념물 도감-동물편』.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3. 라응칠, 박형선, 주일엽 외.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붉은 자료집(식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4. 리성대, 리금철. 1994. 『천연기념물 편람』. 평양. 농업문화사.
5. 리용재, 김성찬, 석순미 외. 2005. 『조선 천연기념물 도감 1-식물편』.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6. 리용재, 김영호, 김성찬, 석순미 외. 2006. 『조선 천연기념물 도감 2-식물편』. 평양, 조선문화보존사.
7. 박우일, 림추연, 로정삼, 김광주 외. 2005.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8. 박우일, 왕승서, 박형선 외. 2003. 『금강산의 생물다양성』.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브민족위원회.
9. 이선. 2009. 『한국의 자연유산』. 수류산방.
10. 장면봉 편. 2018. 『최신 북한법령집』. 북한법연구회.

〈첨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2011)

주체84(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7(2008)년 10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9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기본

제1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종류)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이다.
명승지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천연기념물에는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자연물이 속한다.

제3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을 통한 교양사업강화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보존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교육교양사업, 과학연구사업 같은데 전적으로 리용되고 있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참관사업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산다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나라를 귀중히 여기며 더 잘 꾸리고 빛내여 나가겠다는 열렬한 애국심을 키워주도록 한다.

제4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원칙) 〈2008. 10. 28. 신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간다.

제5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더 많이 찾아내어 그 가치를 평가하고 보호대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에서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6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7조(대중적인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 <2008. 10. 28. 신설>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8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제9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도 할수 있다.

제10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방법) <008. 10. 28. 신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은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승지의 지형도와 천연기념물의 위치도를 만들고 천연기념물을 사진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제11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내용) <2008. 10. 28. 신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위치
2.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역사적유래
3.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크기와 특성, 리용 또는 보존가치의 전망
4.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있는 지대의 자연지리적상태
5. 명승지안의 생태계에 대한 자료

제12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 또는 해당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발견을 통보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하여야 한다.

제13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위원회조직) <2008. 10. 28. 신설>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심의 평가를 위하여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제1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신청)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에는 등록하려는 대상의 이름, 소재지, 역사적유래, 특성, 보존가치, 현상태, 리용과 보존전망, 자연주위환경, 등록근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형도, 위치도, 사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심의평가방법)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을 받은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 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대상의 역사적유래, 특성, 보존가치 같은것에 대하여 정확히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심의에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

내각의 승인을 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번호,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름, 등록날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 <2008. 10. 28. 신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풍치가 전형적이고 희귀하고 독특하며 시공간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지형 또는 지물
2. 정착 또는 희유동물가운데서 학술적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종이거나 의의있는 동물
3. 학술적 및 풍차상 고유한 특성을 가진 식물
4. 지리, 지질학적 형성조건과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있는 호수, 온천, 화석, 광석, 로두

제18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삭제사유) <2008. 10. 28. 신설>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다음의 경우 삭제할수 있다.

1. 지진, 벼락, 화재, 오염 같은 원인으로 명승지, 천연기념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졌을 경우
2. 동식물이 불품이 없거나 사멸되었을 경우

제19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삭제절차)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삭제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삭제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명승지, 천연기념물심의 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청 문건을 정확히 검토하며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2008, 10, 28. 신설>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

제20조(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확립)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를 잘하는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손상을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본 방도이다.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그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특수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제22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분담을 바로 조직하고 그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책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찰) <2008. 10. 28. 신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담당관리원을 두고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상태에 대한 관찰정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표식)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 사항판, 안내도 같은것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의 시설관리)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것을 꾸리고 깨끗이 거두며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소개선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공사)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연제공사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존)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며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2008. 10. 28. 신설>

제29조(산림자원의 보호) <2008. 10. 28. 신설>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 같은것을 더 많이 심으며 산림병해충예찰체제와 산불감시체제를 세워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동식물자원의 보호) <2008. 10. 28, 신설>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잘 보장해주며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1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의 건설) <2008. 10. 28. 신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는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탄광, 광산을 개발할수 없다.

제32조(지반침하와 방지) <2008. 10. 28. 신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수 없다.

제33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환경보호질서 준수) <2008. 10. 28. 신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룬전기재를 운행하는 행위
2. 시설물의 건설, 운영과정에 정화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소음, 진동, 먼지를 일으키는 행위
3. 식당, 국수집 같은 것을 꾸러놓아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5. 총기류, 폭발물 같은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6.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 것을 불태우는 행위
7. 휴지, 담배꽂초, 오물 같은것을 망탕 버리는 행위
8. 승인없이 해당 수역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
9. 료전기재를 청소하거나 오물을 버려 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34조(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상현상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파손되었거나 기타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5조(천연기념물의 위치이동, 복원)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려 할 경우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 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천연기념물의 매매, 대외반출금지)

등록된 천연기념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 같은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명승지, 천연기념물자료의 영구보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상태자료, 력사유래자료, 관찰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8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강화원칙)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9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지도기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0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조건보장)

국가계획 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41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사업)

내각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명승지, 천연 기념물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3조(행정적 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 또는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탄광, 광산을 개발할 경우
3.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승인없이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를 망탕 하여 지반이 침하될 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6.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제33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승인없이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등록된 천연기념물을 팔고샀거나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제44조(형사적 책임)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국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토론문

1.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전봉희 | 서울대학교

2. 「북한 민족고전학의 성립과 전개」에 대한 토론문

김광운 | 경남대학교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전봉희 (서울대학교)

강현 박사의 발제문인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 현황과 과제'는 제목 그대로 북한의 건축문화재의 보존 현황과 관리 제도를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남북 교류를 염두에 둔 향후 과제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되었고,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건축문화재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으며, 정밀한 보존보다는 적극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전반적인 특성과 함께, 고급의 전통 건축 양식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주체 체제의 성립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으며, 2000년대 이후로는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정책에 추가되었다는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발제문에 있는 내용 가운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건축문화유산이 우리에게 비하여 적은 양이 남아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조선시대에 현재의 북한 지역이 문화적 중심지가 아니었던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더하여 해방 이후 사회주의 정권의 수립에 따라 봉건 지배층의 향유물이었던 궁궐이나 사찰, 서원 등의 고급 건축물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있었고, 종교적 활동에 제약이 있었으며, 제도적으로는 토지개혁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몰수 등을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한편 인민대중의 살림집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우리보다 일찍 시작하여서, 이미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1970년대 후반 이후 그 내용의 일부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학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역시 건축문화재로 남아있는 수가 지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추가적인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두 번째로, 건축기술과 관련된 비물질문화재로 '단청기술', '조선식 지붕양식', '조선식 탑건축술', '구들생활풍습' 등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분 등록은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 개별 장인의 기술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과 차이를 가집니다. 즉, 조선식 지붕양식만 하더라도 상부 지붕틀을 짜는 대목장의 일과 기와를 만들고 있는 제와장 및 번와장의 일을 포괄할 뿐 아니라, 나아가 현어 등의 장식 철물에 이르면 두석장의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식 탑건축술의 경우도, 목탑과 석탑, 전탑에 따라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이 적용될 것인데, 북한에서 이렇게 뭉뚱그려 등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그 등록 이름도, '지붕양식', '구들생활풍습'이라 하여, 굳이 '기술' 혹은 '건축술'의 이름을 피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분류명 역시 최근에 지정된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 '제염' 등과 '온돌문화'의 경우 보유자를 지정하지 않는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참고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발표자가 생각하시는 바를 추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관련 법제의 정비와 정책 방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1994년의 <문화유물보호법>, 2012년의 <문화유산보호법>, 그리고 2015년의 <민족유산보호법>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보호의 대상은 ‘역사유적과 역사유물’에서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 그리고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점차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적용에 대한 태도가 점차 신중하게 바뀌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산의 활용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작업과 관련되어 국제적인 기준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하였다면, 활용에 대한 최근의 정세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활용의 적극적인 사례인 ‘민속공원’의 하나로 2011-2013년에 수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조성하였다고 하는 평양민속공원이 갑작스럽게 철거된 것은 어떠한 이유여서인지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매체 보도를 따르면, 2017년에 평성시에 새롭게 민속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발제의 주제와 관련하여 제가 평소에 가졌던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발제자의 코멘트를 아울러 구합니다.

건축유산의 경우, 부동산 유산이기 때문에 가지는 숙명, 즉 그것이 위치한 주변의 상황에 따라 도시개발의 압력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보존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기도 하는 등 도시 및 국토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기념비로서의 건축의 속성에 기반 하여, 건축유산이 보여주는 전통적인 건축 형태는 종종 민족양식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기념비의 참조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족 유산’의 보존관리에서 건축유산은 ‘리용’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리용’은 두 가지의 측면, 즉 ‘정권의 기념비’이면서 ‘인민을 위한 교육과 위락장’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프로파간다를 증시하는 사회주의 정권이라는 점, 1956년 ‘종파투쟁’ 이후 김일성 개인숭배를 강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민족적 양식을 증시하고 이후 주체건축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사회보다 더 강하게 전통 양식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유명한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이라는 주체건축의 테제가 등장합니다.¹⁾ 실제로 평양의 중심부를 구성하는 건축물들의 경우, 평양역사(1958), 인민문화궁전(1974), 인민대학습당(1982) 등과 같이 조선식 지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²⁾

하지만 민족적 형식을 채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단순한 기와지붕의 직설적인 모방에 그치지 않는 데에는 1974년 후계자의 지위를 확정 받은 김정일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 아래서 후계자 신분에 있었던 김정일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직접 통치의 영역이 아닌 보좌의 영역에 머물렀고, 그 상황에서 건축사업을 주도하고 『건축예술론(1992)』이 저술됩니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건축은 사회역사의 창조물이고, 예술적, 실용적, 경제적 측면 모두가 과학기술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체건축은 형식이 민족적이어도 가능하지만 건설 과정이 주체적이어도 가능합니다. 즉, ‘유사성의 금물’, ‘비반복적 형상’ 등의 말로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지금 외국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 경우 ‘우리식’

1) 이윤하,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기 북한건축의 특성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년12월. 참조

2) 박동민, “기능에서 상징으로 : 평양역사건설, 1907-1958”, 『대한건축학회논문집』2019년 4월호. 참조

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와 전통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고, 인민대학습당에서 보는 것과 같은 새로운 조합의 기와지붕 형식이나 유경호텔에서 보는 것과 같은 전례가 없는 건축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평양의 도시건축에서 볼 수 있는 ‘초현대적’이거나,³⁾ ‘매우 민족적인’ 건축 형태의 이중성은 모두 그들이 말하는 ‘우리식’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인민을 위한 교육과 위락의 장소로서의 민족유산의 활용은 ‘민속공원’의 건설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이 역시 김정일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⁴⁾ 첫 번째 사업이 1975년 김일성의 교시로 시작하여 1889년에 완공을 본 ‘개성민속려관’이고, 이어서 2005년에는 ‘사리원 민속거리’를 조성하였고, 2006년에는 평양에 ‘통일거리 강안 민속공원’ 계획안이 발표되었으나 실행되지 않은 대신, 2008년에는 새로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2009년에 ‘평양민속공원’의 설계가 이루어져, 김정일 사후인 2013년 개관하였는데 2016년 폐쇄되었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들 4곳의 민속공원의 개발 사례에서 공통되는 점은, 외국인 및 인민들의 이용을 위한 식당, 박물관, 판매점, 숙박시설 등의 기능 공간을 함께 조성하였다는 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유산을 함께 재현하였다는 점, 그리고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한 ‘조선식 지붕양식’을 자유롭게 채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때 사용하는 ‘조선식 지붕’은 앞서 언급한 현대의 기념비에서 사용한 창조적 재현이 아니라 전통 건축에서 보이는 지붕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사한 형태를 가진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들이 우리처럼 ‘민속촌’이나 ‘재현단지’가 아닌 ‘민속공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점도 기억할만합니다. 즉, 이들 민속공원은 모두 소재하는 도시의 공원들로 이루어진 중심 녹지체계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주의 도시건설의 중요한 원칙인 ‘공원속의 도시’라는 마스터 플랜 안에 이들 민속공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상은 북한에서 민족건축유산의 활용과 관련한 두 가지 방향을 살펴본 것입니다. 토론자는 1990년대와 2000년대초에 북한의 건축사 서술과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⁵⁾ 당시의 연구 경험에서 얻은 인상은, 오늘 강현 박사님이 발표에서 지적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근대 사회의 기념비적 건축물은 도성에 집중하기 마련이고, 신라 통일 이후 지방 건축이 발달하였다고는 하나 대개는 사찰에 한정되고, 읍치의 변동도 있었습니다. 자연히 지방의 건축유산은 대개 조선시대의 것에 한정되고, 때문에 지금 북한 지역의 건축 유산은 고구려와 고려의 도성터를 제외하곤 지방 건축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보자면 그나마 서울과 의주를 잇는 경의선 연변의 지방은 조선시대 최고의 대외교역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하여, 함경도 지방은 조선시대 내내 저개발지라고 할

3) 이들 ‘초현대적인 형태’는,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이후 소련에서 유행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근거한 고전주의 양식에서 시작하여, 소비에트 혁명 초기 소련에서 일어난 구성주의 건축양식,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유행한 포스트모던 건축양식과의 유사성을 갖기도 있다.

4) 허유진, 전봉희, “김정일 시대 민족건축유산 활용계획과 실행”,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18년 11월.

5) 전봉희, “북한의 건축사 서술에 관한 연구”, 『무에 이광노 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1993년 6월.

_____, “북한 지역 건축유적의 지역적 전통과 시기적 변천 시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5년 8월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건축 유산의 질과 양에 있어서 북한의 것이 우리의 것에 비하기 어렵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민속공원’의 구성에 남한의 건축유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좁은 범위의 건축 유산 외에 우물이나 다리, 성벽 등의 구조물에 대해 강조하며, 고대 유적의 적극적 재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건축의 건설에 있어서는, 북한의 경우가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통 건축의 양식을 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철근콘크리트로 전통 건축 양식을 재현한 사례가 없지 않으나, 그 대부분은 형태의 직설적인 재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옛 광화문의 경우 실측치를 그대로 재현한 사례라면, 국립민속박물관과 현충사와 같은 경우는 다른 기존 건물의 치수를 가져다 쓴 것이고, 경주박물관이나 독립기념관, 윤봉길 기념관 같은 경우 형태의 변형을 모색하였습니다만, 단일 지붕의 비례를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 다채로움을 잃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축문화유산의 밀도와 힘에 버거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차이는 단지 ‘전통건축’과 ‘민족건축’이라는 용어의 차이를 넘어 태도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논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건축유산과 관련하여 꼭 강조해두고 싶은 것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그에 연관된 수많은 인문적 유산, 그리고 지형과 지질, 생태 등의 자연유산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산의 보존의 물론 근대 이후 관광지로 개발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산과 개발을 대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장안사 사성전의 수리공사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수리공사 체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획기가 되는 사업이었고,⁶⁾ 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계획안은 조선시대의 금강산 유람이나, 해방 이후 북한에 의한 금강산 개발 계획과는 또 다른 시기별 개발의 성격과 범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관광지 개발과 동반한 종합 유산 관리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⁷⁾ 나아가 금강산은 전적지로서의 의미를 더하게 되어, ‘모든 인민이 가볼 수 있는’ 체제의 선전장이자 극장으로 발전함으로써, 우리와 대비되는 북한의 유산관리 상황을 잘 엿볼 수 있는 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강현 박사님이 발제하신,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과 이에 더하여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생각거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은 미술, 고고 그리고 자연유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현대적 실천과의 관련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또 금강산의 사례 같은 것을 대상으로 장소를 매개로 하여 자연과 문화의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과 보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상관적으로 다루고, 보존과학 기술과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6) 서효원, “장안사 대웅전 보존수리공사와 1930년대 금강산 개발”, 『건축역사연구』2020년 6월호.

7) 성나연, 서효원, 전봉희, “1930년대 금강산 국립공원 계획에 의한 금강산 영역의 재편과 변천”,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19년 11월

「북한 민족고전학의 성립과 전개」에 대한 토론문

김광운 (경남대학교)

△ 발표자는 북한 학자들이 『력사과학』에 발표한 회고, 성과 등에 근거하여 학문분야로서 민족 고전학의 성립과정을 설명. 하지만 북한의 공식 설명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설명 하지 않거나, 못함.

△ 북한에서 ‘민족고전’이란 용어는 해방 직후부터 폭넓게 사용. 1950년 5월 18일에 위원장 정노식 부위원장 홍기문 등 34명으로 ‘민족고전예술연구위원회’ 조직 활동. 1951년 12월 김일성 수상은 문화예술인 앞에서의 연설에서 창작사업에서 “민족고전과 인민가요” 이용을 제기.

△ ‘민족고전’ 연구의 본격화 계기는 ‘역사민속학’이 그랬듯이 1950년대 중반 주체적 민족문화 발전 논의와 깊이 관련.(문화전파설에서 독자적 민족문화 창조설로 이동)

- 「민족고전의 편찬 및 출판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백남운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는 조국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선조 대대로 전해 내려 온 고귀한 민족고전의 과학적 탐구와 그의 계승 발전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공화국 과학 문화 일군들에게 중요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 제3차 당 대회는 우리의 **민족고전 계승사업**을 “장래의 찬란하고 건전한 과학 문화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의 일부로 규정. …… 우리나라 과학 문화 발전의 토대는 자기 민족의 확고한 주체성으로부터 출발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는 세계 그 어느 민족에 비하여 손색이 없든가 또는 그보다 더 우수하고 더 풍부한 민족고전을 소유하고 있다. …… 금년 3월에는 우리 민족고전 출판사업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과학원 내에 고전편찬위원회를 조직** …… 가장 긴급하게 제기되는 사업은 첫째, 중요 고전원본들의 광범한 수집사업과 병행하여 중요 고전원본들의 긴급한 복각 재간사업 둘째, 중요 고전의 번역출판사업 셋째, 우리 고전에서 내용의 분류 정리에 의한 자료처리 사업 …… 우리 민족고전을 계승하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담당 일군들이 맑스레닌주의에 튼튼히 립각하는 문제와 아울러 사업에 주체성을 확립하는 문제 ……(『로동신문』 1956. 8. 29.)

- 서적 해제 『고려사』(복각본) 발간

우리나라 과학 문화의 유산을 옳게 계승할 데 대한 우리 당 제3차 대회의 지시에 따라 금번 과학원 고전연구출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귀중한 고전 사료들을 연구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시켜 왔는바 우선 그 일보로서 금번 활판본 『고려사』의 복각을 시도하여 제1분책을 간행하였다. …… (『로동신문』 1958. 5. 8.)

- 『천일록』: 우리나라의 수다한 민족고전들 중에는 아직 그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 발견된 문헌들이 적지 않다. 여기 소개하려는 『천일록』도 그 실례의 하나로 될 것이다. 『천일록』은 11책으로 된 비교적 방대한 량을 가진 저서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동무들에 의하여 개성 지방에서 발견되었다. …… 홍희유 『로동신문』 1962. 2. 24.

-다산 정약용 탄생 200주년 기념보고회에서 과학원 사회과학부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석형 교수가 보고. ……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김일성 동지는 자기의 민족문화유산을 연구 계승하지 않고 남의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기력량에 대한 자신심을 못 가진 사람들로 되고 말 것이라고 가르치시었다. …… 력사학계에서는 유구한 우리나라 력사를 더욱 심오히 연구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족고전을 정리 출판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로동신문』 1962. 8. 5.)

- 「애국심과 력사학습」 1960년 초부터 청진시인민위원회 문화처 지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찬동무는 력사 유물 유적 관계를 맡은 자기 본신 임무의 요구로부터 그러했지만 우리나라 력사학습을 남달리 깊이 했다. 그는 도서관, 박물관은 물론 각 서점의 고서적 매대며 민간에 까지 찾아가 귀중한 책들을 구해 연구하였다. 그가 얼마나 학습에 이악하게 달라붙었는가 하는 것은 『고조선 연구』 『경성읍지』, 『함북 소사』 등 비교적 연기 어려운 옛날 력사책들을 40여 권이나 찾아냈으며 그것을 다 읽고 연구했다는 사실로써도 짐작할 수 있다. ……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나온 『북관지』를 공부할 때였다. 김찬동무는 이 책의 한 부분에서 부령읍성에 대한 약간의 자료와 함께 성내에 군기고(무기고)가 있었다는 귀중한 자료를 알게 되었는데 그 책에는 언제 군기고가 생겼으며 그후 어떻게 되었다는 상세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부령읍성에 대하여 조금씩 밝혀있는 『리조실록』, 『경성읍지』, 『조선환여승람』, 『함북소사』, 『부령읍지』 등 수십 권의 책을 뒤지며 연구를 깊이 했다. …… (『민주조선』 1966. 3. 18.)

△ 민족고전연구분야의 독립

-김기남 「현 시기 사회과학자들의 임무」: 우리의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고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며 리론과 실천을 더욱 밀접히 결합시킬 데 대한 당의 옳바른 과학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높은 과학적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 력사학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조선력사를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체계화한 『조선전사』를 편찬할 목표 밑에 각 부문에 대한 연구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 **민족고전연구분야에서는 문헌학적 연구를 선행시키며 아직 각처에 산재해있는 고전문헌들을 정확하게 조사 장악하고 그 수집사업을 균중적으로 진행하며 민족고전들의 번역 복각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시킴으로써 사료의 토대구축을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 와야 한다.** …… (『로동신문』 1962. 11. 24.)

- 과학기술 소식: 선조들이 남긴 민족고전 번역사업을 추진: 과학원 고전연구소 연구집단은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선조들이 남긴 민족고전 연구사업을 활발히 추진시키고 있다. …… 그 중 1천 500여 종의 민족고전들의 과학사상적 내용을 분석평가한 『민족고전 문헌해제』와 『민족고전 서지학 개요』 등은 모든 과학연구분야들에서 민족고전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로동신문』 1963. 3. 7.)

- 민족고전 번역사업 활발, 과학원 고전연구소에서: 고전연구소에서는 지방에서 온 50여 명의 한학자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열고 민족고전 유산을 옹계 계승할 데 대한 당 정책 연구

와 고전 번역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실무적 문제들에 대한 강습을 진행한 후 그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구문 번역, 구한문 번역, 구두 번역, 주석 분야에 걸쳐 세밀한 분공도 조직하였다. …… (『로동신문』 1963. 5. 31.)

- 1978년경에 력사학부문에서 1979년 민족고전부문 완전 분리 독립?(『조선중앙년감』 1979년판 282쪽, 1980년판 156쪽)

- 새로 일떠선 배움의 전당 현대적 건물에 현대적 시설을 완비하고 면모도 새로이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부수가 120만이라니 그의 장족적인 발전에 새삼스럽게 감탄하게 된다. …… 민족고전열람실 등 독자들의 기호와 취미가 각별히 고려된 열람실도 돌아보았다. 2층에 있는 민족고전문헌들이 보관되어 있는 서고로 발길을 옮겼다. 여기에는 약 10여 만부의 민족고전들이 비치되어 있다고 한다. 서가에 눈길을 던지니 우리나라의 유구한 출판력사를 말하여 주는 고려 중엽의 목판본으로 된 『동의 지문』, 현재 남아 있는 활자본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랜 리조 초기의 활자본인 『한노개록권』 등 라이프찌히에서 열린 ‘국제도서예술전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여 받은 책들도 눈에 띈다.(『로동신문』 1963. 11. 18.)

- 선조들이 남긴 고전유산을 광범히 연구,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소에서: …… 지난해 말까지 『삼국사기』, 『고려사』, 『목민 심서』, 『경세 유표』, 『택리지』 등 많은 민족고전들을 우리글로 새겨낸 번역연구실 집단은 지금 리조시기의 중요한 력사서적들인 『대동야승』 및 『연려실기술』과 실학파학자들의 저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번역출판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 리수광의 『지봉류설』, 홍만선의 『산림경제』, 박지원의 『연암집』, 정 약용의 『여유당문집』 및 『강역고』 그리고 『세종지리지』 등의 많은 부분은 이미 우리 글로 알기 쉽게 서술되었다. …… 문헌연구실 집단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고전유산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고전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연구집단은 각 부문의 학자 및 전문가들과 근로자들이 이 『고전 해제』를 광범히 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자연기술과학, 력사, 정치, 법률, 철학, 문집 등 여러 편으로 나누고 항목마다에 저자, 집필년도와 그 시기 사회적 환경, 저서의 기본 사상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담고 있다. 『로동신문』 1964. 5. 25.

- 『조선고전해제』(1): 이 책은 사회과학원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인데 우리나라의 과학문화전통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조선고전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족 고전들 가운데서 과학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골라서 모두 합하여 4개 분책으로 출판하게 된다. 여기에는 천문, 수학, 농업, 기술, 의학, 지리, 력사, 정법, 군사, 어학, 문예, 철학, 류서, 서지 부문 중에서 약 800종의 고전들을 골라서 실릴 것을 예견하고 있다. …… (『로동신문』 1966. 4. 13.)

- 농업 고전들에서 자료를 발취, 국립중앙도서관 민족고전부에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 민족고전부 일꾼들은 농업 부문을 연구하는 독자들에게 편의와 방조를 주기 위하여 우리나라 농업 고전들에서 자료들을 많이 뽑고 있다. 그들은 『천일록』, 『고사신서』, 『림원십육지』, 『농가집성』, 『오주연문장전산고』를 비롯한 수백 권의 농업 고전과 일반 고전들에서 농업 전반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제목별로 뽑아 카드를 만들어놓았다. …… (『로동신문』 1966. 4. 30.)

- 앞으로 출판될 민족고전들, 문예총출판사에서: 문예총출판사에서선 선조들이 남긴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더욱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고전유산들을 번역 출판하는 사

업을 적극 추진시키고 있다. 앞으로 나올 민족고전유산 중에서 2천여 수의 민요를 묶은 『조선 민요 선집』은 이미 출판에 넘어갔다. …… 금년에 번역되어 나올 책들 중에는 『창선 감의록』, 『동인 시화』도 들어 있다. …… (『로동신문』 1966. 5. 26.)

- 후대들에 대한 교양을 연령과 심리적 특성에 맞게 교육과학원에서: 교육과학원 교육 및 심리학연구소에서는 …… 『격몽요결』, 『사소절』 등 도덕교양과 관련한 우리나라 민족고전들을 깊이 연구 …… 『로동신문』 1966. 7. 15.

- 슬기로운 투쟁의 500년 『고려사』를 새로 번역 출판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과학원출판사에서는 『고려사』 번역본을 모두 11분책으로 나누어 출판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고전연구분야에서 거둔 또 하나의 성과로 된다. 우리 글로 번역된 『고려사』는 관계 부문 학자들의 연구사업에 편리를 도모하게 될 것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나라 역사를 더 잘 알고 민족적 긍지와 자주의식을 높이며 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하는데 도움으로 될 것이다. …… (『로동신문』 1967. 2. 4.)

△ 발표자는 “1960년대 후반 이전에 고전문헌에 대한 수집과 정리사업이 일단락된 것으로 추정” 이것 역시 1967년 이른바 김일성 수상의 ‘5·25교시’(‘당면한 당선전사업방향에 대하여’)와 관련. 북한학계는 ‘황금시기’로부터 ‘암흑시기로 후퇴’

- 김정일: 1970년 3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담화 「민족문화유산을 옳은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바로 평가처리할데 대하여」에서 “수령님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당, 정권기관, 교육, 과학, 문학예술 부문의 책임적인 일군들로 **국가심의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 “국가심의위원회는 옛날 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혁명에 해로운 것과 해롭지 않은 것을 갈라놓고 정확히 평가처리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2권, 57~58쪽)

△『리조실록』 번역본에 깃든 이야기: 1958년 9월 어느 날 공화국 창건 10돐 기념 과학전람회장 민족고전관을 찾으시였을 때에도 수령님께서는 전시된 이 민족고전을 보시면서 『리조실록』은 아주 귀중한 책이니 앞으로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복각하고 일반대중을 위해서는 번역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 1970년 10월 어느 날이었다. 수령님께서는 그날 새로 건설되어 개관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을 친히 찾으시고 열람실이며 서고들을 돌아보시면서 귀중한 교시를 주시였다. 이날 수령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신 하나의 민족고전이 있었다. 그것이 커다란 서고에 한 조 빼곡히 세워져 있는 『리조실록』(원문 복각판)이었다. …… 1977년 3월 어느 날 『리조실록』 번역집단은 뜻밖에도 국가문헌고에서 보내주는 실록의 원문을 받게 되었다. 수령님께서 『리조실록』 번역에 리용되고 있는 것이 실록의 복각판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게 말이 되는가고 하시면서 『리조실록』 번역은 국가문헌고에서 원문을 가져다 하여야 합니다.』라고 교시하시여 대출되어온 원문이었다. …… (『로동신문』 1986. 4. 28.)

△ 법규 해설 역사유적과 유물보존에 관한 규정(1)

…… 최근 정부원에서는 역사 유적과 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였다. 역사 유적과 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은 4장 19조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역사 유적과 유물의 발굴, 평가, 등

록, 복구, 보존관리 등 역사 유적과 유물 보존과 관련하여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 …… 역사 유적과 유물들에는 지난날 우리 인민이 창조하여놓은 원시유적, 옛성, 옛건물과 건물터, 옛무덤, 옛비석, 옛구축물, 생산도구 및 생활도구, 옛날의 무기와 조형예술품, 민속자료, 민족고전 등이 속한다. …… (『민주조선』 1992. 1. 31.)

△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민족고전학강좌**(『로동신문』 1972년 1월 20일)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민족고전학과**(『청년전위』 1995. 11. 10.) 그런데 조선어문학부를 “작가, 기자, 평론가 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창작교육기지-문학대학으로 개편. **민족고전학과** 교육체계는 그대로 두게 된다.(평양신문 2001. 1. 19.)

△ 성명 「우리의 민족고전을 략탈소각한 일제의 죄행을 끝까지 계산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고전학학회**는 일본당국이 검정에서 통과시킨 역사교과서에서 우리나라의 민족고전을 략탈 소각한 죄행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 …… (『민주조선』 2001. 7. 7.)

